

연구보고서 2006

#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적정 대체 인력확보방안

《研究陣》

---

연구위원 : 권 경 득 (선문대 행정학과)

---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2
3. 연구의 방법 .....	3
4. 연구추진체계 .....	4
II. 의무경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1. 의무경찰인력의 실태와 사회환경의 변화 .....	6
2. 해외사례 벤치마킹 및 시사점 .....	41
3. 의무경찰인력의 적정규모 산출을 위한 연구조사 설계 .....	65
III. 대체인력확보에 대한 인식조사 .....	74
1. 연구조사의 개요 .....	74
2. 응답자의 특성 .....	76
3. 신뢰성 검증과 타당성 검증 .....	77
4.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	81
5. 대체인력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	85
IV. 분석 결과 및 대체인력 확보방안 .....	91
1.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의 분석을 통한 소요인력 추정 결과 .....	91
2.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한 인력 추정 결과 .....	96

3. 대체인력 확보방안 .....	98
V. 결 론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 .....	103
참고문헌 .....	106
부록 1) 설문조사지 .....	110
부록 2) 면담결과 보고서(I) .....	118
부록 3) 면담결과 보고서(II) .....	124
부록 4) 면담결과 보고서(III) .....	126
부록 5) 면담결과 보고서(IV) .....	133

### < 표 차 례 >

<표 1> 의무경찰과 전투경찰의 특성 비교 .....	6
<표 2> 의무경찰관련 주요 법령의 내용 .....	8
<표 3> 중앙경찰학교의 교과내용 .....	11
<표 4> 경찰예산 변화 추이 .....	13
<표 5> 의무경찰인력의 현황 .....	14
<표 6> 경찰서의 일반적인 부서별 분장사무 .....	16
<표 7> 의무경찰 정원조정 내역 .....	19
<표 8> 군별 복무기간 변천 내용 .....	20
<표 9> 대체복무 부문별 인력지원 조정내역 .....	20
<표 10> 경찰인력 및 경찰 1인당 담당인구 변화 .....	21
<표 11> 남대문경찰서 소속 의경인력의 업무내용 .....	26

<표 12> 남대문경찰서의 인력현황 .....	27
<표 13> 천안경찰서 소속 의경인력의 업무내용 .....	29
<표 14> 천안경찰서의 인력현황 .....	29
<표 15> 아산경찰서 소속 의경인력의 업무내용 .....	31
<표 16> 아산경찰서의 인력현황 .....	32
<표 17> 지하철수사대의 범인검거 실적 .....	33
<표 18> 서울지하철수사대의 인력 및 장비 현황 .....	34
<표 19> 전산실 관련 의무경찰 현황 .....	35
<표 20> 교통업무 관련 의무경찰 현황 .....	37
<표 21> 지하철수사대 근무 의무경찰인력 현황 .....	39
<표 22> 기동중대 관련 의무경찰 현황 .....	40
<표 23> 기동중대의 근무형태 현황 .....	41
<표 24>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와 경찰조직 .....	53
<표 25> 미국의 지방경찰조직의 특징(I) .....	61
<표 26> 미국의 지방경찰조직의 특징(II) .....	64
<표 27> 적정 소요인력 산출방법의 개념 및 장·단점 .....	73
<표 28>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	77
<표 29>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 .....	78
<표 30> 요인분석 결과(Varimax 회전후의 요인적재량과 아이겐 값) .....	79
<표 31>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종합) .....	81
<표 32> 의무경찰인력의 기본적인 소양 .....	82
<표 33>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 .....	83
<표 34>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	84
<표 35> 의무경찰제도의 폐지 .....	85

<표 36> 의무경찰인력의 대체유형 .....	86
<표 37>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역량개선을 위한 방안 .....	86
<표 38> 정규경찰로 충원하여 대체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종합) .....	87
<표 39> 정규경찰로 충원하여 대체시 기대되는 효과 .....	88
<표 40>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확보시 애로사항 .....	89
<표 41>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확보시 우선 고려 부서 .....	89
<표 42>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확보시 가장 많은 충원이 필요한 부서 .....	90
<표 43> 의무경찰 1명당 경과별 정규경찰 충원비율 .....	97
<표 44> 적정 대체인력의 수(추정치) .....	101

## < 그림 차례 >

[그림 1] 연구의 접근방법 .....	4
[그림 2] 연구의 추진체계 .....	5
[그림 3] 의무경찰인력의 충원절차 .....	10
[그림 4] 경찰 인력구성(2003년) .....	12
[그림 5] 남대문경찰서 조직도 .....	25
[그림 6] 천안경찰서 조직도 .....	28
[그림 7] 아산경찰서 조직도 .....	30
[그림 8] 지하철 수사대의 편제 .....	33
[그림 9] 영국의 국가경찰 조직도 .....	43
[그림 10] 영국의 지방경찰 조직도 .....	44

[그림 11] 독일의 연방경찰 및 주경찰 조직도 .....	49
[그림 12] 프랑스의 경찰조직도 .....	54
[그림 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	56
[그림 14] 미국의 국가경찰 조직도 .....	60

## <요 약>

최근 출산율의 저하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방인력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의무경찰인력의 공급을 담당해왔던 국방부가 의무경찰제도의 감축 또는 폐지를 시사함에 따라 의무경찰제도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민생치안서비스 제고로도 모호하려는 경찰은 인력정책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의무경찰제도와 관련한 최근의 변화 양상, 즉 병역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의무경찰인력의 감축에 따른 분야별(기능별) 적정 경찰인력규모를 추정 산출하여 향후 대체인력의 확보방안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고품질의 치안행정서비스 체제의 확립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의무경찰의 모집·충원·배치·평가 등의 경찰인사관리체제를 살펴보았으며, 사회전반의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변화 추세, 경찰의 분야별·기능별 업무의 분석, 그리고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등 의무경찰제도와 관련되는 각종 법률의 내용을 분석·검토하였다.

또한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적정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의무경찰제도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와 각종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의무경찰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대체인력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의무경찰인력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무분야 및 기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필요인력의 산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고찰과 실증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공무원 인력 산정에 대한 이론과 적정인력 산출에 관한 선행연구 및 각종 통계자료의 분석 등과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으로써 관련분야 실무자나 전문가에 대한 면담조사 및 설문 조사를 통해 경험적인 검증은 하고자 하였다. 면담조사는 의무경찰을 대체할 수 있는 적

정인력의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의무경찰인력의 업무량과 업무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알아야 하므로 의무경찰 및 의무경찰 소속부서의 경찰관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통하여 인력산정의 근거를 산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찰집단(일반경찰 및 의무경찰)과 관련분야 전문가집단(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의무경찰제도의 대체 유형 및 대체인력의 역량개선 방안, 정규경찰로의 충원방안, 대체인력 확보관련 애로사항 및 우선 부서, 경과별 정규경찰 충원비율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의무경찰의 대체인력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양적·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의무경찰제도 및 경찰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방안 중 정규경찰로 충원하는 방안이 현재 경찰분야의 재직자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 방안이 다른 방안들보다 보다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이후에도 향후 경찰업무의 개선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를 보다 더 향상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관련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주는 등의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체인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시위진압 등 치안업무, 경비업무 및 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경과)에 대한 보다 우선적인 고려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대국민 관련 경찰업무의 수행에 있어 의무경찰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이들 업무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인력대체가 향후 경찰업무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해당 업무수행 부서(경과)별로 정규경찰을 충원하여 인력을 대체할 경우에 있어서 분야별로 현재 업무수행 중인 의무경찰 1명 대비 정규경찰 1.115-2.336명 정도의 비율로 인력이 대체·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새로운 경찰 및 치안수요에 부응하여 특정 업무분야(예: 시위진압 등 치안업무, 경비업무, 교통지도 업무 등)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추정된 대체 인력의 확보는 물론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추가 인력의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위진압 등

치안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의무경찰 1명 대비 정규경찰 2.5-3.0명 정도의 비율로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의무경찰 인력의 대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논의의 전개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예산확보방안 등과 연계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경찰 인력의 대체방안과 관련된 인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국방자원의 대체충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고객(시민)위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진일보한 비전과 목표 하에서 개선방안을 도모해야 필요가 있다.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변화(change)’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화두가 되었다. 변화의 인지(認知)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초점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의 맥락에서 변화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논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행정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제적·국내적으로 경찰행정 기능과 관련되는 많은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인 측면은 차치하고 국내적인 측면만 보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화의 진전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치안영역, 치안기능, 임무 등의 측면에서 전과 다른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므로 경찰이 대응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예 따른 국민생활의 질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범죄의 광역화·조직화·전문화의 추세 역시 주요한 변화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핵가족화의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협력의식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원·송건섭, 2001: 10-11).

특히 최근에는 출산율의 저하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방인력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의무경찰인력의 공급을 담당해왔던 국방부가 의무경찰제도의 감축 또는 폐지를 시사함에 따라 의무경찰제도를 통해 업무효율화와 민생치안서비스 제고를 도모하려는 경찰로서는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변화대응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하여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의무경찰제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그동안 의무경찰제도는 정부의 모병정책에 따라 전환복무체제 또는 대체복무체제를 근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의무경찰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등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징병대상자의 감소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 모병정책의 변화로 인한 의무경찰인력의 공급 감소가 대두되고 있다. 셋째, 징병대상자와 의무경찰인력의 공급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의 사회가 민주화·복잡화·개성화 현상을 보임에 따라 치안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무경찰제도와 관련한 최근의 변화 양상, 즉 병역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의무경찰인력의 감축에 따른 분야별(기능별) 적정 경찰인력규모를 추정 산출하여 향후 대체인력의 확보방안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고품질의 치안행정서비스 체제의 확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의무경찰의 모집·충원·배치·평가 등의 경찰인사관리체제를 살펴보았으며, 사회전반의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변화 추세, 경찰의 분야별·기능별 업무의 분석, 그리고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등의 의무경찰제도와 관련되는 각종 법률의 내용을 분석·검토하였다.

또한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적정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의무경찰제도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와 각종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의무경찰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대체인력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의무경찰인력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무분야 및 기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필요인력의 산출을 시도하였다.

###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인 고찰과 실증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공무원 인력 산정에 대한 이론과 적정인력 산출에 관한 선행연구 및 각종 통계자료의 분석 등과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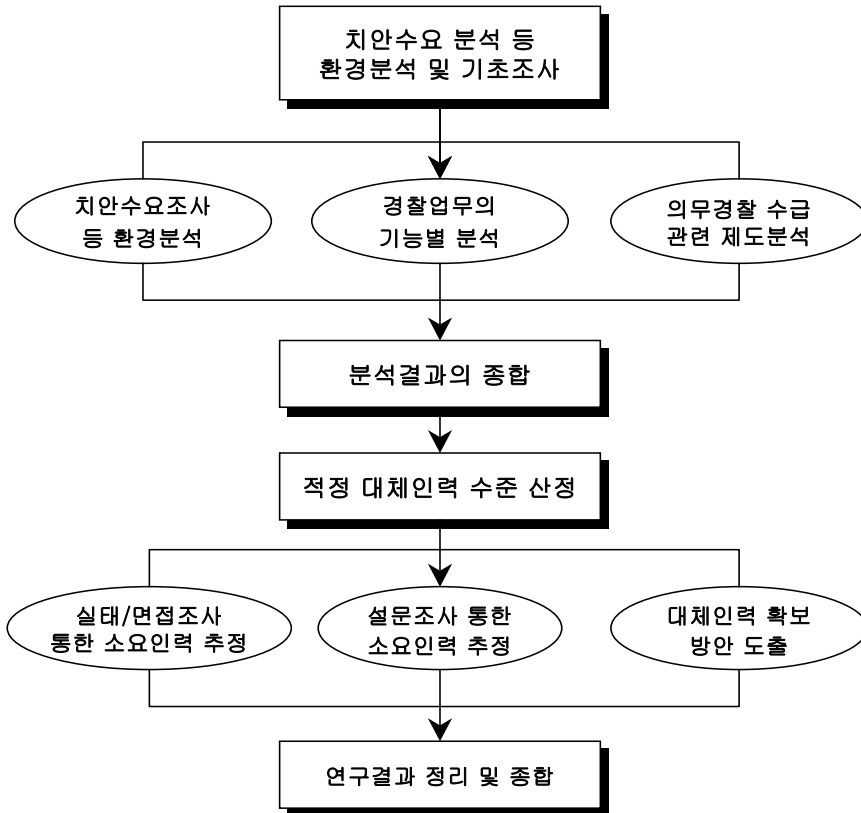
다음으로 실증적인 연구방법으로써 관련분야 실무자나 전문가에 대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인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면담조사는 의무경찰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인력의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의무경찰인력의 업무량과 업무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알아야 하므로 의무경찰 및 의무경찰 소속부서의 경찰관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통하여 인력산정의 근거를 산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적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찰서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많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적정인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인원·비용의 한계 등으로 인해 1급지 1개 경찰서(남대문 경찰서), 2급지 2개 경찰서(천안과 아산 경찰서)를 선정하였으며, 최근 우리사회의 변화추세를 가장 잘 반영한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하나로 지하철수사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방문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업무건수, 업무시간, 총 업무량 등을 조사하여 의경경찰 대체인력의 적정수준을 산출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찰집단(일반경찰 및 의무경찰)과 관련분야 전문가집단(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경찰인력의 소양과 능력,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의무경찰제도의 대체방안에 대한 인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의무경찰제도의 대체방안에 관해서는 대체유형 및 대체인력의 역량개선 방안, 정규경찰로의 충원방안, 대체인력 확보관련 애로사항 및 우선 부서, 경과별 정규경찰 충원비율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 4. 연구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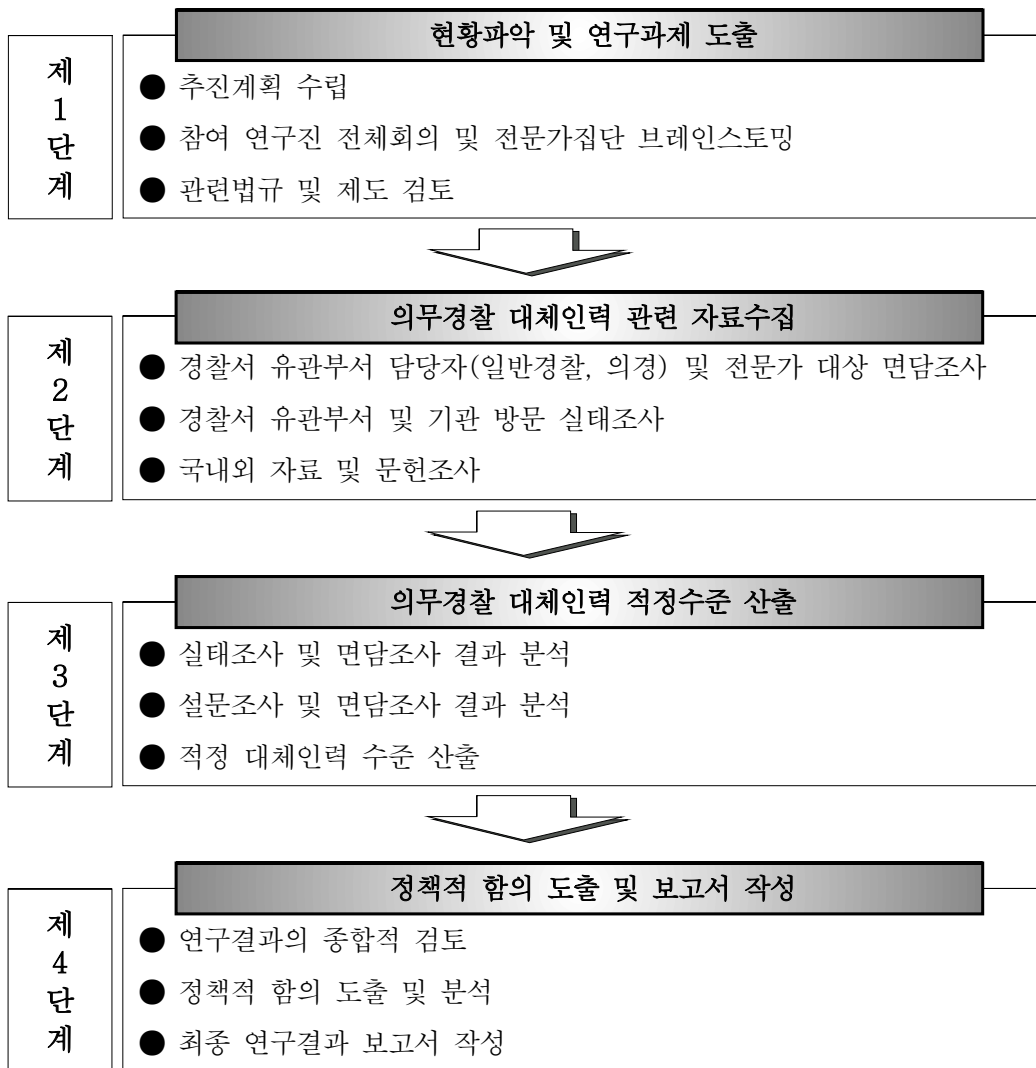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접근방법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2]와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2] 연구의 추진체계



## II. 의무경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의무경찰인력의 실태와 사회환경의 변화

#### 1) 의무경찰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 (1) 의무경찰제도 도입 배경과 관련 법제도

의무경찰제도는 1982년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창설되어 현역 입영자 중에서 차출되거나 작전전경과는 별도로 지원제로 충원되어 왔다.

의무경찰은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과 같이 ‘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전환복무로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무경찰인력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시위진압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동대 외에도 각급 경찰관서에 소속되어 방법순찰, 행정보조, 교통, 전산, 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무경찰인력은 사회의 다원화·복잡화로 인한 치안수요의 증가에 따라 방법순찰 및 교통관리·단속업무 등의 영역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표 1> 의무경찰과 전투경찰의 특성 비교

구 분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경찰)
임 무	치안업무의 보조	대간첩 작전 수행
연 혁	1982년 12월 31일 창설	1967년 9월 1일 창설
복무기간	24개월 복무	
복무내역	경찰청 모집, 교육이수 후 전입 군신병교육 4주, 경찰교육 3주 의경(행정상 승진은 작전전경과 동일)	현역병 입영, 군사교육 후 경찰청 전환 복무 군신병교육 5주, 경찰교육 2주 이경, 일경, 상경, 수경
주요임무	기동대, 방법순찰대, 교통, 전산, 운전 등 치안보조부서에서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조하여 시위진 압, 방법활동, 범인검거 등의 역할 수행	전투경찰대 창설 이래 대간첩 작전 수행 및 해안선 경계, 주요시설 보호, 상황실, 검문소, 경찰서 5분 대기대 등의 임무 수행

자료 :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의무경찰제도와 관련된 법제도로는 주로 병역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2조(정의)는 의무경찰제도와 관련되는 ‘전환복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동조 제1항은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는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전경)에 관한 전환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에 대해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다고 하여 의무경찰의 전환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조 목적).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제7조~제10조)·교육훈련(제17조)·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제1조 목적). 의무경찰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며, 의무경찰에 의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및 특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목적). 동법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제2조),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제4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동법이 준용되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두는 전투경찰대의 설치근거·조직,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무경찰순경에 관한 규정도 추가되어 있다. 동법 제2조의3 제2항은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전환복무 된 자 중에서 임용’한다

고 하여 의무경찰제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2항은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 징집대상자 제외)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는 이들 전·의경 인력의 활동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은 제2조에서 의무경찰을 ‘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전환복무로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5조는 의무경찰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실시의 구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동시행령은 의무경찰인력의 임용(제2장), 복무(제3장), 신분보장(제4장), 징계 및 소청(제5장), 기본용품비(제6장), 보상(제7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정의 복무를 마친 전투경찰순경에 대해 경찰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제12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의무경찰관련 주요 법령의 내용

법령제목	조항	내용
병역법	제2조(정의) 제24조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경찰제도 관련 ‘전환복무’ 규정</li> <li>◎ 배정에 의한 작전전경(전경)의 전환복무 규정</li> <li>◎ 추천에 의한 의무경찰의 전환복무 규정</li> </ul>
경찰법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li> </ul>
경찰공무원법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제7조~제10조)·교육훈련(제17조)·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 규정</li> </ul>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필요 사항 규정</li> <li>◎ 경찰관의 직무범위(제2조),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제4조) 등 규정. 의무경찰 직무집행시 준용.</li> </ul>

법령제목	조 항	내 용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2조의3 제2항 제3조 제2항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경찰제도의 근거 규정</li> <li>◎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추천</li> <li>◎ 의경 관련, 경찰공무원법 등 준용 및 특례 규정</li> </ul>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2조(용어 정리) 제5조(시험 합격 결정 및 명부작성) 제6조(추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경찰의 정의(치안업무보조를 임무로 전환복무로 임용된 전투경찰순경)</li> <li>◎ 의무경찰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구분에 대해 규정</li> <li>◎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에 대한 국방부장관 추천</li> <li>◎ 의무경찰인력의 임용(제2장), 복무(제3장), 신분보장(제4장), 징계 및 소청(제5장), 기본용품비(제6장), 보상(제7장) 등에 관해 규정. 특히 소정의 복무를 마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제12조) 규정</li> </ul>

(2) 의무경찰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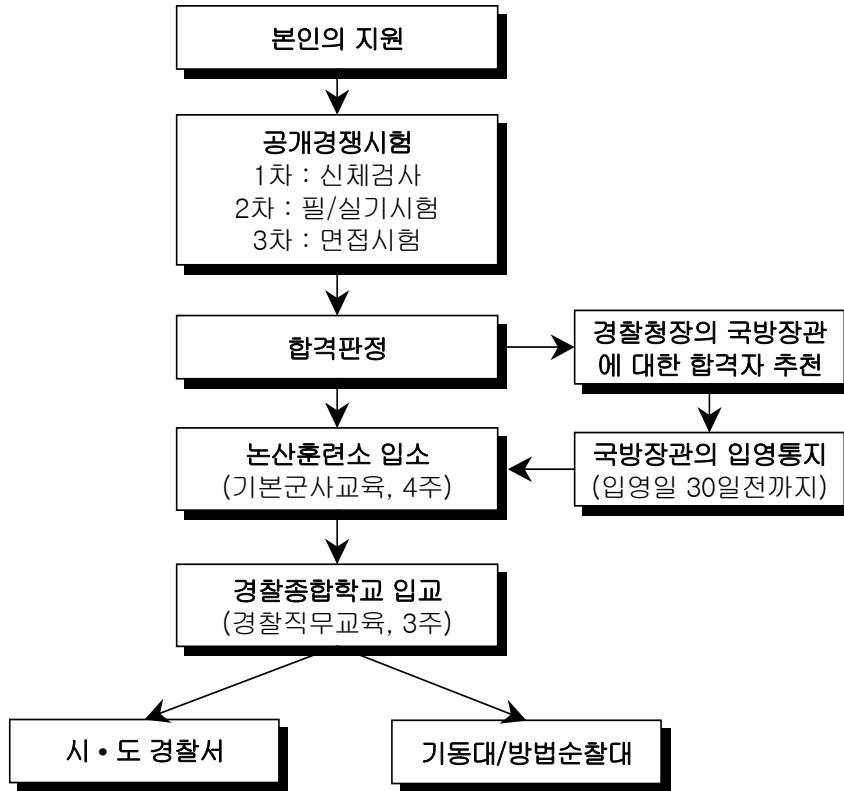
① 의무경찰인력의 충원절차

의무경찰인력의 충원절차는 병역법 및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원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신체검사), 제2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제3차 시험(면접시험)으로 구분된다(동시행령 제5조 제4항).

경찰청장은 공개경쟁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방부장관에 대해 의무경찰임용예정자를 추천한다(동시행령 제6조). 국방부장관은 의무경찰인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병역법(제24조 제2항,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입영명령서를 입영기일 30일 전에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림 3] 의무경찰인력의 충원절차



입영명령서를 받은 의무경찰 지원자는 논산 제2훈련소(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국방부 교육계획에 의거한 4주간의 군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군사훈련이수자는 다시 중앙경찰 학교(충주)에 입교하여 경찰실무, 소양교육, 체력훈련, 기타 경찰업무관련 교육을 3주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 교육훈련 이수자는 각 시·도 경찰서 또는 방법순찰대로 배속된다.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에 관한 교과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중앙경찰학교의 교과내용

분 야	과 목	과 정	
		시 간	비 율
소 양	1. 충의선양탑 참배	1	12% 4과목 13시간
	2. 경찰현장	2	
	3. 경찰예절	6	
	4. 국가 중요정책	4	
	5. 선배와의 대화	-	
실 무	1. 전산통신	5	37% 7과목 41시간
	2. 방법활동	10	
	3. 경비	6	
	4. 교통	7	
	5. 전경관련법규	3	
	6. 경찰관직무집행법	6	
	7. 한문	4	
체력훈련	1. 기초체포술	16	47% 4과목 33시간
	2. 다중범죄 진압훈련	14	
	3. 사격	7	
	4. 제식훈련	10	
행정 및 기타	1. 입교식	1	8%
	2. 졸업식	3	
	3. 평가	1	
	4. 기타(예비시간)	4	

자료 : 경찰청홈페이지(http://).

② 의무경찰인력의 현황<sup>1)</sup>

경찰인력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말 현재 총 146,705명으로 이중 경찰관이 92,165명(62.8%), 전·의경이 50,609명(34.5%), 일반직 등이 3,931명(2.7%)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에 경찰관 573명과 일반직공무원 7명, 기능직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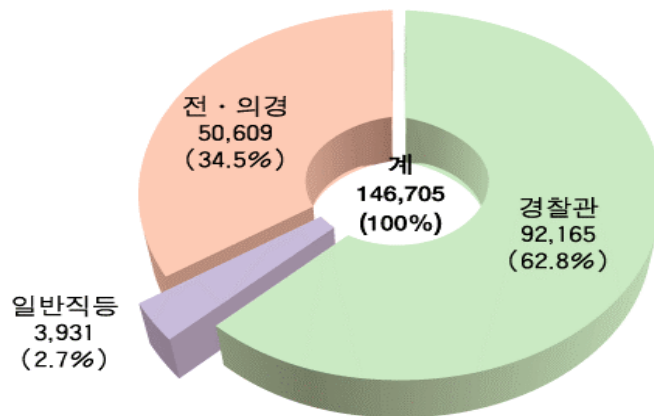
1) 경찰청.(2004). 「경찰백서」, p. 341.

원 16명을 증원하였다. 파출소 3교대 근무를 완전하게 정착시키고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관 342명을 증원하였다.

경기지방청의 구리·양주경찰서 신설을 위해 경찰관 231명과 일반직 공무원 2명, 기능직 공무원 9명을 증원하였다. 경찰병원에 의사, 간호사 등 일반직 공무원 5명과 기능직 공무원 7명을 증원하였다. 한편, 경찰청과 부속기관에서 100명을 감축하여 지방청과 경찰서로 재배정하여 일선 민생치안부서의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였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2004년도 기준 519명으로 전년도(2003년) 523명에 비하여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선진외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경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경찰 인력구성(2003년)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2004)

이와 같은 인력규모에 따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기준으로 경찰은 모두 5조 4,764억원(일반회계 4조 5,958억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275억원,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 6,519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12억원)의 정부예산의 4.6%를 차지하는 기구로 성장하였다.

<표 4> 경찰예산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경 찰 예 산	계 (증가율%)	3조4,754 (△0.2)	3조6,744 (8.2)	4조3,847 (19.3)	4조9,279 (12.4)	5조4,764 (11.1)
	일반회계	3조2,557	3조4,566	4조332	4조3,169	4조5,958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203	880	1,065	1,102	1,275
	자동차교통관리 특별회계	994	410	1,580	4,100	6,5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888	870	908	1,012
정 부 예 산 (증가율%)	83조6,852 (10.7)	88조7,363 (3.3)	99조1,801 (11.8)	105조8,761 (6.7)	118조1,323 (11.6)	
경찰예산/ 정부예산(%)	4.0	4.2	4.6	4.6	4.6	

자료 : 경찰청.(2004). 「경찰백서」, p. 345.

2004년도 경찰인력의 구성비에서 전·의경인력의 규모는 34%를 넘는 것으로 상당히 비중이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무경찰인력은 32,000여명으로 전체 경찰인력의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현재 의무경찰은 상설부대(기동단본부, 기동대본부, 기동중대)와 행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상설부대는 1개 기동단본부와 7개 기동대본부(서울 5, 경기 1, 전남 1), 그리고 190개의 기동중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 상설부대에 배속된 의경인력의 수는 27,253명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sup>2)</sup>

2) 서울지방경찰청에만 1개 기동단본부, 5개 기동대본부, 54개 기동중대가 편제되어 있다. 1기동대 12개 중대, 2기동대 5개 중대, 3기동대 11개 중대, 4기동대 6개 중대, 특수기동대 10개 중대 등 44개 기동중대가 있으며, 2개 기동대에 5개 중대씩 전투경찰중대가 편성되어 있어 모두 54개 기동중대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각 기동대별 소속 중대의 명칭은 보안상 필요성에서 생략한다.

기동단본부에는 모두 29명의 의무경찰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기동대 본부의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청의 5개 기동대본부에 245명(49명 × 5)이 있으며, 경기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1개씩 기동대본부가 설치되어 각각 20명과 18명의 의무경찰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283명의 의무경찰인력이 소속되어 있다. 기동중대는 모두 190개로 편성되어 26,941명<sup>3)</sup>의 의무경찰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각 중대의 인력규모는 본부소대(17명)와 3개 소대(126 = 42 × 3)로 이루어져 총인원은 143명이다.

<표 5> 의무경찰인력의 현황

구 분		인원 수	비 고
상설부대		27,253	
기동단 본 부	소 계	29	편제 - 1개 단본부, 7개 기동대, 190개 중대 보유 장비 - 지휘차량 5, 버스 15, 승합 5, 화물살수차3, 조명차 4, 방송차 4, 구급차 1, 중장비 1
	행 정	5	
	장 비	4	
	운 전	4	
	자 체 경 비	8	
	상 황 실	6	
	무 전	2	
기동대 본 부 (서울5, 경기1, 전남1)	소 계	283	지방청별 세부 편제 - 서울 : 행정 6, 장비 7, 운전 12, 무전 2, 자 체경비 14, 상황실 8(총 49명) - 경기 : 행정 4, 장비 4, 운전 2, 무전 2, 자 체경비 8(총 20명) - 전남 : 행정 4, 장비 2, 운전 2, 무전 2, 자 체경비 8(총 18명)
	행 정	38	
	장 비	41	
	운 전	64	
	자 체 경 비	86	
	상 황 실	40	
	무 전	14	

3) 총인원 규모로 볼 때, 총원 143명으로 구성된 중대는 187개이며, 100명으로 구성된 2개 중대가 있으며, 원주 지방경찰청의 경우는 정원이 없다.

구 분		인원 수	비 고	
기 중 대 (190)	소 계	26,941	143명×187개 중대, 100명×2개 중대, 원주 정 원 無	
	중대 계	143	본부 17명+126(3개 소대 × 42)	
	본부	계	17	
		행정	4	인사, 보급, 경리, 장비 각 1
		취사	5	주·부식 조리, 배식, 세척 등
		운전	7	지휘차량 1, 버스 4, 식사차량 1, 가스차량 1
		무전	1	중대장 무전
	소대	42	출동 34명, 무전 1명, 사고 7명	
행정부서		2,863		
행 정 부 서	교 통	979	서울 189, 1급지(92) × 5, 2·3급지(110) × 3	
	운 전	633	지휘차량 292, 경비작전차량 371	
	전 산	294	본청 5, 14개 지방청 × 4, 경찰서 233	
	악 대	335	경찰대(10)·중앙경찰학교(5) 감축	
	지하철출장소	102	서울 63, 부산 26, 대구 13	
	전경관리(기울)	73	서울 8, 13개 지방청 × 5	
	교 육 조 교	33	사격·기울·운전 각 7, 진압·무도·생활관 각 4	
	무궁화체육단	114	체육단 62, 기마대 12, 행정보조 40-46	
	교 육	270	교육인원 정원 책정	
합 계		30,116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2005).

행정부서에는 모두 2,86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업무 기능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인 979명이 배치된 교통분야를 비롯하여 운전(663명), 악대(335명), 전산(294명), 교육(270명)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영역

경찰서의 조직으로서 설치하여야 할 일반적인 부서는 청문감사관, 경무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sup>4)</sup> 다만, 경찰서 및 경찰서가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과에 갈음하여 수사과와 형사과, 경비교통과에 갈음하여 교통과와 경비과, 정보보안과에 갈음하여 정보과와 보안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서의 부서 및 부서별 분장사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영역은 교통관리, 방법순찰, 지하철수사대, 기타 행정사무보조 업무 등이다.

경찰서 주요 부서별 업무 중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영역은 경무과의 행정전산(자료정리 및 입력) 보조업무, 생활안전과의 순찰관련업무 및 방법순찰대 업무, 그리고 경비교통과의 업무와 관련되는 요인보호, 행사장(혼잡) 재해경비, 교통법규 위반자 처리 및 지도단속, 교통통제 관리, 행정전산 보조업무 등이 있다.

<표 6> 경찰서의 일반적인 부서별 분장사무

구 분	주요 분장사무
청 문 감사관	감찰 및 관련업무, 부정부패 단속, 경찰비리행위 신고접수 및 조사, 민원실 운영
경무과	인사·교육, 상훈·후생복지, 경리, 장비관리, 전산통신망 운영
생 활 안전과	범죄·안전사고 예방, 청소년 선도 및 여성관련 업무, 즉결심판, 지구대 운영, 112신고접수·처리, 총포·화약류관리, 방법순찰대 운영
수사과	사건송치 및 피의자호송, 유치장관리, 특별법 위반사범 수사, 고소고발사건 수사, 형사범 수사, 민생침해사범단속, 범죄감식
경 비 교통과	경비·경호작전업무, 전·의경관리, 교통지도·단속·사고예방, 교통사고조사, 교통시설물 관리, 상황실 운영
정 보 보안과	치안정보 수집 신원조회, 보안정보 수집, 보안사범 수사

자료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2005).

4) 서울지방경찰청.(200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 ④ 의무경찰인력의 근무특성

의무경찰 인력의 근무특성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의무경찰인력이 연령이 낮은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활기에 찬 직무수행태도와 정보화시대에 잘 적응하는 세대답게 전산관련업무의 탁월한 처리, 그리고 군 복무와 관련한 전환복무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인 인력활용 등의 측면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대민업무 처리 미흡, 법률소양 부족 등에 따른 법집행 권위의 약화 우려, 보안성 및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sup>5)</sup> 이러한 의무경찰 인력의 특성은 절대적 또는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인력관리의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의무경찰 인력의 근무와 관련한 긍정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음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수행에 임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심어주는 기능을 한다.

둘째, 정보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잘 적응하여 컴퓨터 등의 전산설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산관련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함으로써 관련업무의 보조 및 지원효과를 배가시킨다.

셋째, 군 복무의 일환으로서 전환복무(또는 대체복무)의 성격으로 근무함으로써 근무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불만이 없이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한 방법순찰 및 교통지도·관리 등의 업무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넷째, 원칙과 기준에 충실함으로써 부정부패나 비리의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경찰의 청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의무경찰인력의 근무와 관련한 부정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경찰 인력은 경찰업무의 각 분야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부족한 경우가

5) 기획예산위원회.(1999).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일반행정분야」.

없지 않다.

둘째, 경찰관이 가지는 직업의식이나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대민업무처리의 미숙 혹은 대민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의무경찰 인력에 의한 자체사고 발생 시 대민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전체 경찰의 35%를 차지하는 의무경찰인력이 치안일선에서 직접 주민을 상대로 경찰 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족한 경찰력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경찰관 임용과정에서 이뤄지는 소양교육 과정이 없고, 직무경험이나 법률소양 부족에 따른 군대식의 계급구조에 의해 경직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법집행 권위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의무경찰 인력은 연령수준이 낮고,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재학 중에 군복무를 위해 지원한 인원으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다섯째, 업무수행 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 미숙, 혹은 자격이 미흡한 의무경찰 인력이 법집행을 하는 경우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경찰관에 비해 보안의식이나 책임감이 미흡한 의무경찰이 주민정보 조회, 범죄경력 조회 등이 가능한 컴퓨터실 등 직무의 전문성·보안성·신속성이 요구되는 부서에서 보조근무를 하는 경우에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경찰의 전문화 및 긴급상황 처리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일곱째, 의무경찰 자신의 지식·경험의 부족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 2) 사회환경의 변화와 의무경찰 대체인력 확보

### (1) 사회환경의 변화 양상

#### ① 국방 및 경찰기능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감소

저출산의 사회적 추세와 자녀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의무경찰 인력의 증원 및 충

원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변화에 따라 의무경찰인력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이다. 즉, 경찰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의무경찰인력의 정원배정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정원 또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인력의 정원이 조정된 바 있다. 세부적인 정원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상설부대인 기동대의 경우는 정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모든 행정부서에서는 최소 4명에서 최대 900명 이상까지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의무경찰 정원조정 내역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비 고
기 동 대	소 계	27,253	27,253	-
	기동단 본부	29	29	-
	기동대 본부	283	283	-
	기 동 중 대	26,941	26,941	-
행 정 부 서	소 계	5,182	2,863	-2,319
	교 통	1,553	979	-574
	운 전	1,051	633	-388
	전 산	729	294	-435
	유 치 장	958	0	-958
	교 육	11	270	+259
	전경관리(기울)	115	73	-42
	악 대	350	335	-15
	시 설 경 비	46	0	-46
	경찰탐지견지도	14	0	-14
	지하철출장소	161	102	-59
	교 육 조 교	52	33	-19
	무궁화체육단	132	114	-18
	상 황 실	6	0	-6
	통 신	4	0	-4
합 계		32,435	30,116	-2,319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2005).

의무경찰인력의 부족 현상은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 시행으로 징집대상자원이 감소한 원인도 있지만, 최근 군 복무기간을 단축한 조치에도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다.

<표 8> 군별 복무기간 변천 내용

의 무 경 찰		육 군(해·공군)	
연 도 별	기 간(월)	연 도 별	기 간(월)
1983	36	1980	30(해·공 35)
1987	35	-	-
1990	32	1990	30(해 32, 공 35)
1993	28	1993	26(해·공 30)
1994	26	1994	26(해 28, 공 30)
2003	24	2003	24(해 26, 공 28)

자료 : 기획예산위원회(1999).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일반행정분야」.

특히 전·의경인력의 경우에 시위진압 위주의 임무수행에 따른 지원기피현상도 적지 않아 소요인력 확보가 더욱 곤란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방부는 아래의 <표 9>와 같이 ‘2006년 대체복무 지원계획(안)’을 통해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산업기능 등의 분야에 대한 인력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표 9> 대체복무 부문별 인력지원 조정내역

구 분	계	상 근 예비역	작 전 전 경	의 무 경 찰	해 양 경 찰	경 비 교 도	의 무 소 방	산 업 기 능	전 문 연구등
2005년 지원	45,600	12,300	8,500	12,000	1,400	1,600	800	4,500	4,500
국방부 2006년 지원계획	기본	29,200	14,500	8,500	0	1,200	0	0	5,000
	조정	42,100	10,500	8,500	11,000	1,400	1,300	400	4,500
최종조정(안)	43,100+ $\alpha$	10,500	8,500	12,000	1,400	1,300 + $\alpha$	400+ $\alpha$	4,500	4,500
계획대비 증감	1,000+ $\alpha$	0	0	+1,000	0	+ $\alpha$	+ $\alpha$	0	0

자료 : 국방부 내부자료.(2005), 「2006년도 대체복무 지원계획(안)」.

② 고객(시민)위주의 경찰행정의 구현 요구

오늘날 사회가 더욱 더 복잡해지고 산업화됨에 따라 커뮤니티(communitiy)의 붕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곧바로 치안수요와 직결 되는 것으로 의무경찰 인력의 지원 없이 정규경찰 인력으로 고객인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치안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많지만,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위험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의 기능적 측면의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는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휴(休) 테크’라는 신조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바쁜 와중에도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려는 의식이나 행태가 보편화됨에 따라 주중이나 주말을 막론하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증가한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지도 및 관리에 관한 경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하였으며, 하드웨어적인 교통설비의 보강은 물론 교통소통과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교통지도 및 관리기능의 수행에 의무경찰 인력의 기여도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경찰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1인당 담당인구의 비율 역시 계속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치안수요와 관련한 경찰행정에 대해 고객인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10> 경찰인력 및 경찰 1인당 담당인구 변화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찰관	90,108	90,558	90,639	87,419	89,629	90,515	90,623	90,670	90,819	91,592	92,165	93,271
인 구	489	497	503	524	516	516	518	522	526	527	523	519

자료 :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사회의 다원화와 복잡화 현상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치안수요를 의무경찰이 상당부분 충족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무경찰인력의 감축내지 의무경찰제도의 폐지는 치안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방법순찰활동, 교통지도 및 관리와 관련한 의무경찰활동에 대해 대체방안이 없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순찰 및 위험지역의 점검, 그리고 교통지도 및 관리 등과 같은 경찰의 기능 및 역할은 고객으로서의 시민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그 동안에는 의무경찰 인력의 투입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③ 의무경찰제도의 제도 변화 요구

의무경찰 인력의 긍정적인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병역대상자 감소와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무경찰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의무경찰 인력은 각급 경찰관서에 소속되어 방법순찰, 행정보고, 교통, 전산, 유치장, 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그 수는 30,000명에 이르고 있다. 의무경찰 인력은 부족한 치안인력을 대체하여 비교적 위험하고 힘든 일을 맡아 경찰력강화에 이바지해 왔으나, 고질적인 구타행위나 기합 등의 폭력행위와 일부 대원들의 부조리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해온 것도 사실이다.<sup>6)</sup>

경찰관은 국가공권력의 집행자로서 고도의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교통단속, 시위진압 등 법집행작용에 젊은 의경들을 투입함으로써 치안일선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어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므로 병역자원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고객위주의 경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의무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행정업무를 정규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한겨레신문, 2003. 8. 22.

## (2) 대체인력확보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① 의무경찰 대체인력 확보의 필요성

병역자원 부족의 대안으로서의 대체인력 모색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위주의 경찰 행정 및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의무경찰 대체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경찰 인력을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 인력 및 소요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검문소·유치장 등 대민부서와 상황실·지령실 등 전문성 및 긴급상황처리 요구부서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방범순찰대 및 기타 부서는 시위상황, 사회안정화 정도 등 치안정세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대체를 추진해야 한다.

## ② 의무경찰 인력의 대체에 따른 기대효과

무엇보다도 시민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에서의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국민 기본치안역량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객인 시민의 경찰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기간의 직무경험과 경찰로서의 소양, 그리고 관련법규에 대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종전에 의무경찰인력에 의존하던 직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경찰 직무집행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무경찰의 증원 및 충원소요 확보 등의 문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경찰 인력을 경찰관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무원 총정원제의 시행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경찰관 정원을 증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증원된 경찰공무원들의 인건비 등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역시 상당히 곤란한 문제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의무경찰 인력을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고려사항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의 이해와 정치권에서의 폭넓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무경찰 인력을 경찰관으로 대체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병역법(제24조 전투경찰대원으로서의 전입) 및 동법 시행령
-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시행령
- 대통령 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제28조(전투경찰 운용지침)
- 대통령 훈령 제28호 세부시행지침 : 제23조(경찰운용)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 대통령 훈령 제28호, 동 시행지침

### 3) 의무경찰인력에 관한 실태분석

#### (1) 의무경찰 인력의 업무현황 분석

의무경찰 인력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서울과 지방에 따라, 그리고 치안수요와 관련한 경찰서별 기능상 차이 등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의무경찰 인력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영역을 방범순찰 업무, 교통관리 및 지도단속, 요인경호 및 행사장 경비, 교통지도 단속이나 수사 및 형사과 관련 전산정보 입력 및 관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의무경찰 인력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남대문경찰서, 천안경찰서,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수사대<sup>7)</sup>를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아산경찰서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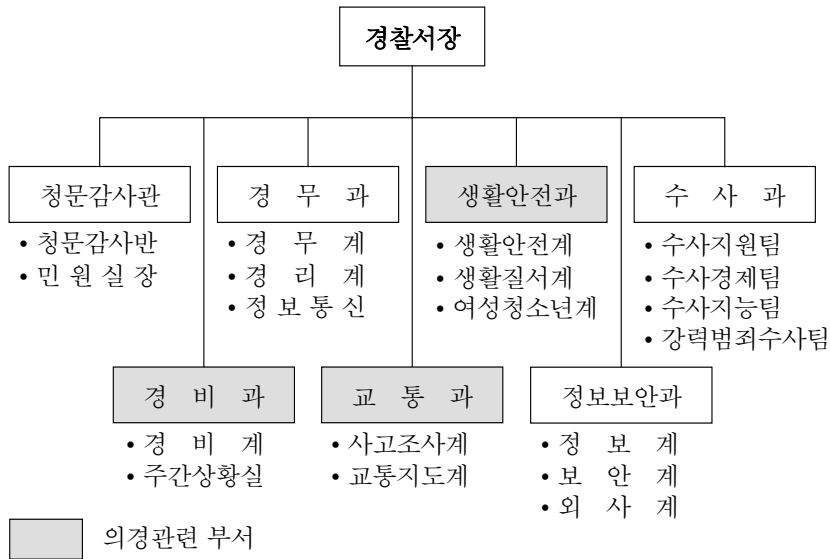
7) 지하철수사대는 지하철 차내에서는 물론 지하철과 연계된 각종 시설 내에서의 다양한 범죄와 테러예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종래에는 서울, 부산, 대구의 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지하철경찰대’라는 이름으로 7월 18일에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5개 지방경찰청 산하에 확대·편성되었다. 이들 지하철경찰대에는 모두 350여 명의 경찰관들이 편성됐다. 서울의 경우 기존의 지하철수사대 134명에 60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대장의 계급도 현재의 경정에서 총경급으로 격상시켰으며, 순찰과 수사가 주요임무로 되어 있다. 순찰팀은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20개 팀으로 운영되며, 수사팀은 10개 팀(팀당 6명)으로

대한 문서검토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의무경찰 인력과 관련한 면담조사와 문서검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남대문경찰서, 천안경찰서, 아산경찰서,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수사대의 순서로 의무경찰 인력의 업무현황을 분석·기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경찰서 혹은 기관별로 전체적인 조직구조, 의경인력 관련 주요 업무내용, 조직전체인력 대비 의무경찰인력의 비중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남대문경찰서의 의무경찰인력 업무현황

남대문경찰서의 경우 의무경찰 인력과 관련되는 부서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안전과, 교통과, 경비과 등의 3개 부서로 파악되었다.

[그림 5] 남대문경찰서 조직도



구성되었다. 순찰팀은 20개의 출장소를 중심으로 한 팀당 8~10개 지하철역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첫차 출발 시간인 오전 4~5시부터 운행이 끝날 때까지 경찰제복을 입고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팀은 사복을 입고 성추행범이나 소매치기 등의 범행을 적발하는 일을 맡게 된다.

생활안전과는 지역경찰 및 방법순찰업무에 대해 의무경찰인력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방법순찰대를 통해 지구대 및 파출소별로 방법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11> 남대문경찰서 소속 의경인력의 업무내용

부 서	인 원	업 무 내 용	비 고
생활안전과	109	◎ 지역경찰업무 지도 - 순찰관련 업무 - 방법순찰대 운영 ◎ 방법업무 지도	지구대 및 파출소 별 주기적 순찰(외근)
교 통 과	5	◎ 교통법규 위반자 처리 및 지도단속 ◎ 교통통제 관리	내근 : 전산처리업무 지원 외근 : 교통지도 단속
경 비 과	2* (109)**	◎ 요인보호 ◎ 행사장(혼잡) 재해경비 실시	외근

주 \*) 시위나 행사장경비 등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시 서장 및 경비과장의 지휘차량 운전요원이 해당됨. 서장 지휘차량 운전요원은 경무과 소속이지만, 편의상 경비과에 포함시켰다.

\*\* ) ( )의 숫자는 방법순찰대에 관한 것으로 방법순찰대는 평시에 역내 방법순찰기능을 수행하지만, 상황발생시는 경비과의 업무를 보조하여 요인보호 및 경비활동을 수행한다.

교통과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 처리 및 지도단속업무와 교통통제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무경찰 인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비과의 경우에는 요인보호 업무와 행사장(혼잡) 재해경비 업무를 의무경찰인력이 수행하고 있다. 이들 관련부서 중에서 순찰방법 활동과 관련한 방법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전과가 109명으로 의무경찰 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과의 내·외근 인력이 5명이며, 경비과의 운전요원으로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표 11> 참조).

한편, 남대문경찰서의 의무경찰인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력현황을 보면,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 및 기능직과 일반직을 포함한 경찰서 전체인력이 54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의무경찰인력은 116명으로서 2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대문경찰서는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서에 의무경찰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들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다루며 경찰특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과, 정보보안과 등의 주요부서의 경우는 관련 업무에 대해 의무경찰인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2> 남대문경찰서의 인력현황

부 서		경찰직	의무경찰	일반직	기능직	계
본 서	청문감사관	7				7
	경 무 과	17	1	1		19
	생활안전과	34	109		1	144
	수 사 과	96			1	97
	교 통 과	47	5		1	53
	경 비 과	14	1			15
	정보보안과	53				53
	<b>계</b>	<b>268</b>	<b>116</b>	<b>1</b>	<b>3</b>	<b>388</b>
지 구 대	태평로지구대	58				58
	서울역지구대	72				72
	남대문파출소	22				22
	<b>계</b>	<b>152</b>	<b>0</b>	<b>0</b>	<b>0</b>	<b>152</b>
<b>경찰서 총계</b>		<b>420</b>	<b>116</b>	<b>1</b>	<b>3</b>	<b>54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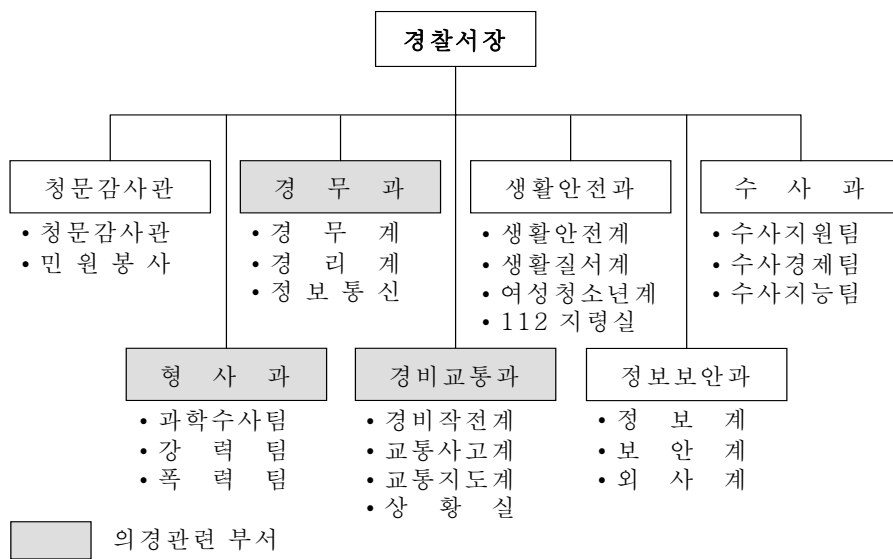
자료 : 남대문경찰서내부자료.(2005). 조직도(2005), 인력현황표(2005), 전·의경 인력현황(2005)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② 천안경찰서의 의무경찰인력 업무현황

천안경찰서의 경우에 의무경찰 인력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그림 6]과 같이 경무과, 형사과, 경비교통과의 3개 부서로 파악되었다.

경무과의 경우에는 경리계 소속의 운전요원으로 의무경찰 인력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경정비 기능을 수행한다. 경비교통과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 처리 및 지도단속업무와 교통통제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무경찰 인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형사과의 경우에는 수사진행 관련 각종 자료의 정리 및 조회업무를 의무경찰인력이 수행하고 있다.

[그림 6] 천안경찰서 조직도



천안경찰서의 의무경찰 관련 업무 및 관련 인력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이 차량점검·관리 및 운행과 관련한 경무과에 2명이 배속되어 있으며,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통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순찰대가 포함된 경비교통과가 112명으로 의무경찰 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사과의 전산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형사과에 4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표 13> 천안경찰서 소속 의경인력의 업무내용

부 서	인원	업 무 내 용	비 고
경 무 과	2	◎ 차량점검 및 관리, 관용차량 운행	차량정비 관련 내근 및 출동시 외근
경비교통과	112*	◎ 교통법규 위반자 처리 및 지도단속 ◎ 교통통제 관리	내근 : 전산처리업무 지원 외근 : 교통지도 단속
형 사 과	4	◎ 전산요원으로서 각종 정보 및 자료 조회 및 입력	내근 : 전산자료 조회 및 입력

주 \*) 방법순찰대의 인력(106명)과 일반의경(6명)을 합한 것이다.

의무경찰인력을 포함한 천안경찰서의 전체적인 인력현황을 보면,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 및 기능직과 일반직을 포함한 경찰서 전체인력이 646명으로 나타났으며, 의무경찰인력은 118명으로서 1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4> 천안경찰서의 인력현황

부 서		경 찰 직	의무경찰	일 반 직	기 능 직	계
본 서	청문감사관	7				7
	경 무 과	18	2	1	4	25
	생활안전과	36			1	37
	수 사 과	53				53
	형 사 과	64	4			68
	경비교통과	53	112		2	167
	정보보안과	29				29
	<b>계</b>	<b>260</b>	<b>118</b>	<b>1</b>	<b>7</b>	<b>386</b>
지 구 대	신안지구대	47				47
	병천지구대	42				42
	두정지구대	43				43
	쌍용지구대	44				44
	남산지구대	45				45
	성환지구대	39				39
	<b>계</b>	<b>260</b>	<b>0</b>	<b>0</b>	<b>0</b>	<b>260</b>
<b>경찰서 총계</b>		<b>520</b>	<b>118</b>	<b>1</b>	<b>7</b>	<b>646</b>

자료 : 천안경찰서내부자료.(2005). 조직도(2005), 인력현황표(2005), 전·의경 인원현황(2005)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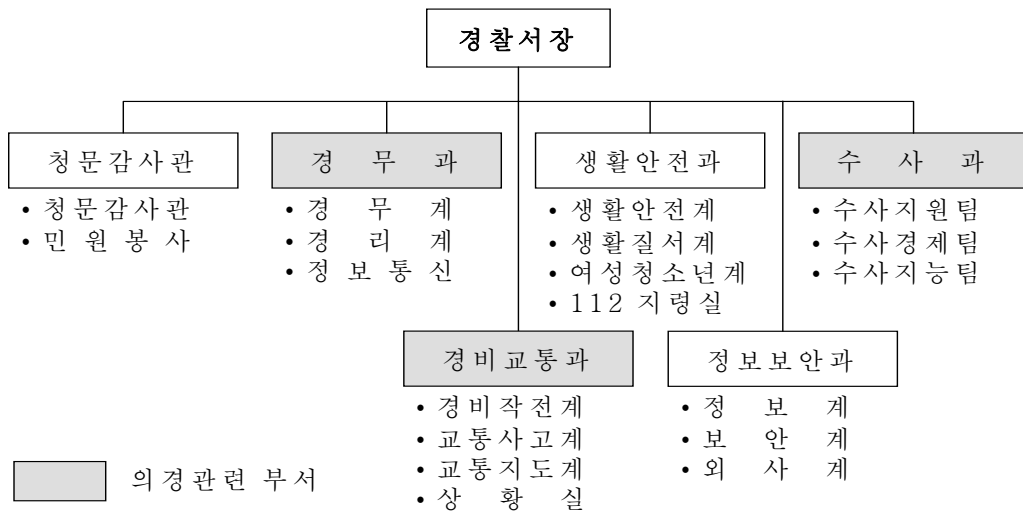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안경찰서는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의무경찰인력을 배치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대문경찰서는 방법순찰대를 평시에 역내 방법순찰기능 및 상황발생시의 요인보호 및 경비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천안경찰서는 지역 내 교통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주로 교통관리업무에 방법순찰대를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③ 아산경찰서의 의무경찰인력 업무현황

아산경찰서의 경우에도 천안경찰서의 경우와 대동소이하게 의무경찰 인력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그림 7]과 같이 경무과, 수사과, 경비교통과의 세 개 부서로 파악되었다. 다만, 천안경찰서와는 달리 방법순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무경찰의 전체적인 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아산경찰서 조직도



경무과의 의무경찰인력은 주로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 위한 경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경비교통과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 처리 및 지도단속업무와 교통통제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무경찰 인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사과의 경우에는 수사진행 관련 각종 자료의 정리 및 조회업무를 의무경찰인력이 수행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의 경우에는 형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산경찰서의 의무경찰 관련 업무 및 인력을 정리하면, <표 15>와 같이 차량점검·관리 및 운행과 관련한 경무과에 3명이 배속되어 있으며,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통제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경비교통과가 2명이 배속되어 있다. 그리고 수사과의 전산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5명의 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아산경찰서 소속 의경인력의 업무내용

부 서	인원	업 무 내 용	비 고
경 무 과	3	◎ 차량점검 및 관리, 관용차량 운행	차량정비 관련 내근 및 출동시 외근
경비교통과	2*	◎ 교통법규 위반자 처리 및 지도단속 ◎ 교통통제 관리	내근 : 전산처리업무 지원 외근 : 교통지도 단속
수 사 과	5	◎ 전산요원으로서 각종 정보 및 자료 조회 및 입력	내근 : 전산자료 조회 및 입력

주 \*) 아산경찰서의 경우, 방법순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인 의무경찰인력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경찰인력을 포함한 아산경찰서의 전체적인 인력현황을 보면,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 및 기능직과 일반직을 포함한 경찰서 전체인력이 282명으로 나타났다. 의무경찰인력은 10명으로서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lt;표 16&gt; 아산경찰서의 인력현황

부 서		경찰직	의무경찰	일반직	기능직	계
본 서	청문감사관	5				5
	경 무 과	14	3		3	20
	생활안전과	11				11
	수 사 과	49	5			54
	형사과(없음)					0
	경비교통과	32	2			34
	정보보안과	18				18
	계	129	10	0	3	142
지 구 대	운양지구대	39				39
	배방지구대	36				36
	신창지구대	29				29
	둔포지구대	36				36
	계	140	0	0	0	140
경찰서 총계		269	10	0	3	282

자료 : 아산경찰서내부자료(2005), 조직도(2005), 인력현황표(2005), 전·의경 인원현황(2005)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러한 인력의 규모는 천안경찰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은 것이며, 의무경찰 인력의 비중 역시 낮은 것이다.

#### ④ 서울지하철수사대의 의무경찰인력 업무현황

지하철수사대 의무경찰 인력의 기본적인 임무는 역구내와 전동차 내에서의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및 질서유지이며, 이를 위해 순찰과 검문검색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출장소에서는 전동차 첫차 운행시간부터 막차 운행시까지(05:30~01:00) 근무하며, 2인 1조의 근무원칙에 따라 출장소 내 근무 및 순찰근무, 그리고 상황근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지하철수사대는 연간 1,500회 이상의 범인검거실적을 올리고 있

는바,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지하철수사대의 범인검거 실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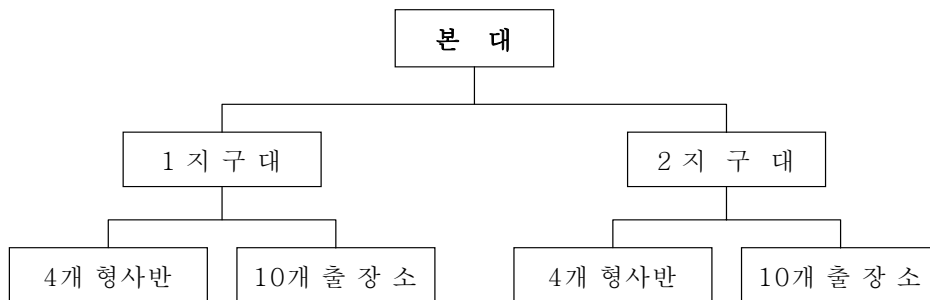
구분 기간	소 계	강 도	절 도		폭 력	성폭력	기 타
			치 기	일 반			
2004년도	1,947	2	220	45	680	521	479
2003년도	1,561	10	186	96	532	506	231
대 비(%)	+386(+24.7)	-8	+34	-51	+148	+15	+248

※ 기소중지자 3,720명 검거.

자료 : 지하철수사대 내부자료.(2005). 『지하철수사대 일반현황』.

한편, 지하철수사대의 편제는 [그림 8]과 같으며, 모두 154명(경찰 96, 의경 57)으로 구성되어 있다.<sup>8)</sup> 지하철수사대 근무하는 의경은 총 57명(정원 63명)이 20개 출장소에 분산·배치되어 있다. 형사반은 지구대별로 4개 반이 있으며(반별 경찰 5~6명), 출장소는 지구대별로 10개소가 있다(출장소별 경찰 2명, 의경 2~3명).

[그림 8] 지하철 수사대의 편제



8) 2005년 1월 1일자로 지하철수사대의 의무경찰 정원이 100명에서 63명으로 감축되었음.

지하철수사대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인력 및 경찰인력, 그리고 장비 등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서울지하철수사대의 인력 및 장비 현황

(단위 : 명 / 대)

인원	총원	경 찰 관							의무경찰
		소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36	96	1	2	9	63	21	-	40*
장비	총계	일 반 장 비							대테러 장비**
		차량	가스(고무탄) 총	3단봉	무전기	PC	캠코더	휴대용 조회기	
	2,680	5	36	145	128	37	2	30	2,297

주 \*) 지하철수사대의 의무경찰인력의 정원은 100명이었으나 요원들의 전역과 함께 충원을 하지 않음으로서 자연감소하여, 정원을 63명으로 감원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인원은 계속 줄어 2005년 6월 기준으로 40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다.

\*\* ) 방독면 등 19종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 지하철수사대 내부자료.(2005). 『지하철수사대 일반현황』.

#### ⑤ 상설부대(기동단본부, 기동대본부, 기동중대)의 의무경찰인력 업무현황

기동단본부, 기동대본부, 기동중대 등 상설부대의 핵심 업무는 시위진압 등의 치안업무 보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동단본부 및 기동대본부는 지휘 및 현장업무 지원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동중대는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동단본부의 인력구성(총 29명)은 행정(5명), 장비(4명), 운전(4명), 자체경비(8명), 상황실(6명), 무전(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기동대본부는 서울(5개), 경기(1개), 전남(1개) 등에 총 7개가 있다. 기동대본부의 인력구성(총 283명)은 행정(38명), 장비(41명), 운전(64명), 자체경비(86명), 상황실(40명), 무전(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부대의 근무형태는 기본적으로 3일을 하나의 주기로 하여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당직(24h)→일근(18h)→비번의 주기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설부대 소대원의 주간 근무시간은 약 92시간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상설부대에는 순경이상의 경찰관으로 편성된 직원중대(3개)가 있다. 직원중대의 규모 및 구성내용은 기동중대와 유사하다. 직원중대의 기본적인 역할은 일반 기동중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원중대의 근무형태는 당직위주의 3일 1주기 체제[당직(24h)→비번→비번]로 주 56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다. 직원중대의 경우에도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의무경찰 인력의 적정화 논의

① 전산요원의 적정인력 규모

전산실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에서 의무경찰인력을 전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이들 의무경찰인력은 508명에 이른다. 아래의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 인원은 모두 628명(경찰 120명, 의무경찰 50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산실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현부서 근무 의무경찰 508명을 유지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수만큼 경찰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표 19> 전산실 관련 의무경찰 현황

(2004. 12. 1 기준)

구분	지역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	정원	97	0	42	21	21	12	0	0	0	0	0	1	0	0	0
	현원	120	97	1	5	5	2	10	0	0	0	0	0	0	0	0
의무경찰		508	0	49	24	25	11	79	19	22	51	33	73	53	60	9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2004).

한편, 전산요원에 관해 남대문경찰서의 경우에는 교통의경(내근) 이외의 별도의 전산요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천안경찰서의 경우에는 형사과 및 수사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자료조회기능을 의무경찰인력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무경찰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관련 자료의 조회 및 입력 등 전산관리기능이 주요 업무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과/수사과의 의무경찰 전산요원을 경찰관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현재 4명의 의무경찰이 24시간 2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 8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② 교통의경의 적정인력 규모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통의경은 보통 크게 외근인력과 내근인력으로 나누어지는데, 교통외근 의경은 거리에서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정리 업무를 직접 처리하므로 경찰관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경찰관과 거의 동등한 비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통내근 의경은 범칙금통고서 전산입력, 범칙금·과태로 관련 우편송달, 무인장비 단속업무 후속조치 등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므로 경찰업무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통의경은 교통지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에서 2003년까지 10년간에 걸쳐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통의경은 정원(1,553명) 대비 4.8%가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자동차 수의 증가율(97.3%)이나 면허소지자 증가율(48.2%)에 비해 교통경찰관의 증가율(9.2%)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어서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인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sup>9)</sup>

<표 20> 교통업무 관련 의무경찰 현황

(2004. 10. 31 현재)

지역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479	290	138	59	85	35	155	103	27	82	50	249	81	91	34
내 근	392	67	37	18	14	15	51	23	12	25	16	43	24	37	10
외 근	1,015	215	98	38	66	17	100	76	10	56	32	181	52	50	24
영 상	72	8	3	3	5	3	4	4	5	1	2	25	5	4	-

※ 정원 1,553명 대비 4.8% 부족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2004).

따라서 특별한 대책수립이 없이 교통의경을 감축한 후 경찰관으로 대체되거나 충원되지 않을 경우 교통민원 처리지연에 따른 국민의 불편은 물론, 출퇴근 시간대 및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늘어난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사실상 교통의경에 의존하는 도로변 요인경호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교통의경의 경우 정규경찰 인력의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의경인력의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체인력의 규모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체에 필요한 최소인력규모는 전국적으로 운용중인 교통외근 의무경찰 인력 1,015명(<표 20> 참조)과 교통외근 경찰관의 주 5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족인력 580명을 합한 1,595명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9) 최근 10년간(1994~2003) 교통여건의 주요 변화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경찰청 내부자료, 2004):  
 자동차대수 : 740만대 → 1,460만대 (97.3% 증가)  
 면허소지자 : 1,489만명 → 2,206만명 (48.2% 증가)  
 교통경찰관 : 9,482명 → 10,356명 (9.2% 증가)

### ③ 방법순찰대의 적정인력 규모

사무분장규칙<sup>10)</sup>에 의하면 방법순찰대의 기능 및 역할은 기본적으로 생활안전과의 사무분장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이나 경찰서의 특성에 따라 방법순찰대의 운용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남대문경찰서의 경우와 같이 주택가 및 우범지역의 방법순찰, 시위진압, 경호업무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남대문 경찰서의 경우, 방법순찰대의 인력은 일선의 3개 소대(소대별 인력 30명)와 본부소대(16명)로 구성되어 있는데, 14명~20명의 인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방법순찰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경찰서의 경우와 같이 방법순찰이나 시위진압 등의 기능보다는 교통지도 및 관리 기능 위주로 방법순찰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방법순찰대의 기능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적인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의무경찰인력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방법순찰대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④ 지하철수사대 의경인력의 적정인력 규모

지하철수사대는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 방법순찰 및 범인검거활동을 통해 발생할 지도 모르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행 범이나 기소중지자 등의 범법자 검거·색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하철수사대의 인력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102명의 의무경찰 인력이 배속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경찰 요원들의 제대 이후 충원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그 수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하철수사대는 지하철 방법활동 및 대테러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서’로 분류되어 의무경찰 인력의 우선충원대상부서에서 제외되어 지하철수사대에 근무할 의무경찰인력의 충원이 곤란한 실정이다.

10) 서울지방경찰청.(200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표 21> 지하철수사대 근무 의무경찰인력 현황

(단위 : 명)

계	서울지하철수사대	부산지하철수사대	대구지하철수사대
102	63	26	13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2005).

서울지하철 수사대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의무경찰 정원(100명)에서 37명이 감축되어 출장소당 2~3명의 근무체제로 긴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현재에도 소재지 역 이외의 관할 역 및 전동차 내부순찰이 곤란한 실정이다. 2005년 말까지 19명의 의무경찰 인력이 전역할 경우 일부 출장소의 폐쇄가 불가피하며, 2006년 말까지 의무경찰 인력 전원이 전역할 경우에는 전 출장소의 폐쇄가 우려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하철수사대의 조직적 성격을 행정부서가 아닌 ‘현업부서’로 재정립하고, 지하철수사대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원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경찰 인력의 충원이 장기적으로는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기존 의무경찰 인력을 경찰관으로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05년 3월에 이미 증원을 요청한 바와 같이 57명의 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3교대 인원 20명, 의무경찰 정원감축 인원 37명).

⑤ 상설부대(기동중대)의 적정인력 규모

의무경찰인력으로 구성된 상설부대인 기동중대는 전국적으로 190개 중대가 편성되어 있다. 1개 중대의 인력규모는 143명이며, 본부소대(17명)와 3개 예하소대(126명 = 42 × 3)로 구성되어 있다. 방법순찰대의 기본적인 조직구조 및 인원은 <표 22>와 같다.

&lt;표 22&gt; 기동중대 관련 의무경찰 현황

구 분		인원 수	비 고	
기 동 중 대 (190)	중대 계	143	본부 17명+126(3개 소대 × 42)	
	본부	계	17	
		행정	4	인사, 보급, 경리, 장비 각 1
		취사	5	주·부식 조리, 배식, 세척 등
		운전	7	지휘차량 1, 버스 4, 식사차량 1, 가스차량 1
		무전	1	중대장 무전
	소대	42	출동 34명, 무전 1명, 사고 7명	
합 계	26,941	143명×187개 중대, 100명×2개 중대, 원주 정원 無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2005).

경력(警力)운용계획 측면에서 기동중대의 근무형태를 예로 제시하면 <표 23>과 같다. 경찰청 경비부 관할의 기동중대는 모두 94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상황대비, 시설경비, 거점근무, 방법근무, 교통근무 등 다섯 가지의 근무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장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투입되기 위한 출동대기 중대가 있으며, 전혀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중대로 위로특박 및 휴무인 중대가 있다.

<표 23>에서 월요일의 근무상황은 위로특박 13개 중대, 전·의경 휴무 9개 중대, 경찰관(직원중대) 휴무 2개 중대 등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24개 중대 외에 70개 중대가 근무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날인 화요일의 근무상황은 출동대기(4개 중대) 및 위로특박 중인 일부병력(4개 중대)까지 상황대비 근무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상황대비 근무에 추가로 2개 중대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무에 투입되는 경찰병력은 사실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고수해야 하는 만큼 근무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전일제 근무형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기동중대에 배속되어 근무중인 의경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23> 기동중대의 근무형태 현황

근무일	상황 대비	시설 경비	거점 근무	방법 근무	교통 근무	위로 특박	출동 대기	휴 무		계
								전·의경	경찰관	
'05. 00. 00(월)	9	27	5	21	4	13	4	9	2	94
'05. 00. 00(화)	25	28	5	13	4	9	0	8	2	94
'05. 00. 00(수)	27	27	3	19	5	3	0	8	2	94

상설부대 소대원의 주간 근무시간은 약 92시간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설부대 중 기동중대의 일선소대에 근무하는 의무경찰 1명당 충원비율은 단순논리로 1 대 3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근무대기시간(24시간 상시대기 및 휴식이나 취침시간 등)까지 엄격히 적용할 경우 1 대 4의 비율까지도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예산 및 인력수급요인 등을 고려한다면 의무경찰 1인당 정규경찰 2.5명 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업무 및 장비업무분야는 1.5명 정도가 타당하며, 상황실은 1.75명, 운전업무, 자체경비업무 및 무전업무분야는 1 대 2.5명 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2. 해외사례 벤치마킹 및 시사점

### 1) 영국의 특별경찰(Special Constabulary)과 지역보조경찰(Community Support Officer: CSO) 제도<sup>11)</sup>

#### (1) 영국의 경찰제도 개요

11) 경찰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2003).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pp. 120~187.

## ① 연 혁

고대로부터 자경대장(Constable) 등 주민야경제도를 모태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을 유지하다가 1964년 경찰법을 통해 자치경찰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조정하였다. 수도경찰청은 1829년 창설시부터 수도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무장관 직속 국가경찰로 운영되었으나, 2000년 자치경찰로 전환되었다.

영국은 지방마다 제도의 차이가 있어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은 영미법 체제로 운영되는 반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방은 대륙법 체제로 운영된다.

## ② 조직 및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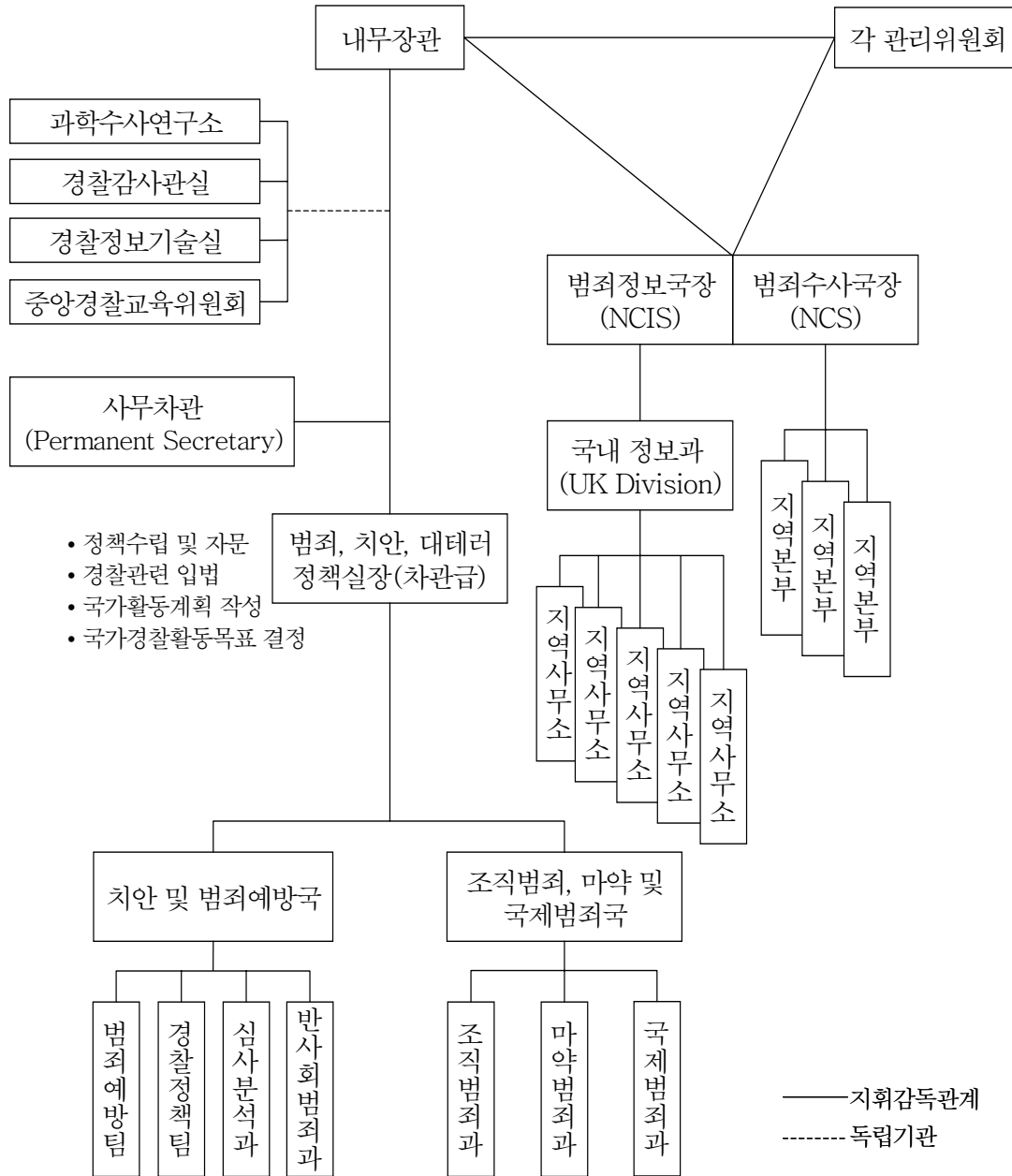
### 가. 국가경찰(중앙경찰기구) 운영체제

영국의 국가경찰(중앙경찰기구) 조직을 정리한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구조는 내무성장관(Home Secretary), 관리위원회, 중앙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Squad: NCS), 중앙범죄정보국(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NCIS)의 3각 체제로 되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실무부서는 내무성장관 하의 치안 및 범죄예방국과 국제범죄국, 그리고 범죄정보국장 및 범죄수사국장의 지역사무소 및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내무성 직속으로 내무성과 독립된 관리위원회를 두어 과학수사연구소(Forensic Science Service: FSS), 중앙경찰교육위원회(Centrex), 경찰정보센터(Police Information Technology Organization : PITO)를 직접 관장·운영하고 있다.

독립된 관리위원회(Service Authority) 산하에 범죄정보국 및 범죄수사국을 운영하고 있다. 내무성장관은 수상이 임면권을 행사하며, 중앙범죄수사국장 및 중앙범죄정보국장은 내무성장관이 임면권을 행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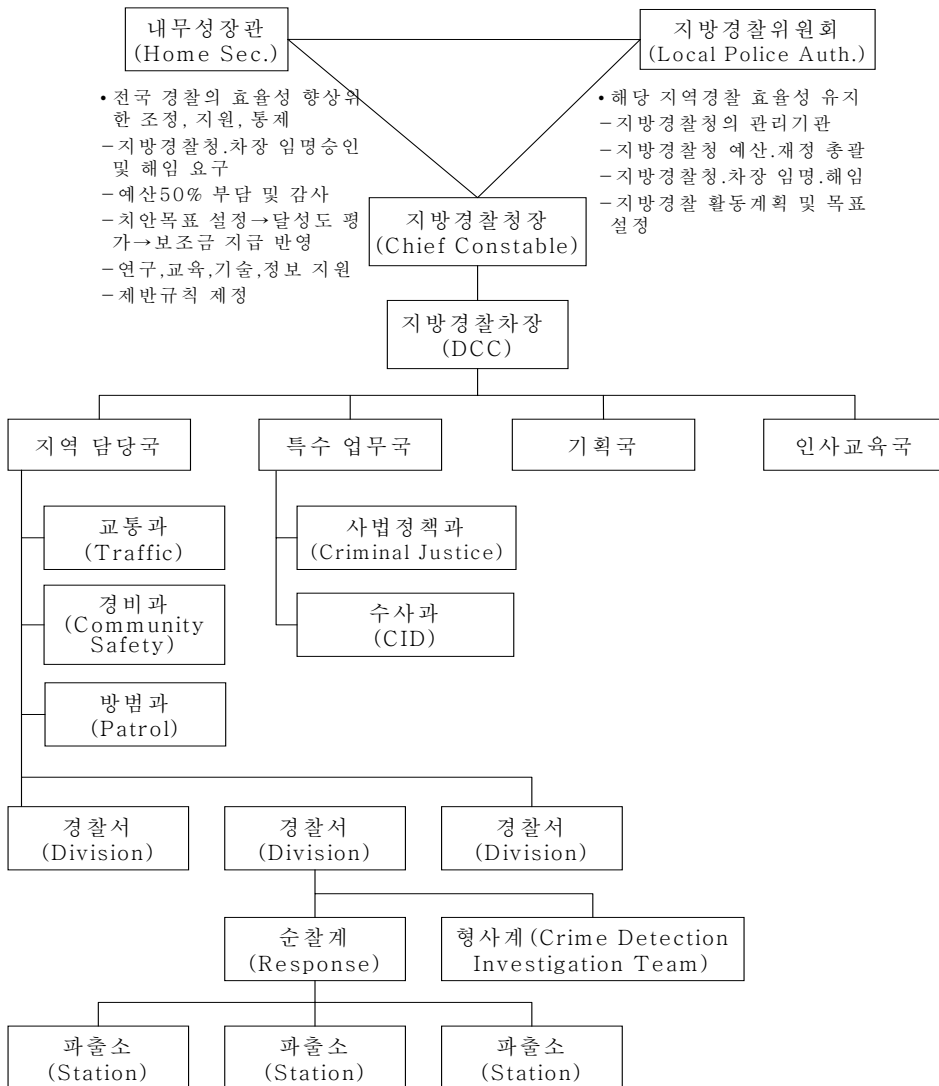
[그림 9] 영국의 국가경찰 조직도



나. 지방경찰기구 운영체제

영국의 지방경찰 조직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 10]과 같이 내무성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장의 3각 체제(Tripartite System)를 구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그림 10] 영국의 지방경찰 조직도



내무성장관은 지방경찰위원회 선임(전체 17명 중 5명), 국고보조금 책정(최고 50%까지), 경감 이상 간부교육정책연구 및 과학수사지원을 통해 지방경찰을 지도·조정·통제한다.

그리고 도(County) 단위로 독립된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고 있다. 실무부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지방경찰차장이 지역담당국, 특수업무국, 기획국, 인사교육국의 주요 부서를 관할한다. 일선 경찰서는 지역담당국의 하부기관으로서 순찰계와 형사계가 주요 부서이며, 순찰계의 관할 하에 일선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위원회가 임명한다.

#### 다. 예산

한편, 경찰예산은 중앙정부가 85%(내무부: 50%)를 부담하며, 지방세로 나머지 15%를 직접 징수한다. 지방의회의 관여는 예산부담과 관련하여 경찰위원회로 하여금 출석·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에 그친다.

### (2) 특별경찰제도와 지역보조경찰제도의 성격과 기능

특별경찰(Special Constabulary)과 지역보조경찰(Community Support Officer) 모두 경찰조직도 상에는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방법순찰 등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정규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 가. 특별경찰(Special Constabulary)

특별경찰은 1964년 경찰법에서 지방경찰청장에게 특별경찰을 임명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특별경찰국(the Special Constabulary)을 설치함에 따라 탄생하였다. 특별경찰은 정규 경찰력을 보조하기 위해 지방경찰로부터 교육받은 자원봉사 경찰관(a force of volunteers)을 말하며, 정규경찰과 비슷한 복장을 착용하고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특별경찰은 정규경찰과 지역사회의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며, 주당 최소한 4시간 이상의 근무를 수행하는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도보 순찰
- 각급 학교에서 공공의 안전에 대해 가르치는 일 수행
- 사고, 폭력사건, 화재 등의 현장에서 경찰관련 업무 보조
- 지역의 주요한 행사의 안전활동 보조
- 법정에서의 증거 제시
- 미성년자 음주, 범죄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우범지대 예방활동
- 범죄예방을 위한 조언

#### 나. 지역보조경찰(Community Support Officer; CSO)

지역보조경찰은 2002년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위원회에 고용된 공무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보조경찰은 지역치안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방법순찰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규경찰이 보다 많은 시간을 강력범죄 등의 예방과 수사에 주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보조경찰은 경미한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경찰업무를 중심으로 정규경찰의 수행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3) 특별경찰제도와 지역보조경찰제도의 시사점

영국의 경찰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자치경찰이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다. 영국은 자치경찰의 전통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앙경찰기구의 신설과 같이 범죄의 광역화·조직화·국제화 등 치안환경의 복잡다기화(複雜多岐化)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중앙통제장치와 기법을 강화하여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경찰관리기관으로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조직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내무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경찰기구를 신설하는 등 신중앙집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별경찰제도와 지역보조경찰제도는 정규경찰력 이외의 기구로서 정규경찰이 전체사회의 복잡한 치안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은 물론 방법순찰 등의 기능을 통해 국민·주민들에게 경찰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경찰의 경우는 방법순찰을 통한 우범지대 예방활동, 주요 행사의 안전활동 보조, 기타 경찰관련 각종 업무 보조 등 우리의 의무경찰 인력의 기능과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는 치안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경찰 1인당 국민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의무경찰제도의 존폐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안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정규경찰과 구분되는 기구까지 창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현행 의무경찰제도를 가능한 존치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품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차원에서 교통 및 방법순찰 기능을 특화 내지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도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치안서비스의 강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특별경찰제도와 지역보조경찰제도의 시사점은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치안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자치경찰시대를 맞이하여 교통 및 방법순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무경찰제도로 발전시킴으로써 자치경찰제도하에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2) 독일의 기동경찰(Berritschaftpolizei) 제도<sup>12)</sup>

### (1) 독일 경찰제도의 개요

12) 경찰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2003).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pp. 259~274.

## ① 연 혁

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기본법(Grundgesetz, 1949)’은 연방과 주의 입법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업무에 대해서는 각 주의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주의 경찰법은 주로 경찰의 임무와 권한, 경찰의 구조와 편제,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직상 연방경찰은 연방정부 내무부에, 주경찰은 주정부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방경찰기관으로는 연방헌법보호국, 연방국경경비대, 연방수사국 등이 있다.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호 독자적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 간의 상명하복(上命下服)과 같은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방경찰은 국경경비 등 특수임무만 맡고 있어 사실상의 지역치안은 주경찰이 담당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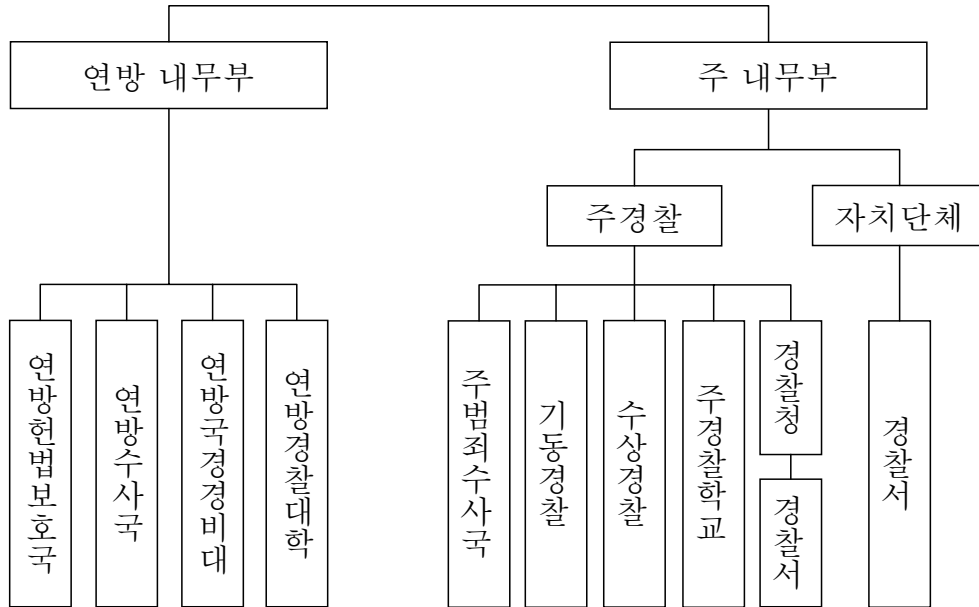
1970년대 들어 범죄양상의 변화와 테러범죄 등의 증가를 계기로 대테러부대가 설치되고, 신변경호업무의 증가, 경찰전산업무 기능 강화 및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의 개정이 있었다. 과거에는 각 주 또는 경찰대가 각자 선정한 계급·제복을 갖추고 교육훈련도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그러나 1972년에는 연방 및 각 주 내무장관들로 구성된 내무장관회의에서 경찰조직분야를 제외한 주 경찰의 임무 및 권한 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서독의 대내 안전계획을 채택하였다.

1976년의 「연방 및 각 주 통일경찰법 모범 초안」 및 최종안 제정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경찰법의 개정을 단행하여 주경찰의 복식 및 계급체계와 교육훈련체계 등을 통일하였다. 통일 후에는 구동독의 중앙집권식 치안조직을 서독식으로 새로운 주경찰 조직을 구축하고, 기존인력을 배치하고 고위직은 서독출신으로 대체하여 충원하였다.

## ② 조직 및 운영체제

독일의 경찰제도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공조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의 특성에 따라 경찰하부조직이 다양하며, 일부 주에서는 보조경찰(주차단속요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림 11] 독일의 연방경찰 및 주경찰 조직도



가. 연방경찰

연방경찰은 연방내무장관 산하에 설치된 10개 국(Directorate) 조직의 하나로서 경찰국(Directorate-General Police Affairs)이 있으며, 범죄예방 및 마약업무 등을 담당한다. 전국적 사항, 긴급사태 등을 위한 조직이므로 경비, 공안 등 제한된 범위에서 독자적 경찰기관을 소유한다.

연방내무부 소속으로 대표적인 치안관련기관은 [그림 11]과 같이 연방헌법보호국, 연방국경경비대, 연방수사국 등이 있다. 연방내무장관은 테러, 스파이 등 공공안전을 해하는 범죄에 대한 방지대책 등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연방경찰은 주경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정부담이나 지휘통솔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연방헌법보호국은 1950년 독일기본법을 근거로 설치하였으며, 국가방첩임무와 극좌·극우의 합법·비합법단체 및 문제인물에 대한 감시업무, 스파이 등 기본법 위반의

협약이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업무와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이 부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경찰기관이지만 집행기능은 없다. 즉 구속·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심문을 위한 소환이나 강제수단 행사는 불가능하며, 의회의 감독 하에 우편개봉이나 전화도청이 가능하다. 연방헌법보호국의 지방조직으로 각주에 주 헌법보호국이 있으나, 연방 조직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연방국경경비대는 1951년 연방국경경비대법을 근거로 창설하였으며, 독일국경 전체와 공항 등에서 헌법기관과 외국기관의 보호, 테러 등의 조직범죄에 대한 대처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경보호, 연방조직 보호, 해안경비, 국가비상사태 방지 및 경찰력을 지원한다. 1953년에 여권통제업무가 부여되고 1956년에는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비하기 위해 연방군대를 배치하였다. 1972년에는 테러 및 인질범죄 등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부대(GSG-9) 창설, 정부요인 및 헌법기관 등의 보호를 위한 신변보호 업무, 대규모 사고 발생시 각주 경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강력한 연방경찰조직이 되었다.

연방수사국은 1951년 독일의 각 주에서 발생하는 전국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범죄수사국설치법에 의거하여 창설되었다. 국제범죄, 위조화폐범죄 수사, 연방요인 신변보호 업무, 정치적 동기의 범죄 수사, 수사경찰의 교육업무 등을 담당한다. 각 주에 연방수사국과의 업무협조 및 관할 내에서의 수사업무 보장을 위한 주(州)수사국을 설치하여 각 주와의 협조 및 지원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의 요청이 있거나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 특별장비와 전문가로 주경찰을 지원하여 상호협조를 수행한다.

#### 나. 주경찰

주정부를 국가로 하는 국가경찰의 원칙으로 각 주정부의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찰을 운영한다. 주 내무부가 최상급 경찰관청이며, 경찰법의 시행 및 각종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주 내무장관이 경찰을 관리하고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있다. 경찰청장(Polizeipräsident)은 민간인으로 임명하여 민주적 통제에 의한 경찰권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국가경찰형태에 읍면(Gemeinde)경찰이라는 자치경찰을 가미하여 운영한다. 핫센, 바덴 브르텐부르크, 브레멘 주 등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점차 국가경찰의 형태로 단일화되어 가고 있다.

## (2) 기동경찰제도의 성격과 기능

독일의 경찰제도를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치안경찰(Schutzpolizei), 수사경찰(Kriminalpolizei),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 기동경찰(Bereitschaftpolizei)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안경찰(Schutzpolizei)은 전통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으로 정복을 착용하고 방법순찰업무, 교통지도 및 관리업무, 지역업무, 경제사범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경찰(Kriminalpolizei)은 치안경찰과는 달리 사복을 입고 근무하며, 범죄수사 및 예방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사건을 직접 인지하거나 치안경찰을 통한 간접 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치안경찰과 통합된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자를란트, 슈레스 비히 홀슈타인,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주 등에서는 처음부터 치안경찰과 분리된 이원적 조직구조를 하고 있다(이윤근, 2002: 337).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은 우리의 해양경찰과 유사하며, 독일의 수상로 및 내수면과 항구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임무로는 각급 경찰관서로부터 위임된 업무, 해난사고의 조사 및 예방, 항만에서의 각종 경찰통제업무, 환경오염 범죄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동경찰(Bereitschaftpolizei)은 기능적 차원에서 다른 경찰과 구분되는 것으로, 주로 폭동이나 시위 등 전국적인 긴급치안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950년 연방과 주정부 간의 행정협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각 주에서는 기동대를 설치하여 교육 및 배치업무를 담당하고, 연방에서는 이들에 대한 통일적 근무규정을 제정하고 무기·통신 및 차량 장비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연방경찰과 주경찰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다. 기동경찰의 주요 임무로는 국가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의 대형사고의 발생시에 전국적인 경찰력을 지원하고, 대형사고·대규모 시위·스포츠 및 각종 행사에 구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찰력을 지원하며, 비간부경찰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3) 기동경찰제도의 시사점

독일의 기동경찰(Bereitschaftspolizei)제도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유사한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전투경찰대 혹은 방범순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방범순찰 및 지역에서의 경찰력 강화, 대규모 시위의 평화적 진행 유도, 각종 대규모 행사 등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찰력을 투입·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경우와 대단히 유사하다.

독일 기동경찰의 경우와 같이 다수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국가적·지방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의무경찰제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연방경찰과 지방경찰(주경찰)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자치경찰제 실시와 더불어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한 경찰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프랑스의 보조경찰(Les policiers auxiliaires)과 치안보조원(Les adjoints de sécurité) 제도<sup>13)</sup>

#### (1) 프랑스 경찰제도의 개요

##### ① 연 혁

프랑스 경찰제도는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경찰은 다시 국립경찰과 군인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찰제도는 프랑스혁명 이전의 루이 14세 때인 1667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 프랑스 경찰의 시작은 1881년에 경찰을 감독하기 위해 내무부 안에 경찰청(Sûreté Générale)을 창설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34년에는 기존의 내무부 산하 경찰청을 국립경찰청으로 변경하면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였으며, 1966년 법률에 의해 내무부의 국립경찰청과 파리경찰청을 통합하여 국립

13) 경찰청 내부자료.(2003). 「유럽 경찰제도 및 법령 소개」, pp. 5~18.

경찰(Police Nationale)로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평시 군인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내무부 장관으로 일원화하여 경찰체제의 통합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1884년 4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인구 1만명 이하의 읍면장(maire)이 자치단체 내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도는 1977년 1월 27일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것인데, 그 후 1999년 4월의 자치경찰법에 의거하여 자치경찰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표 24>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와 경찰조직

지방행정구역	성 격	국립경찰	군인경찰	자치경찰
		인구 2만 이상 시 관할	인구 2만 미만 시 관할	인구 2만이하 원칙 2만 이상도 가능
레 종 (Région)	-광역자치단체 -경제권역 확대 필요성 으로 설치된 행정단위 -지사는 큰 도의 지사 가 겸임 -26개	지역수사국 (SRPJ)	군경찰연대 (Légion)	
도(道) (Département)	-중간자치단체 -임명직 지사 -국가행정사무 -100개	파리경찰청 도 공안국장 (DDSP)	군경찰대대 (Groupement)	
군(郡) (Arrondissement)	-임명직 군수 -339개		군경찰중대 (Compagnies)	
강 동 (Canton)	-도의원선거구역 -의회, 행정관청 없음 -3,840개		군경찰반 (Brigades, 3,640개)	
시읍면 (Commune)	-기초자치단체 -시장의회간선 -파리는 도와 꼬뮌의 이중적 지위를 가짐 -36,763개	-경찰서(463 개) -파출소, 지서 (177개, 일부지 역만 설치)		-시경찰(3천개 시, 14,400여명) -전원감시원 (3,80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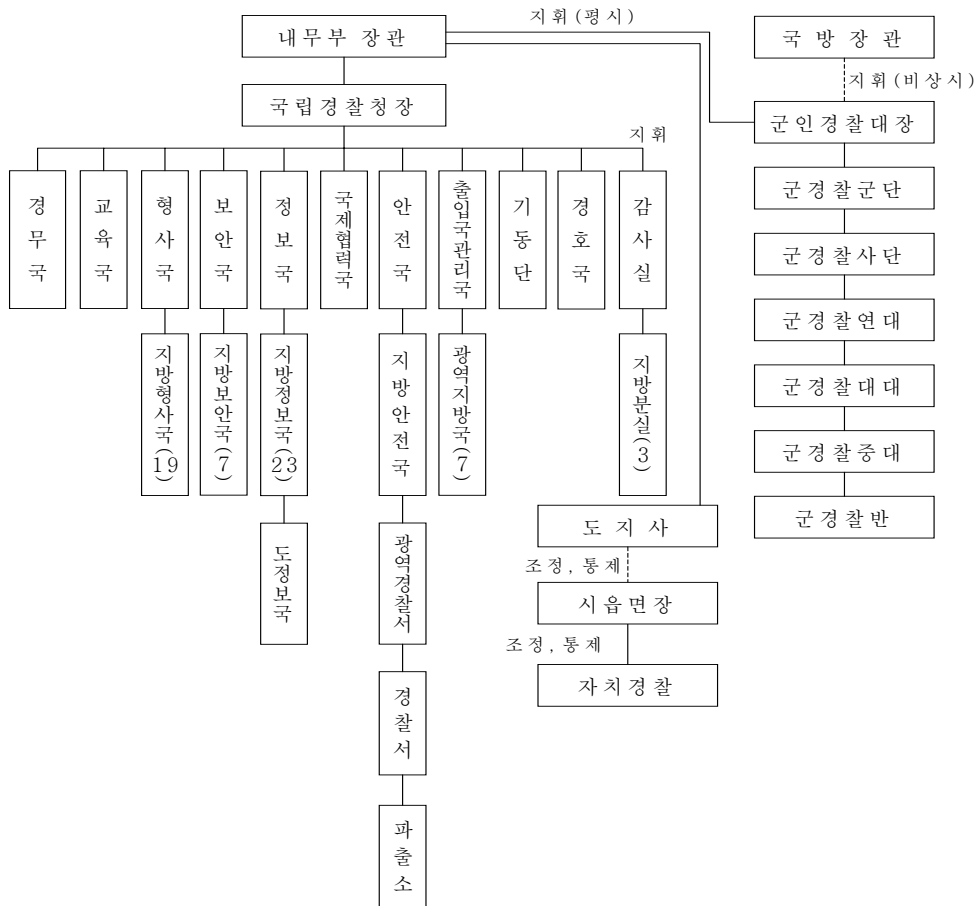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2003). 「유럽 경찰제도 및 법령 소개」, p. 6.

② 조직 및 운영체제

가. 국가경찰의 운영체제

국가경찰은 국립경찰과 군인경찰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국립경찰은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내무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주로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반면, 군인경찰 역시 내무장관의 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나 농촌의 치안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12] 프랑스의 경찰조직도



국립경찰(Police Nationale)은 내무부 소속으로 내무부의 3개 총국(국립경찰총국, 중앙행정총국, 지방자치총국) 중의 하나로 국립경찰총국장 아래 우리의 경찰청과 유사한 조직구조를 가진다([그림 12] 참조). 지방조직으로 파리에 파리경찰청이 있고, 기타 지방에 중앙부서의 각 분국이 있으며, 지방의 국가경찰은 내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도지사를 통하여 관리된다.

안전국은 지방조직으로 각 도에 지방안전국이 있고, 그 산하에 광역경찰서 및 경찰서를 두고 있다.<sup>14)</sup> 형사국은 지방조직인 지방형사국이 19개소(2~8개 도를 담당)에 있으며, 주로 조직범죄, 특수범죄, 경제사범 등을 처리한다. 정보국의 지방조직인 지방정보국을 도 또는 광역도인 레종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안국은 7개, 감사실은 3개의 지방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파리경찰청 청장은 내무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내무장관 직속의 국가경찰권을 행사한다. 다른 지역은 도지사가 경찰행정을 총괄하는데 비해 파리는 파리경찰청장이 총괄하며, 아울러 주위의 3개 도의 치안도 담당한다.

군인경찰(Gendarmerie Nationale)은 파리시 및 국립경찰기관이 없는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와 농촌지역 등 전 국토면적의 95%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 소속이지만 평시에 경찰업무를 집행할 때는 내무장관이 지휘하고, 비상시에는 국방부장관이 지휘한다. 군인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에 따라 내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도로교통 안전 확보, 범죄수사 등 국가경찰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직무를 수행한다. 군인경찰의 지방조직으로 도 군인경찰과, 군인 기동경찰대, 공화국경비대 등이 있다.<sup>15)</sup>

### 나. 자치경찰의 운영체제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장은 도지사(국가대표)의 행정통제 하에서 자치경찰을 설치·

14) 프랑스의 지방경찰조직은 한국과는 달리 경찰서에 경찰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국의 지방조직에 다른 경찰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김형만 외, 2003: 535).

15) 도 군인경찰은 군인경찰소대로 나뉘어 전국을 관할하며 행정·사법·헌병경찰업무를 수행한다. 군인 기동경찰대는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다중범죄 진압과 대규모 집회·시위발생시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며, 공화국경비대는 파리관할 직할부대로 대통령 경호, 중요시설 경비, 의전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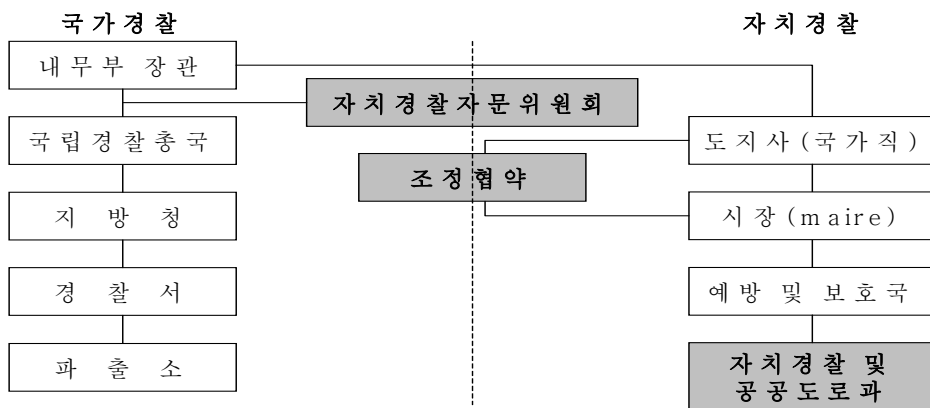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지방자치법 2212-1조).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자치단체 (Commune) 수준에서 국가경찰(국립경찰+군인경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질서 유지 및 자치단체의 조례 이행 등 제한적 경찰업무의 수행을 위해 자치경찰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경찰은 방법·수사·교통·질서유지 등 일반적 경찰업무를 담당하는데 비해, 자치경찰은 범죄예방 순찰, 기초질서 유지, 자치법규 집행 등의 극히 지역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할지역과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분업 및 협동체계를 이루며 상호충돌이 없다([그림 13] 참조).

자치단체인 시의 규모 및 재정자립도, 시장의 치안정책에 따라 채용인원이나 업무범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6)</sup>

[그림 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마르세이유 시경찰 사례)



16) 1~2명의 자치경찰을 채용하고 있는 곳이 64.1%, 3~4명이 15.9%, 5~49명이 19.1%, 50~99명이 0.7%, 100명 이상 되는 곳은 0.29%(니스, 리용, 마르세이유, 칸느, 스트라스부르의 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내부자료, 2003: 11-12).

(2) 보조경찰과 치안보조원 등 보조요원(les agents supplétifs)의 성격과 기능<sup>17)</sup>

프랑스의 국립경찰의 구성원은 크게 정규경찰관(les personnels actifs), 행정·과학 기술요원(les personnels administratifs, techniques et scientifiques), 보조요원(les agents supplétifs)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보조요원은 국립경찰의 정식 공무원들을 일부 직무에서 보조하기 위해 모집된 요원들로 사법적 효과가 없는 용어로 보조경찰(Les policiers auxiliaires)과 치안보조원(Les adjoints de sécurité)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조경찰(Les policiers auxiliaires)은 1985년 8월 국립경찰 현대화 관련 법률로 병역법을 개정하여 설치한 것으로 경찰관의 10%의 범위 내에서 경찰학교에서 2개월간의 교육 이수 후 국립경찰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도록 하였다.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최대 8,500명까지만 모집하고 있다(국방의무가 폐지되고 치안보조원 직의 신설로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경찰직무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공공도로상의 현장근무로 경찰의 업무 가시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치안보조원(Les adjoints de sécurité)은 청년구직자의 채용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1997년 10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국립경찰에 창설되었다. 350,000명의 청년을 채용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립경찰에 20,000명이 배정되었으며, 공법상 계약의 편익을 받게 되었다. 보조경찰관의 정원한계와 치안보조원의 수는 관계가 없다. 치안보조원 설치의 이유는 보조경찰관의 인력부족 대체, 주민과의 접촉 원활 도모, 젊은 층과 이민자들과의 관계 제고,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경찰의 위상 제고 도모 등이다. 이들은 정규경찰에 비해 사법적 권한이 없으며, 정규경찰의 업무보조와 대민관계의 개선 및 발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3) 보조경찰과 치안보조원의 시사점

17) Franlois Chaponneaux, Pascal Cirault, Evence Richard,(2003). La Police Municipale-Missions, Moyens et Contrôles, Dexia: Imprimerie Nationale., pp. 233~240.

오늘날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그리고 복잡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며 국민들의 치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하다면, 의무경찰 제도의 발전적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4) 미국의 지역보조경찰제도(Auxiliary Police Offices)

##### (1) 미국의 경찰제도 개요<sup>18)</sup>

###### ① 연 혁

미국의 경찰제도는 각 지방정부에 따라 형태, 구조, 그리고 운영방식 등이 상이하다. 대부분의 대도시 경찰은 시의 한 부서로 존재하며, 경찰의 장은 시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위원회는 시카고시(市)와 디트로이트시(市)의 경우처럼 관리기관으로서 운영되는 형태가 있으며, 로스엔젤레스시(市)와 같이 대부분의 시(市)에서는 경찰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찰제도는 영국의 전통을 계승하여 가장 지방분권적인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 인사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경찰의 직무는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경찰관은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찰제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식민지시대에는 치안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830년대부터는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경찰조직이 등장하였다.

20세기이후 직업경찰제도가 확립되었으나,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의 진압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해 흑인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경찰이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또

18) 경찰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2003).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pp. 191~235.

한 1970년대 초에는 뉴욕경찰의 부정부패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의 비리와 부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크넵프 위원회(Knapp Commission)가 결성되어 각 경찰서에 감사과(Internal Affair Unit)를 설치하여 경찰관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수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관 선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② 조직 및 운영체제

### 가. 연방경찰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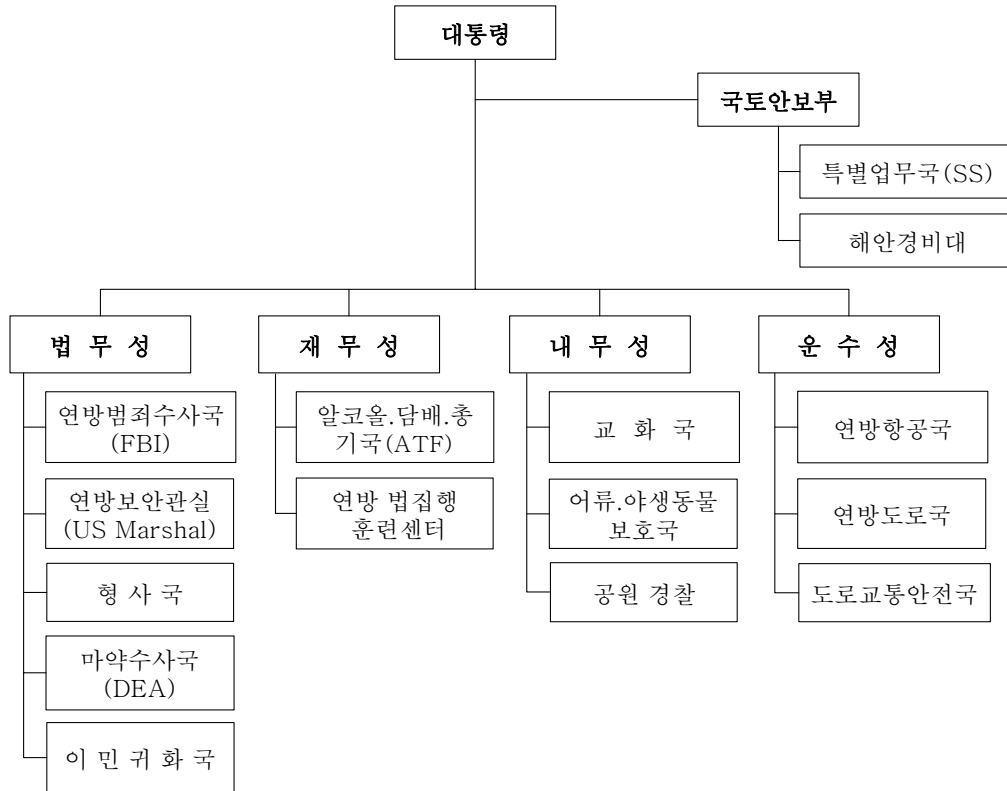
지방자치의 전통으로 경찰기능은 연방정부의 관할 밖으로 간주되었으나 우편물 사취와 같은 연방범죄의 발생에 따른 대응책으로 연방기관이 창설되었다(이윤근, 2002: 179). 연방의 법 집행기관인 연방경찰은 주로 수사와 조사에만 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질서유지, 대민봉사, 치안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경찰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연방법 집행관은 국가적 범죄나 주간(州間)의 범죄단속에 한정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주법이나 지방정부의 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sup>19)</sup> 이와 같은 연방법의 집행 기관에는 국토안보부(DO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법무성, 재무성, 내무성, 운수성 등의 주요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안보부(DO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국내외의 테러공격을 예방하고 마약운반과 테러의 연관성을 감시하고 단절하기 위한 노력, 테러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 미국시민의 권리보호 및 재난재해에 대한 지원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구조로는 기존의 부처 또는 일부 업무를 흡수·통합하여 운영되며, 차관급을 국장으로 한 5개국과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0)</sup>

19)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의 경우에도 연방법을 집행할 수 없다. 말하자면, 경찰기능에 있어서 연방과 지방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으며, 수사·조사 이후의 재판과정도 엄격히 분리된다.

20) 5개국에는 국경 및 수송안전국(BTS), 긴급사태 대비 및 대응국(EPR), 과학기술국(S&T), 정보분석 및 기간시설 보호국(IAIP), 관리국 등이 포함된다. 한편 주요 부속기관으로는 해안 경비대(US Coast Guard), 특별 업무국(Secret Service; SS), 시민권 및 이민국(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주 및 지방정부 조정국(Office of State and Local Gov't Co-ordination), 그리고 감사국(Office of Inspector

[그림 14] 미국의 국가경찰 조직도



#### 나. 지방경찰기구 운영체제

미국의 지방경찰조직은 그 조직형태의 측면에서 주정부에서 카운티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주 경찰국, 고속도로 순찰대, 카운티 및 도시단위 경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성수, 2002). 주 경찰의 경우에도 경찰국(State Police)을 두는 경우와 경찰청(Department of Public Safety)을 두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미시간주, 뉴욕주, 버지니아주 등 21개 주가 있는데, 폭넓은 일반적 경찰권을 가지고 특수범죄 및 주요범죄 등에 대해 주 전역에 걸친 법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범죄

General) 등이 있다.

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청 형태의 조직을 취하는 주의 경우는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뉴저지주, 텍사스주 등 9개 주가 해당된다. 이 형태의 조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범죄급증으로 각종 법집행기관의 난립에 따른 종합·조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두된 것으로 1970년대 이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규제하는 각종 교통관계 업무와 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로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의 유일한 경찰조직으로 일부 주정부는 범죄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경찰로는 카운티 경찰, 보안관(Sheriff), 검시관(Medical Examiner), 뉴욕이나 LA 혹은 시카고 등의 대도시 경찰과 10명 이하의 작은 규모에서 대규모의 경찰서까지 다양한 규모로 조직되는 소도시(Town) 경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경찰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조직구조상의 측면에서 의결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국장을 두는 이른바 경찰위원회형과 경찰국장만을 두는 독임제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경찰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 2003: 218-227). 경찰위원회형에는 로스엔젤레스시 경찰국을 비롯하여 시카고시, 디트로이트시, 샌프란시스코시, 필라델피아시, 세인트루이스시, 캔자스시 경찰국 등이 속하며, 독임제형에는 뉴욕시, 워싱턴 DC, 오스틴시, 샌디에고시, 콜럼버스시, 휴스턴시, 미니아폴리스시, 피닉스시 경찰국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표 25> 미국의 지방경찰조직의 특징(I)

	경찰위원회		경찰국장	
	구성	기능	임면	기능
로스엔젤레스시 경찰국	· 5년 중임 위원 · 시장이 임명, 시의회 승인	· 최고관리기관 · 경찰국장 평가 및 보수결정 · 경찰감사관 임면	· 5년 중임 · 경찰위원회/시의회 해임권	· 경찰업무 총괄 · 경찰인사·재무·조직관리
시카고시 경찰국	· 5년 임기(9인) · 시장이 임명, 시의회 동의	· 경찰국장 후보추천 · 경찰관련 규칙제정 · 예산제출 · 징계경찰관 청문	· 경찰위원회 추천 · 시의회 동의, 시장이 임명	· 경찰업무·인사·재무·조직관리

디트로이트시 경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 임기(5인)</li> <li>•시장이 임명, 시의회 승인</li> <li>•충분한 이유 없는 해임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규정 제정(경찰국장 자문, 시장 승인)</li> <li>•예산검토·승인</li> <li>•민원접수 및 수리</li> <li>•비위경찰관 징계</li> <li>•연례보고서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관 중 시장이 임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위원회 정책·규정에 의한 관리</li> </ul>
샌프란시스코 시 경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명의 위원</li> <li>•시장이 임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감독권</li> <li>•경찰국장 해임권</li> <li>•시의회 승인으로 경찰서 관할 조성 및 경찰서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의 임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부서 경찰관 임명·해임</li> </ul>
필라델피아시 경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임(15명)·비상임(4명) 위원</li> <li>•시장이 임명(7명의 상임, 2명의 비상임 위원은 의회추천 후보자 중 임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식적 민간인 경찰감독기구</li> <li>•시 행정책임자 소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행정책임자가 시장승인으로 임명(임기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국장(2명) 임명</li> </ul>
세인트루이스 시 경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주지사(당연직 위원)가 상원동의로 4명의 위원 임명</li> <li>•임기 4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결정 등에 대해 경찰국장과 협조</li> <li>•모든 경찰관 임명</li> </ul>		
캔자스시 경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지사가 상원동의로 4명 위원 임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경찰 운영</li> <li>•경찰업무 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위원회의 임명(해임시 청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인사·재무·조직관리</li> </ul>

## (2) 지방경찰의 조직구조상의 특징

미국의 지방경찰은 인구가 적은 Town, Borough 및 Village 등은 순찰경찰관만 보유하고 수사 등의 업무는 카운티 경찰에 의뢰하는 업무분담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10만이 넘는 큰 도시는 경찰 관할구역(precinct)을 운영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은 경찰관할구역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지방경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 경찰에서부터 인구 수만의 소규모 도

시지역 경찰의 표본으로서 뉴욕시 경찰국, 로스엔젤레스시 경찰국,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시 경찰국, 뉴저지주의 저지시 경찰국과 버겐 카운티 경찰국의 지역적 성격과 경찰조직의 구조를 비교하면 <표 26>과 같다(김웅기, 2001; 이윤근, 2002; 경찰혁신기획단, 2003: 203-207).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지방경찰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이나 경찰의 규모와 상관없이 순찰활동을 통한 범죄의 발생억제, 즉 방범기능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한 경찰의 기능도 경찰의 주요 기능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3) 지역보조경찰제도의 특색 및 시사점

미국의 경찰제도는 고도로 분권화·단편화되어 주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치경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경찰기능이 지방 정치에 예속되고 경찰업무 처리의 중복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표준의 결여 및 상호간 조정과 협조의 결핍 등으로 인하여 비효율성을 노정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을 창설하거나 경찰기관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소규모 경찰조직 간의 통합이나 경찰업무를 인접한 대규모 자치경찰에 위탁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경찰혁신기획단, 2003: 235).

미국의 지방경찰제도와 관련하여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시 경찰국의 보조경찰관(Auxiliary Police Offices) 제도나 뉴저지주 저지시의 경우와 같이 정규경찰관의 교대 근무체제는 우리나라 의무경찰의 대체인력 확보방안의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26〉 미국의 지방경찰조직의 특징(II)

	시 개관	경찰국 주요 부서		
		제1부서	제2부서	제3부서
뉴욕시 경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800만</li> <li>•정규경찰 약 4만</li> <li>•5개 카운티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 순찰구역을 76개 경찰관할구역으로 나누어 운영</li> <li>- 교통통제과: 시민 안전 유지 및 교통 흐름 유지 도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범죄단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차량절도 등 조직범죄 수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개 경찰관할구역 근무 3,000여명 수사관을 직접 지휘·감독</li> </ul> </li> </ul>
로스앤젤레스 시 경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약 370만</li> <li>•정규경찰 약 9,300명</li> <li>•경찰위원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대와 순찰업무 중심 4개 지구대</li> <li>- 본대: 정복부서(특수운영국, 범죄기획과)와 수사과로 구성</li> </ul> </li> </ul>		
뉴욕주 화이트플레인 시 경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53,000여명</li> <li>•정규경찰 202명</li> <li>•경찰서는 소방서와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 경찰관(104), 보조경찰관(11)*</li> <li>- 24시간 지역순찰 및 범죄신고서 현장 출동업무 담당</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수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 포함 총 41명 경찰관으로 구성</li> <li>- 영장집행 및 범죄수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 경찰관(23), 보조경찰관(54)*</li> <li>- 교통안전, 주차공사 지원, 길거리 개관리 등</li> </ul> </li> </ul>
뉴저지주 저지시 경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24만명</li> <li>•정규경찰 875명</li> <li>•시장, 경찰국장 임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범죄계, 구역계, 특별순찰계</li> <li>- 구역계의 경우 4개 관할구역에 각 구역장 소속하에 총 140명 경찰관이 24시간 교대근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범죄계, 청소년계, 특수범죄계</li> <li>- 일반범죄계는 지역구수사반과 야간수사반으로 구성</li> </ul> </li> </ul>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경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약 88만명</li> <li>•공안국 경찰과 형태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찰계, 응급계, 교통계, 긴급출동대, 911시스템운영계로 구성</li> <li>- 순찰계: 54명 경찰관의 3교대 근무, 주정부 및 카운티 도로 순찰(교통법규 위반자나 음주운전자 적발)</li> <li>- 교통계: 6명의 경찰관이 과적차량 단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계: 7명의 직원. 지방정부에 수사지원 요청 또는 신원조회 업무 담당</li> <li>- 청소년계: 2명 직원이 카운티 장애자 특수학교 학생 안전관리</li> </ul> </li> </ul>

주 \*) 보조경찰관(Auxiliary Police Offices)은 영국의 특별경찰(Special Constabulary)이나 지역보조경찰(Community Support Officer; CSO)과 같이 지역 내에서의 치안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경찰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3. 의무경찰인력의 적정규모 산출을 위한 연구조사 설계

#### 1) 적정 인력의 산출에 대한 개요

최적의 조직을<sup>21)</sup> 설계하기 위하여 적정 소요인력<sup>22)</sup>을 산출하는 절차는 부여된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고, 이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산출하는 과정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순서로 정리한 행동절차이다(하태환, 1998).

인력소요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업무량에 근거하여 산정되며, 업무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업무를 유발시키는 요소(장비 수 등)를 독립변수로 한 인력산정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최적조직 설계 및 소요인력을 산정하는 활동은 새로운 기술이나 관리 기법이 조직에 도입되어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리개선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개념적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직구조 및 소요인력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시작된다.

#### 2) 적정 인력의 산출방법

어떤 조직의 적정인력을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계량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계량적 방법은 다시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과 회귀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3)</sup>

이하에서는 조직의 적정인력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 연구결과를 도출한 기존 문헌의 사례 등을 중

21) 최적조직은 임무수행에 가장 적합하면서 소요자원 및 작업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최적조직은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과업을 식별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업을 제거하고, 조직구조, 작업수행 방법 및 절차, 장비, 시설, 작업조건, 작업환경 등 인력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검토하여 이들을 개선함으로써 설계된다(하태환, 1998).

22) 소요인력은 최적조직 하에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인원이다.

23) 이상원·송건섭(2001)은 이러한 구분은 공공조직의 인력산출에도 예외가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계량적 방법을 통한 적정인력 산출모형을 분류함에 있어 회귀분석에 의한 방법을 거시적 방법으로, 그리고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을 미시적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직무분석에 따른 예측방법

#### ① 개념

먼저 조직의 적정인력을 산출하는 계량적 방법 중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은 조직원 개 개인의 업무량 측정에 의거하여 “있어야만 할 직원 수”를 산정하는 것이며, 개인의 작업량을 시간단위로 측정하거나, 시간/동작분석(Motion and Time Analysis) 등을 통해 작업량을 측정한 뒤, 그에 따라 소요인력을 산정하는 기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 ② 장·단점

일반적으로 각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조직 내 분야별, 계층별 인력 재배분을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 미시적인 방법으로 인력을 산정하게 되면 조직 내부의 업무분야별 인력규모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정된 소요인력에 관한 분석 및 예측은 적정성이 높은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확한 직무분석이 가능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직 내 소요인력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인력 예측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분석에 의한 인력예측 방법은 업무량 측정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b),<sup>24)</sup> 업무량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경제성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직무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야별,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을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진

24) 업무량 측정에 따른 기술적 문제란 관찰이 용이한 부품조립공장의 노동이나 청소 등의 단순기능 업무가 아닌 기획, 입안 등의 부정형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작업량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재구, 2002),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관련법령상 경찰의 기능은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경찰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sup>25)</sup>

둘째, 직무분석의 방법은 각 직위의 점직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추상적인 용어가 아닌 구체적인 활동별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직무조사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경찰조직의 경우 이 방법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즉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개인별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분야별 업무의 중요도 판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직무기술서 작성을 통한 업무량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 ③ 기존문헌 사례 분석

미시적 수준에서 조직구성원의 업무량 측정에 따른 직무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적정소요인력을 분석하거나 예측한 기존 연구로는 병원의 원무부서를 중심으로 적정인력 산출 모델의 개발을 시도한 정병한(199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이러한 직무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적정인력산정을 다룬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또한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더욱 없는 실정이다.

## (2) 회귀분석에 의한 예측방법

### ① 개념

회귀모형에 의한 방법은 조직의 관리인원을 통계적 방법에 의해 설명할 수 있도록 모형

25) 이와 관련하여 이상원·송건섭(2001)도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매우 포괄적으로 방대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기능에 관한 정확한 업무량 분석이 사실상 어려워 직무분석에 의한 인력예측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을 작성한 뒤, 그 모형에 의거해서 적정관리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b).<sup>26)</sup> 우리나라에서 조직의 소요인력을 산정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해 볼 때, 회귀모형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a; 정창무·이상경, 1993).<sup>27)</sup>

## ② 장·단점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의 이유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분석에 있다. 즉,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소득은 경찰인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경찰의 소요인력을 예측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진재구, 2002).

첫째, 선정된 독립변수(혹은 지표) 중에서 인구지표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경찰서별, 분야별 경찰인력의 배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sup>28)</sup>

26) 일본의 경우 이러한 거시적 방법으로서의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적정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유사단체별 지도비교방식, 쿠프만 방식, 투입/산출방식, 회귀모형방식 등 네 가지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a).

27) 경찰공무원의 적정인력규모 예측을 위한 기존연구는 거의 대부분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상원·송건섭(2001)은 이를 다시 자료의 종류에 따라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를 사용한 연구와 횡단적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사용한 연구로 나누고 있다. 그는 전자의 대표적 자료로 경찰내부 연구로 과거 20년간(1970-1989)의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경찰인력규모를 추정할 것을, 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1992)의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시계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정규경찰관 수를 사용하고, 독립변수로는 경찰인력의 규모비교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인구, GNP, 범죄건수를 사용한 결과, 최적 인력모형을 범죄 건수만 포함한 경우임을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1992)의 보고서는 관할인구, 인구밀도, 관할면적, 경비동원, 교통사고, 즉결심판, 범죄발생, 범죄발생률 등 8개 계량화된 지표를 사용하여 경찰 적정인력 모형을 도출하였다. 한편 김신복(1995)은 기능별로 경무, 방범, 형사, 교통 등 네 가지 기능에서 문서발송, 풍속영업소 수, 비행청소년 수, 112신고 건수, 강력범 발생 건수, 고소고발 건수, 교통사고 건수, 자동차단속건수 등의 지표를 구분하여 경찰청 인력산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8) 이와 관련하여 이상원·송건섭(2001)도 회귀분석에 의한 소요인력 예측방법은 총괄적인 정원규모를 설명할 뿐이지, 조직 내부의 업무분야별 인력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2)의 연구도 현재 대체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회귀모형에 의한 인력산정모형은 조직원 개개인의 작업량 측정에 의한 미시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서 경찰인력의 규모(총규모 혹은 분야별)를 결정하는 변수 혹은 지표를 추출하는 것은 나타난 현상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앞으로 어떤 분야의 인력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고 어떤 분야 인력이 얼마나 줄어들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검토가 없다가, 경찰행정업무 각 분야의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요지표를 개발하여 그것과 분야별 인력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인구와 교통사고건수가 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어느 변수도 분야별 인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 ③ 기존 문헌 사례 분석

경찰의 조직계층별, 분야별 적정인력의 산정을 위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직무분석의 방법보다는 분야별로 업무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요지표를 개발하여 이 지표에 따라 기관별, 분야별 경찰인력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하태권 외, 1996)라든지 경찰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인구, 범죄, 교통사고, 경찰허가, 유치인수 등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통해서 경찰서별 적정인력의 산정을 시도하는 연구(이은국, 1997)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29)</sup> 그러나 진재구(2002)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은국(1997)의 연구에서는 선정된 독립변수 중 유동인구, 총범죄 발생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 연유치인수가 경찰서 인력규모를 결정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지만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또한 하태권 외(1996)의 연구에서처럼 경찰행정업무 각 분야의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수요지표를 개발하여 그것과 분야별 인력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인구와 교통사고건수가 교통과의 인력과 밀접

29) 비록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아니지만,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조직 내 적정소요인력을 예측한 연구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인력계획을 다룬 장은주(1999)의 연구와 공군의 항공기 정비인력을 대상으로 최적소요인력을 산정한 송근우(2000)의 연구 등이 있다.

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이외에, 분야별 인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어떤 변수도 규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므로 이들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조직부문에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소요인력을 산출하려고 시도할 경우, 경찰조직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소요인력 산정에 관한 완벽한 설명을 이끌어내어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3) 질적 예측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 내 적정 소요인력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고 그동안 많이 사용해 온 두 가지 방법, 즉 내부조직의 공무원 개개인의 사무량 측정에 의한 미시적 방법이나 회귀분석 모형 구축에 의한 거시적 방법은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예측방법상의 어려움 등을 포함한 약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2)의 연구와 진재구(2002)의 연구 등은 이러한 계량적 방법 이외에 행정수요의 질적 측면들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sup>30)</sup>를 개발하여 소요인력을 분석 및 예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① 개념

수치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하는 계량적인 방법과 달리, 질적인 방법은 조직 내 적정소요인력을 예측함에 있어 수치와 같은 계량적인 수준에서 도출이 불가능한 비계량적 요소<sup>31)</sup>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30) 예를 들면, 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원사무와 적게 드는 민원사무의 구분 등을 말한다.

31) 배득중(2002)은 공공조직의 산출물에는 C-output과 D-output이 있으며, C-output이란 가시적으로 포착되는 산출물을 뜻하고, D-output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산출물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D-output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 시민들이 치안예산의 집행을 통해 '안전(security)'이라는 행정서비스가 산출되기를 기대하는 것 등이 바로 D-output이라는 것이다.

## ② 장·단점

현실적으로 공공조직의 행위에 대한 결과, 즉 행정성과는 그동안 계량적 요소에 의한 분석 및 평가가 많이 강조되어 온 반면, 비계량적 요소인 질적 요소에 의한 분석 및 평가는 등한시 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는 경찰조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치안유지능력의 향상과 같은 성과는 대개 순찰차 보유대수의 증가, 경찰정원의 증가, 순찰횟수 등으로 평가된다.

경찰예산의 집행실적은 안전한 시민생활이라는 비가시적이지만 궁극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위해 소요되는 중간재 성격의 서비스인 가시적 산출물들에 의해 평가되어 왔다. 이런 현상은 최근 결과중심적인 개혁방안들이 강조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주장의 내용에는 바람직하고 좋은 행정성과란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산출물(C-output)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궁극적 목표와 관련된 비가시적이고 비계량적인 질적인 산출물(D-output)을 많이 생산하도록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C-output중심적인 제도를 개혁하여 D-output중심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성과를 비롯하여 공공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을 계량적인 방법에만 의존하여 측정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측정공식을 만들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정책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주관이라는 요소도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비계량적 방법에 의한 측정이 계량적 방법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③ 기존 문헌 사례 분석

기존 연구 중 진재구(2002)의 연구는 분야별·계층별 경찰인력의 조정을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숙지하고 실무적으로 사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량적 방법보다는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첫째, 향후 경찰이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경찰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할 필요가 없는 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찰의 기능을 재설계하고 그 틀 속에서 분야별, 계층별 인력의 적정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sup>32)</sup>

둘째, 경찰조직내 분야간(부서간), 계층간 역할중복은 없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현재의 인력운용체계는 적절한가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찰서 설치를 위한 기준이 적정한가, 일선경찰서에서 과-계-직원으로 연결되는 소과 소계(小課小係)체제가 적절한 업무처리방식인가, 현재와 같이 경찰서에 방법과 인력을 두는 동시에 대규모 파출소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인력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는 없는 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제로 질적인 요소와 관련된 변수의 개발을 통한 적정 소요인원을 산정하는 모형의 개발은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역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력 산정이나 적정 교통경찰인력 산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질적인 방법을 사용한 인력산정이 그동안의 계량적 방법이 안고 있는 약점들과 계량적 방법의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찰조직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경찰조직에 있어서 의무경찰제도의 변화에 따른 적정소요인력을 분석 및 예측하고자 하였다.

32) 예를 들어 현행법상 법무부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처리하고 있는 대용감방운영, 수형자 등의 호송업무,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업무 등과 국방부의 업무인 예비군 무기 관리, 해안경계근무에 대한 경찰의 역할 분담, 기타 치안유지라는 명분으로 경찰에게 협조·의뢰되고 있는 수많은 경비수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전 정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인력조정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표 27> 적정 소요인력 산출방법의 개념 및 장·단점

연구방법	계량적 방법		질적 방법
	직무분석	회귀분석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의 작업량을 시간단위로 측정하거나, 시간/동작분석(Motion Time Analysis) 등을 통해 작업량을 측정 한 뒤, 그에 따라 소요인력을 산정하는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의 관리인원을 통계적 방법에 의해 설명할 수 있도록 모형을 작성한 뒤, 그 모형에 의거해서 적정관리인원을 산정하는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내 적정소요인력을 예측함에 있어 수치와 같은 계량적인 수준에서 도출이 불가능한 비계량적 요소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는 방법</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내부의 업무분야별 인력규모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됨.</li> <li>•산정된 소요인력에 관한 분석 및 예측은 적정성이 높은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인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성과는 공공정책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주관이라는 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비계량적 방법에 의한 측정방법이 계량적 방법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량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경제성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음.</li> <li>•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직무분석은 측정하기 불가능에 가까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조직 수행업무 한계 불분명.</li> <li>- 대외적으로 보안 유지 업무, 집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분야별 업무 등의 중요도 판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무기술서의 작성을 통한 업무량 측정이 어려울 수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된 독립변수(혹은 지표) 중에서 인구지표 외에는 지금까지 경찰서별, 분야별 경찰인력의 배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별로 고려되지 않았음.</li> <li>•경찰인력 규모(총규모 혹은 분야별)를 결정하는 변수 혹은 지표를 추출하는 것은 나타난 현상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앞으로의 인력소요 현황을 판단하는데는 미지수.</li> <li>•인구와 교통사고건수가 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어느 변수도 분야별 인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궁극적 목표와 관련된 비가시적이고 비계량적인 질적인 산출물(D-output)을 생산하기 위한 객관적인 측정공식을 만들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li> </ul>

### III. 대체인력확보에 대한 인식조사

#### 1. 연구조사의 개요

본 연구는 경험적 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장 실태분석 및 면접조사를 통한 질적 분석방법과 설문지를 이용한 분석방법의 2가지 접근법을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의무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분석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현 의무경찰인력에 관한 실태분석 및 업무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무경찰인력의 적정화 논의를 통해 향후 의무경찰제도에 관한 효율적인 대체를 위한 적정소요인력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사이에 1차적으로 현재 의무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와 천안경찰서를 방문하여 두 경찰서 내에 근무하는 경찰들(일반경찰 및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차 면접조사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사이에 경찰 및 전문가들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설문조사의 대상과 시기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수집·분석을 통해 조사한 자료와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경찰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그 내용들을 분석·정리하여 설문지를 만든 후 조사를 실시하는 실증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찰집단(일반경찰 및 의무경찰)과 관련분야 전문가집단(교수 및 연구원)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인원은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중 일반경찰 210명과 의무경찰 65명을, 그리고 경찰관련 분야 전문가는 25명을 선정하여 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시기는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경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방법은 배포조사법과 필요한 경우, 우편조사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 2)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방법

문헌연구 결과에 따른 실증연구를 함에 있어 본 연구는 세 가지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실태 및 이의 대체방안에 관한 인식(동의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이외에도 분석방법으로서,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조사항목들과 설명변수들간의 내적 일관성을 통한 신뢰도(rel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alpha$ ) Test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조사분석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를 근거로 하여 분석방법의 단편성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추론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자료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WIN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3)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설계된 설문지는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sup>33)</sup> 먼저 의

무경찰인력의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에 관한 내용,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 및 평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의무경찰제도의 폐지 및 대체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이들 세 개의 카테고리 중 의무경찰인력의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에 관한 내용은 다시 의무경찰인력의 기본적인 소양, 의무경찰인력의 능력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의무경찰제도의 폐지 및 대체방안에 관한 내용은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도, 의무경찰제도의 폐지, 의무경찰제도의 대체방안 등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질문문항은 명목척도(nominal scale)와 서열척도(ordinal scale)로 이루어졌으며, 서열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전적으로 그렇다-5점). 그러나 의무경찰제도의 대체방안을 묻는 질문 중 <질문 21>부터 <질문 26>까지의 문항에서는 예외적인 척도(예: 비율척도 등)를 사용하였다.

## 2. 응답자의 특성

설문조사는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집단(일반경찰 및 의무경찰)과 관련 분야 전문가집단(교수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2005년 9월 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여 271부가 회수(회수율은 90.3%)되었으며, 이 중 활용 가능한 설문은 265부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8>과 같다.

33) 즉 설문대상자의 사회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6개 문항), 의무경찰인력의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묻는 질문(10개 문항),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를 묻는 질문(5개 문항),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2개 문항),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질문(3개 문항), 의무경찰제도의 대체방안을 묻는 질문(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8>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49	94.3	혼인상태	미혼	73	27.7
	여성	15	5.7		기혼	190	72.0
					기타	1	0.3
연령	20대	63	23.9	학력	고졸이하	58	22.1
	30대	67	25.4		전문대졸	45	17.1
	40대	97	36.7		대졸	129	49.0
	50대이상	37	14.0		대학원졸이상	31	11.8
계급	순경	11	5.4	현직업	일반경찰	201	76.1
	경장	37	18.3		전경/의경	52	19.7
	경사	32	15.8		연구원	10	3.8
	경위	33	16.3		기타	1	0.4
	경감	64	31.7				
	경정	7	3.5				
	총경이상	18	8.9				

주 : 성별/혼인상태/연령/현직업은 무응답 각 1명, 학력은 무응답 2명, 계급은 무응답 63명이 발생하였음.

### 3. 신뢰성 검증과 타당성 검증

#### 1) 신뢰도 분석에 의한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조사항목들과 설명변수들간의 내적 일관성을 통한 신뢰도(rel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alpha$ ) Test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

변 수 명	항목수	Cronbach's alpha 값
의무경찰인력의 소양과 능력	10	.9290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5	.8717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2	.3926
의무경찰제도의 폐지	2	.7675
의무경찰제도의 대체방안 I: 대체유형 및 대체인력의 역량개선 방안	2	.8372
의무경찰제도의 대체방안 II: 정규경찰로의 충원방안	4	.8789
의무경찰제도의 대체방안 III: 대체인력 확보관련 예로사항 및 우선 부서	3	.4469
의무경찰제도의 대체방안 IV: 각 경과별 정규경찰 충원비율	9	.9720
전 체	37	.8277

〈표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초 변수의 구성 설문항목들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alpha$ ) 계수가 변수 전체수준에서 .82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수준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변수(‘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의무경찰제도의 대체방안 III’)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에서 대체로 0.76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변수들이 강한 응집력을 갖기 때문에 집단화하더라도 신뢰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 2) 요인분석에 의한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들을 몇 개의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38개의 독립변수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아이겐 값이 1.0 이상인 요

34) 연구변수들의 측정도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뢰계수 값이 .5이상일 때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Nunnally, 1978; Van de Ven & Ferry, 1980; Andreassen, 1995; 박철민, 2001: 206에서 재인용).

인<sup>35)</sup>을 추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베리맥스(Varimax)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들은 <표 30>과 같이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8개의 동질적 요인으로 묶여졌다.<sup>36)</sup> 이 중 요인 1을 ‘의경인력의 소양과 능력’, 요인 2를 ‘의경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요인 3을 ‘의경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요인 4를 ‘의경제도의 폐지’, 요인5를 ‘의경제도의 대체방안Ⅲ’, 요인 6을 ‘의경제도의 대체방안Ⅳ’, 요인 7을 ‘의경제도의 대체방안 I’, 요인 8을 ‘의경제도의 대체방안Ⅱ’이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각 문항에 대한 요인 적재량은 .222~.966 사이에 분포하며, 이들 문항들은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졌다.<sup>37)</sup>

<표 30> 요인분석 결과(Varimax 회전후의 요인적재량과 아이겐 값)

요인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의경 인력의 소양과 능력	의경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의경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의경제도의 폐지	의경제도의 대체방안Ⅲ	의경제도의 대체방안Ⅳ	의경제도의 대체방안 I	의경제도의 대체방안Ⅱ
질문 2	.911	-.050	.069	.001	.067	-.271	-.031	.195
질문 9	.827	.232	-.172	.011	.216	-.049	-.042	-.015
질문 3	.810	.045	-.064	.170	-.051	-.415	-.020	.147
질문 4	.807	-.032	.128	.145	-.115	-.288	-.308	-.215
질문 1	.799	.119	-.015	.119	.009	-.446	-.197	.228

35) 요인추출의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아이겐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아이겐값은 요인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겐값이 1이라는 것은 변수 하나 정도의 분산을 축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서일, 1999: 561).

36)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으로 묶여지지 않은 <질문 18> 항목은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37)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은 .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5 이상이 넘으면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김은정·박양규, 2000: 33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문항들 중 <질문 13>, <질문 19>, <질문 20> 항목의 경우 요인적재량이 .4이하로 나타났지만,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요인들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밀접하진 않지만 일정한 관계를 갖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요인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의경 인력의 소양과 능력	의경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의경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의경제도 의 폐지	의경제도의 대체방안Ⅲ	의경제도의 대체방안Ⅳ	의경제도의 대체방안Ⅰ	의경제도의 대체방안Ⅱ
질문 10	.762	.484	-.030	.300	-.156	-.053	.090	-.032
질문 6	.638	.315	.160	-.071	.011	-.057	-.253	-.500
질문 5	.612	.116	.010	.212	.005	-.339	-.582	.012
질문 7	.492	.494	-.010	.623	.251	-.113	.065	-.001
질문 8	.472	.288	.290	.473	.216	.046	.293	-.321
질문 12	.185	.900	-.053	.065	.148	.125	-.107	-.070
질문 11	.211	.837	.088	.386	.005	-.088	.055	.095
질문 15	.161	.641	.592	-.112	.037	.206	.115	.111
질문 14	.451	.431	.283	.463	-.162	.123	.236	-.359
질문 13	.472	.333	.045	.726	-.195	-.024	.050	.078
질문 16	.315	.133	.763	-.171	-.012	-.065	-.152	-.187
질문 17	-.094	.214	.481	.426	.372	.117	.305	-.237
질문 20	-.072	-.013	.823	.381	-.106	.025	.081	.183
질문 19	-.235	-.086	.794	.222	.129	-.007	.200	.035
질문 23	-.066	.080	.060	-.133	.918	.198	.032	.068
질문 22	-.101	.127	-.004	-.075	.906	.130	.134	-.180
질문 21	.207	-.128	-.010	.051	.510	.400	-.293	.225
질문 24.4	-.110	-.063	.031	-.109	.043	.971	.058	-.055
질문 24.1	-.189	.118	-.088	-.024	.020	.951	.150	-.073
질문 24.2	-.261	.051	-.017	-.083	-.016	.938	.025	-.027
질문 24.3	-.088	-.193	.128	-.049	.080	.938	-.079	-.127
질문 24.7	-.279	.141	.008	.011	.099	.928	.099	.019
질문 24.8	-.141	.169	-.037	.012	.154	.920	.253	.001
질문 24.9	-.058	.312	-.138	.082	.217	.801	.342	-.094
질문 24.6	-.090	-.234	.189	.230	.264	.734	-.222	-.309
질문 24.5	-.225	-.235	.197	.213	.089	.678	-.438	-.340
질문 25	-.177	.100	.128	.206	.159	.149	.738	-.222
질문 26	-.113	-.099	.148	-.100	-.042	.107	.733	-.379
질문 30	.023	.005	.000	.084	.119	-.077	-.007	.966
질문 29	.103	.012	.054	-.081	-.044	-.125	-.197	.933
질문 28	-.122	.113	-.020	.154	-.034	-.048	-.069	.922
질문 27	.108	-.101	.036	-.048	-.126	-.166	-.244	.871
아이젠값	6.422	3.433	2.962	3.009	2.612	8.019	2.740	4.775

#### 4.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을 변수 유형별로 종합하여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의무경찰인력의 소양과 능력’을 묻는 질문문항들의 전체 응답평균값이 2.9213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의무경찰제도의 폐지’를 묻는 질문문항들의 전체 응답평균값은 각각 3.3659, 3.6901, 4.3883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의무경찰제도의 폐지’를 묻는 질문문항들의 전체 응답평균값은 매우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은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동의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제반 조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종합)

변 수 명	평 균	표준편차
의무경찰인력의 소양과 능력	2.9213	.7006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3.3659	.6914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3.6901	.7003
의무경찰제도의 폐지	4.3883	.7110

##### 1) 의무경찰인력의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중 ‘의무경찰인력의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의무경찰인력의 소양’과 관련하여서는 이들의 청렴성 및 윤리성의 수준이 높다

는 것에 대한 응답평균값만이 3.1358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전체응답 중 긍정적인 응답은 30.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경찰인력의 사명감, 책임성·자발성·적극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정신 등을 묻는 나머지 3개의 질문문항들에서는 보통수준 이하의 응답평균값을 나타내어 이와 관련한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의무경찰인력의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이들의 문서작성 능력에 대한 응답평균값만이 3.1660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전체응답 중 긍정적인 응답은 3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질문문항들에서는 보통수준 이하의 응답평균값을 나타내어 이와 관련한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의무경찰인력의 기본적인 소양

설문문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 의무경찰인력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다.	16 (6.0)	61 (23.0)	130 (49.1)	47 (17.7)	11 (4.2)	2.9094	.9000
2) 의무경찰인력은 청렴성 및 윤리성의 수준이 높다.	7 (2.6)	47 (17.7)	125 (47.2)	75 (28.3)	11 (4.2)	3.1358	.8464
3) 의무경찰인력은 업무에 대한 책임성·자발성·적극성 등이 높다.	19 (7.2)	58 (21.9)	124 (46.8)	55 (20.8)	9 (3.4)	2.9132	.9191
4) 의무경찰인력은 수요자(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정신을 갖추고 있다.	13 (4.9)	64 (24.2)	127 (47.9)	50 (18.9)	11 (4.2)	2.9321	.8893
5) 의무경찰인력은 창의적·비판적 사고능력이 탁월하다.	11 (4.2)	78 (29.5)	123 (46.6)	37 (14.0)	15 (5.7)	2.8750	.9039
6) 의무경찰인력은 문제인식 및 해결능력이 탁월하다.	13 (4.9)	88 (33.2)	120 (45.3)	34 (12.8)	10 (3.8)	2.7736	.8713
7) 의무경찰인력은 행동의 자율규제 능력이 탁월하다.	14 (5.3)	69 (26.0)	126 (47.5)	44 (16.6)	12 (4.5)	2.8906	.9000
8) 의무경찰인력은 업무관련 문서작성 능력이 탁월하다.	7 (2.6)	58 (21.9)	105 (39.6)	74 (27.9)	21 (7.9)	3.1660	.9469
9) 의무경찰인력은 담당직무에 대한 전문지식(법률지식 포함)의 수준이 높다.	20 (7.5)	88 (33.2)	116 (43.8)	34 (12.8)	7 (2.6)	2.6981	.8830
10) 의무경찰인력은 업무목표에 대한 이해 및 목표달성 능력이 탁월하다.	12 (4.5)	71 (26.8)	121 (45.7)	51 (19.2)	10 (3.8)	2.9094	.8873

2)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중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속성(3.3358), 민원인에 대한 친절성(3.2755), 직무수행에 대한 높은 접근성(3.2151), 그리고 경찰업무수행에의 도움 제공(4.0566) 등과 관련하여서는 응답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전체응답 중 긍정적인 응답은 각각 42.2%, 36.6%, 33.9%, 7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들은 의무경찰인력이 정규경찰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응답자들은 의무경찰이 그들의 업무 이해도나 업무경험 등과 관련한 전문성 수준에 대해서만은 응답평균값이 2.9396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전체응답 중 긍정적인 응답은 22.8%, 부정적인 응답은 30.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3>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

설문문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1) 의무경찰인력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편이다.	7 (2.6)	29 (10.9)	117 (44.2)	92 (34.7)	20 (7.5)	3.3358	.8684
12) 의무경찰인력은 업무 이해도나 업무경험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12 (4.5)	68 (25.7)	122 (46.0)	50 (18.9)	13 (4.9)	2.9396	.9067
13) 의무경찰인력은 민원인의 문의, 응답, 안내, 태도 등과 관련하여 친절한 편이다.	5 (1.9)	29 (10.9)	134 (50.6)	82 (30.9)	15 (5.7)	3.2755	.8046
14) 의무경찰인력은 직무수행(대기, 문의, 자동 안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4 (1.5)	41 (15.5)	130 (49.1)	74 (27.9)	16 (6.0)	3.2151	.8320
15) 의무경찰인력은 경찰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	3 (1.1)	4 (1.5)	55 (20.8)	116 (43.8)	87 (32.8)	4.0566	.8352

### 3)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중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의무경찰의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3.8302), 의무경찰의 업무내용 및 특성에 있어서 지역성에 대한 이해(3.5379)와 관련하여서는 응답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전체응답 중 긍정적인 응답은 각각 66.0%, 6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설문문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6) 나는 의무경찰의 업무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0 (0.0)	11 (4.2)	79 (29.8)	119 (44.9)	56 (21.1)	3.8302	.8057
17) 의무경찰의 업무내용 및 특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2 (0.8)	50 (18.9)	51 (19.3)	126 (47.7)	35 (13.3)	3.5379	.9703

### 4) 의무경찰제도의 폐지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중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와 관련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의무경찰제도의 폐지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평균값이 2.7321로 나타나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전체응답 중 부정적인 응답은 53.26%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응답자들은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시 정규경찰의 업무량 변화 여부(4.3057), 의

무경찰제도의 폐지시 인력수급의 필요성 여부(4.4604)와 관련하여서는 응답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전체응답 중 긍정적인 응답은 각각 88.7%, 8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5> 의무경찰제도의 폐지

설문문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8) 저출산 등의 사회적 변화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의무경찰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36 (13.6)	105 (39.6)	42 (15.8)	58 (21.9)	24 (9.1)	2.7321	1.2060
19) 의무경찰제도의 폐지로 인해 정규경찰의 업무량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4 (1.5)	6 (2.3)	20 (7.5)	110 (41.5)	125 (47.2)	4.3057	.8263
20) 의무경찰제도의 폐지로 인한 인력수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0.8)	6 (2.3)	13 (4.9)	91 (34.3)	153 (57.7)	4.4604	.7584

## 5. 대체인력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 1) 대체유형 및 대체인력의 역량개선 방안(대체방안 I)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중 '의무경찰인력의 대체유형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 중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시 대체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하는 방안에 관한 응답이 절반을 넘는 5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이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의무경찰인력의 대체유형

빈 도(%)					
정규경찰로 충원	의무경찰 인력을 경찰인력으로 전환	경찰학과 출신 학생대상의 인턴십을 활용	청년실업자 구체 차원의 청년인력 흡수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민생치안 기능을 이양	기타
141 (53.2)	37 (14.0)	24 (9.1)	20 (7.5)	39 (14.7)	4 (1.5)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중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역량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 중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시 대체인력의 역량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찰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하는 방안에 관한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9.6%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이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은 현재의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되었을 경우, 경찰업무가 효과적으로 대체되어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무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를 정규경찰의 충원을 통해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현재 의무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대체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역량개선을 위한 방안

빈 도(%)					
정규경찰로 충원	의무경찰 인력을 경찰인력으로 전환	경찰학과 출신 학생대상의 인턴십 활용	청년실업인력을 충원하여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시행	자치경찰제로 민생치안기능 이양	기타
131 (49.6)	50 (18.9)	18 (6.8)	26 (9.8)	36 (13.6)	3 (1.1)

주: 무응답 1개 있음.

2) 정규경찰로의 충원방안(대체방안Ⅱ)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관련 문항들을 종합하여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의무경찰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하여 대체하는 방안(대체인력 방안 Ⅱ)’을 묻는 질문 문항들의 전체 응답평균값이 3.8663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정규경찰로 충원하여 대체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종합)

변 수 명	평 균	표준편차
의무경찰인력의 대체방안Ⅱ	3.8663	.8000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하는 방안에 관한 인식’을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의무경찰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함으로써 법집행상의 신뢰성 제고(3.9280), 치안역량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3.9167), 경찰직무집행의 전문성 제고(3.9470), 그리고 소요인력 확보와 관련한 애로사항의 해소(3.6731) 등과 관련하여 응답평균값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전체응답 중 긍정적인 응답은 각각 75.7%, 72.4%, 76.9%, 6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 정규경찰로 충원하여 대체시 기대되는 효과

설문문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전적 으로 그렇다		
27) 의무경찰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 최일선의 법집행 과정에서의 신 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6 (2.3)	18 (6.8)	40 (15.2)	125 (47.3)	75 (28.4)	3.9280	.9545
28) 의무경찰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 함으로써 대국민 기본 치안역량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1.5)	14 (5.3)	55 (20.8)	118 (44.7)	73 (27.7)	3.9167	.9108
29) 의무경찰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 함으로써 경찰직무집행의 전문성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1.5)	17 (6.4)	40 (15.2)	131 (49.6)	72 (27.3)	3.9470	.9047
30) 의무경찰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 함으로써 의무경찰 충원 및 소요 인력 확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9 (3.5)	20 (7.7)	66 (25.4)	117 (45.0)	48 (18.5)	3.6731	.9770

### 3) 대체인력 확보관련 애로사항 및 우선 부서(대체방안Ⅲ)

<표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중 '대체인력 확보관련 애로사항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시 대체인력 확보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문제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전체 응답의 절반이 넘는 58.7%로 나타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총정원제가 25.8%의 응답을 보였다.

<표 40>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확보시 애로사항

빈 도(%)				
공무원총정원제	예산확보	대체인력의 능력	대체인력에 대한 통제·관리의 어려움	기 타
68 (25.8)	155 (58.7)	21 (8.0)	17 (6.4)	3 (1.1)

주: 무응답 1개 있음.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중 ‘대체인력 확보관련 우선 고려 부서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 중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시 대체인력 확보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로는 경비과(39.2%), 교통과Ⅱ(26.0%), 생활안전과(12.5%), 교통과Ⅰ(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현재의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될 경우 경비업무와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대체인력의 충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확보시 우선 고려 부서

빈 도(%)							
경무(경리)과	생활안전과	교통과Ⅰ(교통사고조사)	교통과Ⅱ(교통지도)	수사(형사)과	경비과	지하철수사대	기타
4 (1.5)	33 (12.5)	19 (7.2)	69 (26.0)	12 (4.5)	104 (39.2)	15 (5.7)	9 (3.4)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중 ‘대체인력 확보관련 가장 많은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 중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시 대체인력 확보에 있어 가장 많은 대체인력의 충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서로는 경비과(37.5%), 교통과Ⅱ(25.8%), 생활안전과(13.3%), 지하철 수사대(6.8%), 교통과Ⅰ(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현재의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될 경우 경비업무와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대체인력의 충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확보시 가장 많은 충원이 필요한 부서

빈 도(%)							
경무 (경리)과	생활 안전과	교통과Ⅰ (교통사고조사)	교통과Ⅱ (교통지도)	수사 (형사)과	경비과	지하철 수사대	기타
3 (1.1)	35 (13.3)	16 (6.1)	68 (25.8)	11 (4.2)	99 (37.5)	18 (6.8)	14 (5.3)

주: 무응답 1개 있음.

그러므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은 현재의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되었을 경우, 충분한 대체인력의 확보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적정 대체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의 확보문제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여부가 향후 경찰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응답자들은 대체로 경비업무와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충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아마도 이들 업무가 대국민 관련 경찰업무 중 가장 기본적인 중요 업무이며, 이들 업무에 현재 의무경찰인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시 이 분야의 업무집행에 있어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IV. 분석 결과 및 대체인력 확보방안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은 두 가지 조사결과, 즉 실태 및 면접조사를 통한 인력추정 결과와 설문조사를 통한 인력추정 결과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 1.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의 분석을 통한 소요인력 추정 결과

남대문경찰서, 천안경찰서, 아산경찰서, 지하철수사대, 상설부대(기동단본부, 기동대본부, 기동중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를 통해 각 직무별 필요인력을 추정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1) 경무과의 소요인력 추정

경무과의 주요업무는 지휘차량(서장) 및 작전차량(경비과장)의 운전업무와 본서 소속 차량에 대한 경상정비 및 관리업무이다. 남대문 경찰서의 경우, 현재 직원 1명과 의경 2명이 관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일지 작성, 20여대의 경찰서 차량 점검 및 수리, 차량부품 및 경리과 소모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의 경우 전체적인 차량의 경상정비 및 관리상태를 점검·감독하며, 실제 경상정비 및 차량의 운행은 의경이 담당한다. 의경의 경우, 당초 T/O가 5명이었으나 전역 등의 이유로 자연 감소하여 현재는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남대문 경찰서 경무과의 경우 현실적으로 차량의 경정비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차량운행의 경우 현재 의경들이 군복무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상황발생시 수시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을 별다른 문제

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의경이 아닌 대체인력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심야근무 등에 있어서 근무조건(근무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일선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들(경찰관 및 의무경찰)은 향후 이러한 경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과 보조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 4명이상(2인 1조 편성)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면접조사를 통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 추론해 볼 때, 향후 경무과의 의무경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의무경찰인력 1인당 최소 1-2명(평균 1.5명) 정도의 대체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 2) 교통과(내근)의 소요인력 추정

교통과(내근)의 주요업무는 교통사고조사 보조업무, 음주사고시 스티커 발부실적 입력, OMR 입력, 일반지도계의 단속실적 입력, 민원인의 이의신청 접수 및 관련자료 작성, 면허증 발급 등 관련 업무 등이다. 또한 사건관련 서류 및 피의자를 검찰청에 송치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남대문경찰서의 경우에는 직원 2명과 의경 2명이, 그리고 천안경찰서의 경우에는 직원 3명과 의경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경찰서의 경우 사고조사 및 피의자 송치업무와 같은 대(對)검찰청 업무수행의 경우, 현재까지도 T/O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고정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최소 피의자 1명당 직원 1명과 의경 1명으로 구성된 호송조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의경요원의 숙달된 기량으로 인해 각종 자료의 입력 및 조회업무 등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수행이 가능하여 부서의 역할 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확대 증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건 및 피의자 송치업무로 의경인력이 빠져나가면 실제로 사무실 내에서의 다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검찰청에 점심이후 출발해서 교도소 송치 업무가 끝나고 귀대할 경우 심야시간대(20시-22시경)에 귀대하는 업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력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일선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들(경찰관 및 의무경찰)은 향후 이러한 교통

관련 내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과 보조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 2명이상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안수요의 급증에 따라 민원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이를 전담할 인력의 추가 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최소 1명 정도의 소요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천안경찰서의 경우 인구가 약 51만 명으로 증가하여 현재 1일 전화민원이 약 300-500통 정도를 소화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재 천안시의 인구가 50만을 넘어서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향후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면 증대되고 있는 치안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면접조사를 토대로 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 추론해 볼 때, 향후 교통과(내근) 분야에 있어서 1인의 의무경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명(평균 1.5명) 정도의 소요인력이 확보되어 할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 3) 교통과(외근)의 소요인력 추정

교통과(외근)의 주요업무는 퇴근시간대 및 혼잡교차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기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 단속업무(스티커 발급), 야간의 음주단속업무, 그리고 요인경호 등이다.

현재 남대문경찰서의 경우에는 의경 12명이, 그리고 천안경찰서의 경우에는 의경 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천안경찰서의 경우, 여기에 직원 7명과 혼잡시간대에는 방범순찰대의 교통관리원 12명을 지원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의 경우 현재까지도 T/O가 없는 실정이며, 천안경찰서의 경우에는 T/O가 5명에서 자연소멸로 인해 4명의 의경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도시 내 교통수요의 증가(예: 등록차량대수의 증가)에 따라 교통지도 및 관리업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천안경찰서의 경우에도 현재 천안시의 인구가 약 51만 명에 등록차량이 17만대에 육

박하고 있어 교통지도 및 관리업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선경찰서의 근무하는 담당자들(경찰관 및 의무경찰)은 향후 이러한 교통관련 외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혼잡에 대비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12명이상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통관련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현실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기존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현 수준보다 확대하는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천안시의 경우 면접조사를 통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 추론해 볼 때, 향후 의무경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정도(직원으로 대체시 최소 4-5명 정도)의 소요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인원차출을 해주고 있는 방법대가 향후에 없어질 예정임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순찰차 2대, 사이카 4대 등의 기존 장비도 더 보강되어야 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PDA 보급 및 전산화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적으로 교통과(외근)의 경우 1인의 의무경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명(평균 1.5명) 정도의 소요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형사 및 수사과(전산)의 소요인력 추정

형사 및 수사과의 주요업무는 각종자료의 입력 및 조회업무이다. 이들 업무분야는 의경인력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으로 수사의 기록에서부터 종결시까지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입력하는 것이다. 즉 수배 및 수사관련 자료입력이 주요 업무이다(이 업무가 잘 되어야 기본적인 경찰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천안경찰서의 경우 현재 의경 4명이 24시간 2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현재까지는 4명의 T/O를 유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는 의경들이 군복무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2인 1개조로 12시간이상씩 근무를 소화해내고 있으나,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사정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대처가 없이는 형사 및 수사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들(경찰관 및 의무경찰)은 향후 이러한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포함한 업무의 중요도와 24시간 근무가 필요하다는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체인력을 정규직원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직원으로 대체인력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8명이상(예: 2인 1조 편성, 4교대)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천안경찰서의 경우 현재 일반 업무와 비교하여 전산 관련 각종 조회업무만 보더라도 3:7의 비중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전산관련 각종 조회업무의 월 평균 자료조회건수는 1,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접조사를 통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 추론해 볼 때, 향후 형사 및 수사과(전산) 분야의 1인의 의무경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1.5-2명(평균 1.75명) 정도의 소요인력이 확보되어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상설부대(기동단본부, 기동대본부, 기동중대)의 소요인력 추정

상설부대는 기동단본부(1개), 기동대본부(7개), 기동중대(190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상황대비, 시설경비, 거점근무, 방법근무, 교통근무 등 다섯 가지의 근무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장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투입되기 위한 출동대기 중대가 있으며, 전혀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중대로 위로특박 및 휴무인 중대가 있다.

2005년 ○○월 ○○일부터 3일간 기동중대의 근무현황을 분석하면 1일차 근무상황은 위로특박 13개 중대, 전·의경 휴무 9개 중대, 경찰관(직원중대) 휴무 2개 중대 등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24개 중대 외에 70개 중대가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2일차 근무상황은 출동대기(4개 중대) 및 위로특박 중인 일부병력(4개 중대)까지 상황대비 근무에 투입되었다. 3일차에는 상황대비 근무에 추가로 2개 중대가 배치되었다.

기동중대의 경우 근무에 투입되는 경찰병력은 사실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고수해야 하는 만큼 근무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전일제 근무형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기동중대에 배속되어 근무중인 의경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상설부대 직원중대의 근무시간은 주당 약 56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기동중대의 일선소대에 근무하는 의무경찰의 근무시간은 주당 약 9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설부대 중 기동중대의 일선소대에 근무하는 의무경찰 1명당 충원비율은 단순논리로 1 대 3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근무대기시간(24시간 상시대기 및 휴식이나 취침시간 등)까지 엄격히 적용할 경우 1 대 4의 비율까지도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예산 및 인력수급요인 등을 고려한다면 의무경찰 1인당 정규경찰 2.5명 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상설부대 행정업무 및 장비업무분야의 의무경찰 1인당 대체인력은 1.5명 정도가 타당하며, 상황실 근무의 경우 약 1.75명, 운전업무, 자체경비업무 및 무전업무분야는 의무경찰 1인당 약 2.5명 정도의 대체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한 인력 추정 결과

### 1) 의무경찰 1명당 각 경과별 정규경찰 충원비율(대체방안Ⅳ)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한다고 했을 때를 전제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소요대체인력을 산정해 보았다. 설문 응답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의무경찰 1명당 경과별 정규경찰의 충원비율’을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경무과의 경우 전체 응답의 평균값을 산정해 본 결과 0.81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1명(32.4%)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안전과의 경우 전체 응답의 평균값을 산정해 본 결과 0.93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1명(35.5%)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통과 I(교통사고 조사)의 경우 전체 응답의 평균값을 산정해 본 결과 0.93명

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1명(35.7%)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통과II(교통지도)의 경우 전체 응답의 평균값을 산정해 본 결과 1.19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1명(44.6%)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사(형사)과의 경우 전체 응답의 평균값을 산정해 본 결과 0.90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1명(34.0%)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비과의 경우 전체 응답의 평균값을 산정해 본 결과 1.27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1명(43.0%)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지하철수사대의 경우 전체 응답의 평균값을 산정해 본 결과 1.10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1명(35.8%)으로 나타났다.

<표 43> 의무경찰 1명당 경과별 정규경찰 충원비율

척 도	빈 도(%)										평균(명)
	0.25명	0.5명	0.75명	1명	1.25명	1.5명	1.75명	2명	2.5명	3명	
① 경무과	53 (24.9)	52 (24.4)	7 (3.3)	69 (32.4)	2 (0.9)	5 (2.3)	1 (0.5)	15 (7.0)	1 (0.5)	5 (2.3)	0.81
② 생활안전과	24 (11.2)	59 (27.6)	14 (6.5)	76 (35.5)	4 (1.9)	11 (5.1)	1 (0.5)	15 (7.0)	0 (0.0)	8 (3.7)	0.93
③ 교통과 (교통사고조사)	31 (15.0)	47 (22.7)	12 (5.8)	74 (35.7)	4 (1.9)	9 (4.3)	3 (1.4)	16 (7.7)	4 (1.9)	4 (1.9)	0.93
④ 교통과II (교통지도)	9 (4.1)	30 (13.5)	13 (5.9)	99 (44.6)	4 (1.8)	14 (6.3)	6 (2.7)	18 (8.1)	1 (0.5)	21 (9.5)	1.19
⑤ 수사 (형사)과	35 (16.5)	49 (23.1)	12 (5.7)	72 (34.0)	0 (0.0)	12 (5.7)	3 (1.4)	13 (6.1)	4 (1.9)	6 (2.8)	0.90
⑥ 경비과	5 (2.2)	24 (10.8)	18 (8.1)	96 (43.0)	3 (1.3)	17 (7.6)	1 (0.4)	29 (13.0)	2 (0.9)	22 (9.9)	1.27
⑦ 지하철 수사대	21 (9.9)	41 (19.3)	16 (7.5)	76 (35.8)	3 (1.4)	14 (6.6)	1 (0.5)	20 (9.4)	1 (0.5)	14 (6.6)	1.10
⑧ 기타1 ( )	3 (7.1)	4 (9.5)	8 (19.0)	16 (38.1)	2 (4.8)	2 (4.8)	0 (0.0)	6 (14.3)	0 (0.0)	1 (2.4)	1.10
⑨ 기타2 ( )	3 (12.0)	4 (16.0)	3 (12.0)	10 (40.0)	0 (0.0)	0 (0.0)	1 (4.0)	3 (12.0)	0 (0.0)	1 (4.0)	1.03

주 : '⑧ 기타1' 과 관련하여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유치장 및 컴퓨터실 기동대, 진압부대, 지구대, 청문 및 감사, 방순대 등이 있었다. 그리고 '⑨ 기타2' 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기동대, 부도 등이 있었다.

### 3. 대체인력 확보방안

#### 1) 대체인력 확보의 유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시 이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자료와 면담자료를 통해 추출한 대안들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대체가능한 대안으로 정규경찰로 충원하는 방안, 의무경찰인력을 경찰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 경찰학과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활용하는 방안, 청년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청년인력을 흡수하는 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기능이양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0%의 응답자들이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체인력은 정규경찰로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다른 대안들에 대한 응답은 각각 15%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정규경찰의 형태로 충원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의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정규경찰의 형태로 충원하여 대체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의 응답평균값을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보았을 때도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이 정규경찰의 형태로 충원된다면 법집행상의 신뢰성 제고, 치안역량 및 서비스의 질 향상, 경찰직무집행의 전문성 제고, 소요인력 확보와 관련한 애로사항의 해소 등과 같은 효과들에 대해서 3.6731에서 3.9470까지의 응답평균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적정 대체인력의 확보 수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조사(질적 방법과 양적방법) 결과,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될 경우 현재의 경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과별 인력의 수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첫째, 경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인력 1명당 최소 1-2명(평균 1.5명) 정도의 정규경찰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며, 각 경찰서별로 평균적으로 최소 3명씩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재 교통사고조사 보조업무, 음주사고시 스티커 발부실적 입력, OMR 입력, 일반지도계의 단속실적 입력, 민원인의 이의신청 접수 및 관련자료 작성, 면허증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통과 I(내근)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인력 1명당 최소 1-2명(평균 1.5명) 정도의 정규경찰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며, 각 경찰서별로 최소 2명-3명씩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퇴근시간대 및 혼잡교차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기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 단속업무(스티커 발급), 야간의 음주단속업무, 그리고 요인경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통과 II(외근)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인력 1명당 약 1-2명(평균 1.5명) 정도의 정규경찰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며, 각 경찰서별로 최소 4명-5명씩의 인력(단순보조인력의 경우에는 12명씩)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수사의 기록에서부터 종결시까지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입력하는 것(수배 및 수사관련 자료입력)은 물론 조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사(형사)과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인력 1명당 최소 1.5-2명(평균 1.75명) 정도의 정규경찰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며, 각 경찰서별로 최소 8씩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각종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과(생활안전과 포함)<sup>38)</sup>와 지하철역 구내와 전동차 내에서의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및 질서유지를 위해 순찰과 검문검색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수사대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인력 1명당 약 2-3명(평균 2.5명) 정도의 정규경찰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8) 현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 경찰서의 조직의 구성방식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경비과와 생활안전과의 소속 업무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상설부대(기동단본부, 기동대본부, 기동중대)의 경우 행정, 장비 및 취사의 경우 의무경찰인력 1인당 약 1.5명 정도의 정규경찰 인력이 필요하며, 상황실의 경우 1.75명, 운전, 자체경비, 무전 및 소대원은 의무경찰인력 1인당 약 2.5명 정도의 정규경찰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무경찰인력의 분야별 현황과 대비하여 향후 이들을 대체할 예상인력의 수를 추정하면 <표 44>와 같다.<sup>39)</sup> 첫째, 기동단 본부는 의무경찰을 정규경찰로 충원하여 대체할 경우 현재까지 의무경찰이 수행해오고 있는 행정, 장비, 운전, 자체경비, 상황실, 무전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으로 60명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의무경찰인력과 대비하여 볼 때 31명이 증가한 수치이다(설문조사를 토대로 할 경우에는 37명 확보 필요, 현재보다 8명이 증가함).

둘째, 7개 기동대본부의 경우 의무경찰을 정규경찰로 충원하여 대체할 경우 기존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 인력으로 599명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의무경찰인력과 대비하여 볼 때 31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설문조사를 토대로 할 경우는 329명이 확보되어야 함, 현재보다 46명이 증가한 수치임).

셋째, 기동중대(190개)는 의무경찰을 정규경찰로 충원하여 대체할 경우 적정 인력으로 65,650명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의무경찰인력과 대비하여 볼 때 38,709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소대에서의 의무경찰인력 중 사고인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인원을 근거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소대들과 중대들의 인원을 합산한 결과 다소 많은 인원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설문조사를 토대로 할 경우에는 30,307명이 확보되어야 함, 현재보다 3,366명이 증가한 수치임).

넷째, 행정부서의 경우 기존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 인력으로 최소 2,906명, 최대 4,038명의 인원이 정규경찰로 충원되어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의무경찰인력과 대비하여 볼 때 최소 43명에서 최대 1,175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기동대 중심의 상설부대의 추정치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9) 이들 대체인력의 추정치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한 충원비율의 평균값을 토대로 각각 추정하였다.

<표 44> 적정 대체인력의 수(추정치)

구 분	현재 의무경찰 인원 수	의무경찰 1명당 정규경찰 충원비율	적정 대체인력의 수 (추정치)	
<b>상설부대</b>	<b>27,253</b>	-	<b>30,673/66,309</b>	
기동단부	<b>소 계</b>	<b>29</b>	<b>37/60</b>	
	행 정	5	1.10*/1.5****	
	장 비	4	1.10*/1.5****	
	운 전	4	1.10*/2.5****	
	자 체 경 비	8	1.27*/2.5****	
	상 황 실	6	1.10*/1.75****	
	무 전	2	1.10*/2.5****	
기동대 본부 (서울5, 경기1, 전남1)	<b>소 계</b>	<b>283</b>	-	
	행 정	38	1.10*/1.5****	
	장 비	41	1.10*/1.5****	
	운 전	64	1.10*/2.5****	
	자 체 경 비	86	1.27*/2.5****	
	상 황 실	40	1.10*/1.75****	
	무 전	14	1.10*/2.5****	
기 동 대 (190)	<b>소 계</b>	<b>26,941</b>	-	
	중대 계	<b>143</b>	-	
	본부	계	<b>17</b>	-
		행정	4	1.10*/1.5****
		취사	5	1.10*/1.5****
		운전	7	1.10*/2.5****
		무전	1	1.10*/2.5****
	소대	42	1.10*/2.5****	
	<b>행정부서</b>	<b>2,863</b>	-	<b>2,906/4,038</b>
	행정부서	교 통	979	1.19*/1.5****
운 전		633	0.81*/1.5****	
전 산		294	0.90*/1.75****	
악 대		335	1.03*	
지하철출장소		102	1.10*/2.5****	
전경관리(기율)		73	1.03*	
교 육 조 교		33	1.03*	
무궁화체육단		114	1.03*	
교 육		270	1.03*	
<b>합 계</b>	<b>30,116</b>	-	<b>33,579/70,347</b>	

\*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분야의 평균값을 통해 추정하였음  
 \*\* 중대 인원×187개 중대, 100명×2개 중대, 원주 정원 無  
 \*\*\* 본부 인원+중대 인원(3개 소대 × 소대인원)  
 \*\*\*\* 면접조사에 기초한 평균 가중치

다섯째, 기동대 중심의 상설부대와 행정부서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났다. 기동대 본부중심의 상설부대의 경우에는 적정 대체인력의 추정결과 대체로 현재 의무경찰인력 대비 약 1.163-2.117배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운전, 자체경비 및 무전업무를 수행하는 기동단 본부 인력과 관련하여서는 약 2.5배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기동대 중심 상설부대의 적정 대체인력은 약 1.125-2.433배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행정부서의 경우에는 적정 대체인력의 추정결과 대체로 현재 의무경찰인력 대비 약 1.015-1.410배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하철수사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관련하여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약 2.5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현재 업무 수행중인 의무경찰 1명 대비 정규경찰 1.115-2.336명 정도의 비율로 대체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대체인력 확보시 우선 고려 부서(경과)

조사 결과, 대체인력을 확보·충원함에 있어 응답자들은 대체로 시위진압 및 치안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설부대(기동단본부, 기동대본부, 기동중대), 경비업무(경비과, 생활안전과)와 교통업무(교통과Ⅰ: 교통사고조사, 교통과Ⅱ: 교통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충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설부대(기동단본부, 기동대본부, 기동중대), 경비과, 교통과Ⅱ: 교통지도, 생활안전과, 교통과Ⅰ: 교통사고조사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현재 의무경찰인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대국민 관련 경찰업무 분야인 상설부대(기동단본부, 기동대본부, 기동중대), 경비업무(경비과, 생활안전과)와 교통업무(교통사고조사, 교통지도)분야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 론(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의무경찰제도의 전반적인 사항과 사회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았다. 의무경찰 인력의 대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 업무 영역의 상당 부분이 별도의 대안이 모색됨이 없이 담당부서의 직원들에게 맡겨짐으로써 기존 경찰인력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경찰의 대체인력 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의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은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함께 심각한 해결과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무경찰의 대체인력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의무경찰제도 및 경찰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방안 중 정규경찰로 충원하는 방안이 현재 경찰분야의 재직자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 방안이 다른 방안들보다 보다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이후에도 향후 경찰업무의 개선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를 보다 더 향상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관련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주는 등의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체인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시위진압 등 치안보조업무, 경비업무 및 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경과)에 대한 보다 우선적인 고려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국민 관련 경찰업무의 수행에 있어 의무경찰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이들 업무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인력대체가 향후 경찰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당 업무수행 부서(경과)별로 정규경찰을 충원하여 인력을 대체할 경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현재 업무수행 중인 의무경찰 1명 대비 정규경찰 약 1.115-2.336명

정도의 비율로 인력이 대체·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sup>40)</sup> 또한 변화하는 경찰행정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찰 및 치안수요에 부응하여 특정 업무분야(예: 기동중대, 교통지도 업무 등)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추정된 대체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추가 인원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이 경우 의무경찰 1인당 약 3.0명 정도의 정규경찰 대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러한 대체인력과 추가인원의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 문제가 선결 과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향후 의무경찰 인력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전개와 더불어 의무경찰제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무경찰의 대체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개선 및 예산확보방안 등과 연계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경찰 인력의 대체방안과 관련한 문제를 부족한 국방자원의 대체충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고객(시민)위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진일보한 비전과 목표 하에서 제반 개선방안을 도모해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2월 21일 「국정비전과 12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경찰청은 3월 24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활동을 연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추진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 온 시안을 토대로 쟁점사항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경찰혁신기획단에 「자치경찰추진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경찰청, 2004: 11).

정부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치경찰법의 입법을 예고(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3호)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의무경찰제도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방향은 자치경찰제의 실시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하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지

40) 앞의 <표 44>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동대 중심의 상설부대의 경우에는 적정 대체인력의 추정결과 대체로 현재 의무경찰인력 대비 약 1.125-2.433배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행정부서의 경우에도 적정 대체인력의 추정결과 대체로 현재 의무경찰인력 대비 약 1.015-1.410배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방자치단체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경찰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즉 영국의 특별경찰과 지역보조경찰제도, 독일의 기동경찰제도, 프랑스의 보조경찰과 차안보조원제도, 그리고 미국의 보조경찰제도 등은 치안서비스의 향상 및 강화의 목적으로 방법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실시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것은 민생치안의 확보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안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자치경찰과 더불어 현행 의무경찰의 효율적인 대체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고객(시민)지향적 관점에서의 문제접근은 경찰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보다 더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욕구표출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시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포함한 치안유지업무의 안정성과 더불어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 '휴(休) 테크'의 보편화에 따른 도로관리의 적시성 등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재 경찰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관계로 연구의 일반화 추론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연구의 방법상에 있어서도 현재의 상태 및 결과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들에게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인식을 중심으로 정태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동태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은 물론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배경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등)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과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이러한 한계점들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 참 고 문 헌

- 국방부(2005), 「2006년도 대체복무 지원계획(안)」.
- 경찰청(2001), 「21C 한국경찰의 비전」.
- \_\_\_\_\_ (2003), 「유럽 경찰제도 및 법령 소개」.
- \_\_\_\_\_ (2004), 「전산실 의무경찰 현황」.
- \_\_\_\_\_ (2004), 「교통업무 관련 의무경찰 현황」.
- \_\_\_\_\_ (2004), 「경찰백서」.
- \_\_\_\_\_ (2005), 「의무경찰인력 정원조정 내역」.
- 경찰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2003),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기획예산위원회.(1999),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일반행정분야」.
- 김신복(1995), “경찰공무원 임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11집.
- 김상호 외(2004), 「경찰학 개론」, 서울: 법문사.
- 김형만 외(2003).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 남대문경찰서(2005), 조직도.
- \_\_\_\_\_ (2005), 인력현황표.
- \_\_\_\_\_ (2005), 전·의경 인원현황.
- 박철민(2001), “장애인의 취업촉진 영향요인 분석: 부산광역시 동래구지역 지체장애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권 2호.
- 배득중(2002), 「21세기 신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서울지하철수사대(2005), 「지하철수사대 일반현황」.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200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 \_\_\_\_\_ (200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위임전결규칙」.
- 송근우(2000), 「항공기 정비인력 최적소요산정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병호(2005), 전·의경의 인권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정보사회와 행정문화」. 서울  
행정학회·한국조직학회·한국정책과학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  
189-241.
- 신현기·이영남(2003), 「경찰인사관리론」, 서울: 법문사.
- 아산경찰서(2005), 조직도.
- \_\_\_\_\_ (2005), 인력현황표.
- \_\_\_\_\_ (2005), 전·의경 인원현황.
- 이기현(2001), 「지하철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 강화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  
고서 2001-07.
- 이상원·송건섭(2001), 「교통경찰관 적정소요인력 진단 및 확보 방안 연구」, 치안연  
구소 연구보고서 2001-08.
- 이윤근(2002),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 이은국(1997),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인력규모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13집.
- 장은주(1999), 「지방자치단체 인력계획에 관한 연구: 기능별 공무원 정원관리모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병환(1999),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산출 모델 개발: W병원 원무부서를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창무·이상경(1993), “공공조직 정원산정을 위한 지표방식에 관한 소고”, 「서울시

정연구」 1권 1호.

진재구(2002), “경찰조직계층별 적정인력규모의 산정과 배분을 위한 기준의 설계”, 「국제문화연구」 20집, 청주대학교 국제협력연구원.

채서일(1999),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천안경찰서(2005), 조직도.

\_\_\_\_\_ (2005), 인력현황표.

\_\_\_\_\_ (2005), 전·의경 인원현황.

하태권·김병섭·김영민(1996), “경찰행정업무의 계량적 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12집.

하태환(1998), “최적조직 설계 및 인력소요 산정”, 「주간국방논단」 705호,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1992),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12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8),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모형 개발」,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_\_\_\_ (1990a),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모형 개발(II)」,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_\_\_\_ (1990b), 「부산직할시 공무원정원모형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_\_\_\_ (1991a), 「일본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제도」,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_\_\_\_ (1991b),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 모형개발」,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_\_\_\_ (199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관리 적정화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겨레신문, 2003. 8. 22.

Andreassen, T. W. (1995). (Dis)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The Case of Public Transport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4.

Chaponneaux, François, Cirault, Pascal and Richard, Evence. (2003). *La Police Municipale—Missions, Moyens et Contrôles*, Dexia: Imprimerie Nationale.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ition, McGraw-Hill, pp. 225-255.

Van De Ven, A. H. & D. L. Ferry. (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 New York, pp. 76-87.

## 부록 1) 설문조사지

##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적정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진은 치안연구소의 지원으로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적정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등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방부의 전환복무제도로 운영되어온 의무경찰제도가 국방인력의 감소 등의 추세에 따라 정원의 축소 내지 폐지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경찰인력의 대체방안과 대체인력의 적정규모, 그리고 기타 관련사항 등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설문문의 내용은 연구조사라는 학술적·정책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선생님의 응답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므로 설문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9. 30.

권경득 교수(선문대학교 행정학부, kdkwon@sunmoon.ac.kr)

※ 다음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무경찰인력의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견해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응답 범주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의무경찰인력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의무경찰인력은 청렴성 및 윤리성의 수준이 높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의무경찰인력은 업무에 대한 책임성·자발성·적극성 등이 높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의무경찰인력은 수요자(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정신을 갖추고 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의무경찰인력은 창의적·비판적 사고능력이 탁월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의무경찰인력은 문제인식 및 해결능력이 탁월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의무경찰인력은 행동의 자율규제 능력이 탁월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의무경찰인력은 업무관련 문서작성 능력이 탁월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의무경찰인력은 담당직무에 대한 전문지식(법률지식 포함)의 수준이 높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의무경찰인력은 업무목표에 대한 이해 및 목표달성능력이 탁월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의무경찰인력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견해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응답 범주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1. 의무경찰인력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편이다(절차, 시간 등).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의무경찰인력은 업무 이해도나 업무경험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의무경찰인력은 민원인의 문의, 응답, 안내, 태도 등과 관련하여 친절한 편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의무경찰인력은 직무수행(대기, 문의, 자동안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의무경찰인력은 경찰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의무경찰제도의 폐지 및 대체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견해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응답 범주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6. 나는 의무경찰의 업무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의무경찰의 업무내용 및 특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저출산 등의 사회적 변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의무경찰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의무경찰제도의 폐지로 인한 업무량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의무경찰제도의 폐지로 인한 인력수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의무경찰 대체인력 확보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     )라고 생각한다.

- ① 공무원 총 정원제                      ② 예산 확보                      ③ 대체인력의 능력  
④ 대체인력에 대한 통제·관리의 어려움    ⑤ 기타(                                      )

22. 대체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서는 (     )라고 생각한다.

- ① 경무(경리)과                              ② 생활안전과                      ③ 교통과 I (교통사고조사)  
④ 교통과 II (교통지도)                      ⑤ 수사과(형사과)                      ⑥ 경비과  
⑦ 지하철수사대                              ⑧ 기타(                                      )

23. 대체인력의 충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서는 (     )라고 생각한다.

- ① 경무(경리)과                              ② 생활안전과                      ③ 교통과 I (교통사고조사)  
④ 교통과 II (교통지도)                      ⑤ 수사과(형사과)                      ⑥ 경비과  
⑦ 지하철수사대                              ⑧ 기타(                                      )

24.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적정규모 수준은 경과별로 다를 것이다. 각 경과별로 의무경찰이 (일반)정규경찰로 대체된다면 의무경찰 1명당 대체되는 (일반)정규경찰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0.25명	0.5명	0.75명	1명	1.25명	1.5명	1.75명	2명	2.5명	3명	기타(%)
① 경무(경리)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② 생활안전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③ 교통과 I (교통사고조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④ 교통과 II (교통지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⑤ 수사과(형사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⑥ 경비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⑦ 지하철수사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⑧기타1(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⑨기타2(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5. 의무경찰인력은 ( )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정규경찰로 충원
- ② 의무경찰인력을 경찰인력으로 전환
- ③ 경찰학과 출신학생 대상의 인턴십을 활용
- ④ 청년실업자 구제차원의 청년인력을 충원
- 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민생치안기능을 이양
- ⑥ 기타 ( )

26. 의무경찰 대체인력의 역량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 )가/이 필요하다.

- ① 정규경찰로 충원
- ② 의무경찰인력을 경찰인력으로 전환 (전역 후 충원시 우대 등)
- ③ 경찰학과 출신학생 대상의 인턴십 활용
- ④ 청년실업인력을 충원하여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시행
- ⑤ 자치경찰제로 민생치안기능 이양
- ⑥ 기타 ( )

27. 의무경찰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함으로써 최일선의 법집행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8. 의무경찰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함으로써 대국민 기본 치안역량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9. 의무경찰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함으로써 경찰직무집행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0. 의무경찰인력을 정규경찰로 충원함으로써 의무경찰 충원 및 소요인력 확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견해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응답 범주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혼인상태는?

-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3.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4.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5. 귀하의 현재 직업은?

- ① 정규경찰    ② 전경/의경    ③ 교수    ④ 연구원    ⑤ 기타(                      )

☞ 만약 5번의 응답이 5 - ① 이면 6번 문항에 응답.

6. 귀하의 계급은?

-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⑦ 총경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 면담결과 보고서(1)

- 일 시 : 2005년 6월 27일
- 장 소 : ○○경찰서
- 면담자 : 권경득, 우무정
- 피면담자 1: ○○○ 교통과장

### ◎ 의경관련 업무의 현황은?

- ☞ 의경인력의 감소로 업무증가 효과가 나타남. 근무형태도 종전의 갑, 을 2부제에서 3부제(8시간제)로 전환되는 추세임.

### ◎ 전·의경의 업무수행 비중은?

- ☞ 교통과의 경우 전·의경의 업무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없어도 운영이 됨.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보조업무(운전, 기록관리, 전산 등)가 많은 편임.  
집회·시위 등의 관리와 같은 핵심부문에서는 전·의경의 수요가 많은 경우인데, 이에 대해 경찰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대체가능 방안(직원중대 설치)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전·의경의 업무수행상 문제점은?

- ☞ 전·의경의 독자적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부족하고, 그 밖의 관리상 문제가 없지 않음.

### ◎ 외국의 유사한 전례는?

- ☞ 프랑스의 경우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헌병경찰이 존재하며, 자부심과 전통이 높은 편임(약 25,000명 정도).

### ◎ 전산 등 보조업무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한 견해는?

☞ 정규경찰인력이나 기능직화 등 다른 신분의 인력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일부 업무분야는 실시 중).

◎ 의경 vs 직원의 비중을 감안한 대체인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상적인 비율은?

☞ 현재에도 내근업무는 전·의경 보조없이 가능하지만, 교통관련 업무의 경우는 1:1이나 최대 1:3정도가 될 것임. 특히 '경찰 1인당 주민 수' 등의 지표를 고려한다면 의경 vs 경찰의 비중은 1:3 정도가 될 것임.

교통분야의 경우 의경요원의 생산성은 직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순발력이나 상황판단능력 등이 뛰어난 경우도 없지 않음. 이러한 의경인력에 대해 추천을 통해 경찰인력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의무경찰제도와 관련한 의견은?

☞ 전·의경제도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봄. 경찰업무의 책임감·전문성의 제고를 통해 국민에 대한 수준 높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전·의경의 업무를 경찰직원으로 대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게 함으로써 의경요원들에 대한 업무의존도가 높은 직원들의 경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경찰위신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물론 주차단속이나 교통관리 관련 업무 등과 같이 의경인력의 기여도가 높은 분야도 있음. 주차단속의 경우 일선 시청이나 구청에 전담사무관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나, 업무수요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미흡한 편임. 반면 경찰(의경)은 112체제를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피면담자 2: 의무경찰대원(센터, 내근, 외근 등)

(센터근무자 ○○○ 의경)

◎ 센터실의 주요업무는?

☞ 센터실은 교통지도계 소속으로 직원은 없으며, 지도계장 및 교통과장의 감독하에 4명의 의경이 2인 1조로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음.

주요 업무로는 사고신고 접수 및 집회나 행사관련 정보의 외근자(팀)에 전파,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실적 및 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직무스트레스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지만, 외박이나 휴가 시 3인이 근무해야 하는 부담은 있음.

근무방식은 일근→당번→비번의 순서 및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A팀 갑, 을의 경우).

	일근(1일)	당번(2일)	비번(3일)
시간	06:00~21:00	09:00~(익일 06:00)	06:00~(익일 06:00)
근무자(A팀 갑,을)	근무	근무	비번

◎ 현재의 의경인력을 직원으로 대체할 경우 적정인력 규모는?

- ☞ 주 50시간 근무를 가정할 경우 직원 대체시 필요한 인력은 6명 정도로 추정됨. 의경의 경우는 전일제(2부제) 근무가 가능하지만, 직원의 경우는 2인 1조의 3부제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필요인력은 6명이 될 것임.

(외근자 ○○○ 의경)

◎ 외근 의경들의 주요 업무는?

- ☞ 외근자들의 실질적인 업무는 교차로 정리, 신호조작,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스티커 발급), 요인경호 등임.

◎ 근무자들의 정원은?

- ☞ 현재 근무인원은 12명으로 정원은 없음.

(내근자 ○○○ 의경)

◎ 주요 업무는?

- ☞ 대체적으로 직원들을 지원하는 보조업무를 수행함. 무인단속 관련 발부된 스티커 입력 및 정리, 민원인의 이의신청 접수 및 관련자료 작성, 면허증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

## ◎ 근무자 수 및 근무시간은?

- ☞ 의경 2명, 직원 2명 모두 4명으로, 근무시간은 보통 09:00~18:00이며, 당직한 직원이 1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3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당직근무는 9일에 1회씩 서게 됨.

## ◎ 근무형태는?

- ☞ 일근, 당직, 비번이 교차되는 형태로 9일이 1주기가 되며, 직원의 경우는 월간 당직 해당일 중 하루를 휴무로 정할 수 있으며, 1주기 당직일 중 하루를 시차출·퇴근(2시간)일로 활용할 수 있음.

일근			당직	비번	당직	비번	당직	비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09:00 ~ 21:00	09:00 ~ 21:00	09:00 ~ 21:00	21:00~ (익일 09:00)	09:00~ (익일 21:00)	21:00~ (익일 09:00)	09:00~ (익일 21:00)	21:00~ (익일 09:00)	09:00~ (익일 21:00)

## ■ 피면담자 3: 방법순찰대

## ◎ 방법순찰대의 주요업무는?

- ☞ 주택가 및 우범지역의 방법순찰, 시위진압(상황출동), 경호업무(중요업무), 경찰서 자체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 방법순찰대의 인력 규모는?

- ☞ 전체인력은 3개 소대( $30 \times 3 = 90$ )와 본부소대(16)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소대의 경우 행정(4+a), 취사(5), 운전(6) 등의 분야로 구분됨.

## ◎ 근무형태는?

- ☞ 본부소대 이외의 3개 소대는 2개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도보 방법순찰업무를 수행

함. 통상 순찰동원인력은 20여명 정도(태평로지구대 9명, 서울역지구대 9명, 남대문과출소 4명)이며, 최소 방법순찰인력의 경우는 14명 정도의 인력으로 수행되기도 함.

방법순찰대는 외박이나 휴가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15% 내외의 사고자 확보수준에서 운영되며, 방법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지구대 관할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원(1명)이 동승하여 인력의 이동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

기본적인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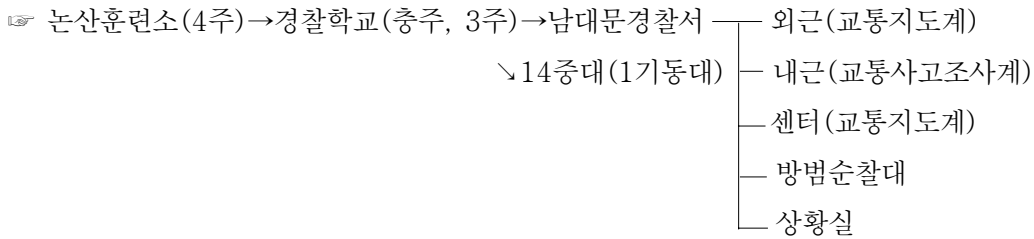
주간 14:00 ~ 17:00 3소대 근무

저녁 20:00 ~ 22:00 1소대 근무

야간 22:00 ~ 24:00 2소대 근무

주간 24:00 ~ 02:00 3소대 근무

◎ 의경인력의 충원경로는?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없는가?

☞ 통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 그러나 상황출동 등의 경우에는 인력부족을 실감할 때도 있음.

■ 피면담자 4: 상황실(○○○상경, 전경)

◎ 전경인력의 충원경로는?

☞ 훈련소입소(5주) → 사단별 전경인력 차출(40명 또는 50명, 4주 교육) → 경찰학교(충주, 2주) → 상황실(직원보조) → 지령실: 생활안전과 소속, 2명, 무전처리 → 타격

대: 5분대기조, 물리적 지원 필요시 출동, police line 설치 및 현장정리, 일과 후 안내 및 경비업무

◎ 상황실의 주요 업무, 인원 및 근무형태는?

☞ 사건관련 상황보고, 팩스 및 전화 송·수신 등 보조업무가 많음. 직원 5명과 대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교대로 운영되며 근무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음.

직 원		대 원	
09:00~21:00	근 무	09:00~18:00	근 무
21:00~09:00		18:00~02:00	
09:00~	휴 식	02:00~09:00	

■ 피면담자 5: ○○○ 서장

◎ 외국의 의경제도 유사사례는?

☞ 프랑스의 헌병경찰제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임.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른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의경제도의 변화방향은?

☞ 자치경찰제와 통일경찰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경찰의 법집행 기능의 제고와 시민에 대해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전·의경 인력을 경찰 인력으로 흡수하는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특히 통일에 대비하여 경찰력의 준 군사화차원에서 예비인력을 양성하여 통일 후 주변국가들간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외교갈등을 방지하는 노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

또한 런던이나 일본 경찰의 경우와 같이 경찰의 인력증원을 통한 고용기회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 부록 3) 면담결과 보고서(II)

■ 일 시 : 2005년 6월 27일

■ 장 소 : ○○지하철수사대

■ 면담자 : 권경득, 우무정

■ 피면담자 : ○○○ 지하철 수사대장

◎ 지하철수사대 의경인력의 기능 혹은 업무분야는?

☞ 범죄예방 위한 순찰, 환승역 검문검색, 수배자 검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수사대의 조직구조는?

☞ 출장소는 10~15개 역 당 1개씩 설치되며, 강북은 제1지구대로 하고 강남은 제2지구대로 하여 2개 지구대 체제로 구성됨.

2007년도 9호선 개통시 4개 출장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몇 년 이내 10개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망됨.

◎ 의무경찰 관련 지하철수사대의 인력현황은?

☞ 수사대의 의경인력 정원은 당초 100명이었으나 63명 수준으로 감축된 바 있으며, 현재 인원은 40명 정도임. 이는 해당 의경의 제대 후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금년도 경찰청의 방침 역시 의경인력의 제대로 인한 결원을 기동대나 방법순찰대 외에는 충원하지 않는 것임.

본청 생활안전국에 정원 보강을 신청한 상태이나 기능이 축소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우려됨. 이러한 어려움은 직원 3, 4명의 몫을 해내는 의경요원들의 갑작스런 감축으로 특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하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보편화되면서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결과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효과 및 치안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서울·부산은 수사대 체제, 광주·대구·인천 등은 '서'별로 출장소 운영).

◎ 의경인력의 근무형태는?

☞ 전일제 근무형태이지만 경찰관으로 교체되면 3부제 근무가 불가피할 것임. 출장소(20개)와 형사반(8개)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사대의 조직상 출장소별로 2인 1조의

당번·비번의 전일제 근무제는 3부제로 전환될 경우 6명(출장소 최소인력)으로 증가될 것임.

◎ 의경 대체인력의 적정 규모는?

☞ 출장소당 최소 소요인력을 6명으로 보는 경우 20개 출장소는 12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임. 여기에 현원 40명을 공제하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약 80명 정도로 산출됨. 같은 방식으로 출장소당 최소 소요인력을 9명으로 보는 경우 18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현원(40명) 공제 후 필요인력은 약 140명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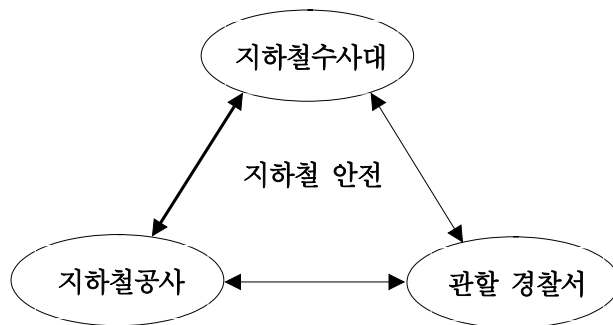
현재 136명(직원 96명, 의경 40명)으로 서울 전역을 커버하고 있음. 이들 인력은 지상 근무자와는 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20개 출장소는 현재 최소규모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즉 출장소별로 의경 4, 5명이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경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3교대 근무를 할 경우 최소 9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의경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원인이 혹시 있는가?

☞ 지하철수사대의 편제상 문제가 있음. 본청에서는 의경을 충원하기 않는 주요한 이유로 '기동대' 등과는 다른 행정부서로 수사대를 분류하고 있으나, 수사대는 나름대로의 효율적 조직구성을 통해 방법순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기능상으로는 개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이므로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확보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됨.

◎ 그 밖의 문제점이나 현안에 대한 의견은?

☞ 지하철수사대는 역무원 사령실과 지상의 관할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수준높은 치안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의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부록 4) 면담결과 보고서(III)

- 일 시 : 2005년 7월 12일(화요일)
- 장 소 : ○○경찰서, 방범순찰대
- 면담자 : 우무정, 최호진
- 피면담자 1: ○○○ 경위(경비계장)

### ◎ ○○지역의 치안수요는?

- ☞ ○○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각종 행사가 다발적으로 개최될 뿐만 아니라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 즉, 역내에 경부선·호남선의 철도 및 고속철도와 고속국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시위유발가능기관이 입지하고 있음. 또한 독립기념관과 망향의 동산 등이 입지하고 있어 상징성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 ☞ 이 외에도 경찰대학이 아산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음
- ☞ 이에 따라 ○○서의 교통 및 치안관리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1인당 평균 국민수'보다 더 큰 실정임.

### ◎ 의경인력의 기여도가 큰 업무영역은?

- ☞ 본 서의 의경관련 부서는 경리과(운전담당 2명), 형사과(전산업무 4명), 교통사고조사계(내근 2명), 그리고 교통지도계(외근 4명) 등임.
- ☞ 이들 업무영역에 대해 서장은 자료의 정리 및 입력 등과 같은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의경인력의 경우는 관내의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장애인 등을 활용할 경우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 향후 대체인력을 인턴직원 등의 형태로 대체는 불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교육 및 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임(최소 4주 이상 필요). 또한 현실적으로 인턴직원 등으로 대체할 경우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관리 업무를 담당할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 때문임.

## ■ 피면담자 2: 경리과 (○○○ 경사/○○○ 수경)

### ◎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 기본적인 업무는 지휘차량(서장) 및 작전차량(경비과장용 짚차)의 운전업무와 본서 소속차량(15대)에 대한 경상정비 및 관리업무임.

본서 외부의 20여대의 차량은 6개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 지구대별로 경리담당자나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경상정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담당업무와 관련한 필요 교육훈련 또는 업무숙련기간은?

☞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및 경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보직배치 후 1개월 이상 현장교육을 실시함.

### ◎ 현재 담당업무 관련 인력은?

☞ 직원 1명과 의경 2명임. 직원은 전체적인 차량의 경상정비 및 관리상태를 점검·감독하며, 실제 경상정비는 의경이 담당함. 의경은 당초 5명(T/O)이 배치되었으나 전역 후 자연감소로 현재 2명이 근무함.

☞ 현실적으로 차량의 경정비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경찰청에서 기능직 T/O를 주지 않고 있음). 향후 T/O를 주면 관련 전문정비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업무와 관련한 부담감 정도는?

☞ 작전차량 운전의 경우 상황발생시 수시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지만, 별다른 문제

로 인식되지는 않음(의경이 아닌 대체인력일 경우 심야 등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의경인력을 직원으로 대체할 경우 적정인력 규모는?

- ☞ 차량의 경상정비와 관련하여 본서 관리대상차량(15대)에 대해 2명의 기능직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외부관리 대상차량(20여대)에 대한 경상정비 및 관리업무를 추가할 경우 기능직 인력의 수요는 이보다 많아질 것임.
- ☞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직원(2명)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임.
- ☞ 각 지구대의 경우 인원증원 후 전담업무를 전가시키는 방안보다는 예산확보(중액)후 정비업소를 통해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음.

### ■ 피면담자 3: 형사과 전산실 (○○○ 경장(과학수사팀원)/○○○ 수경)

◎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 ☞ 각종 자료의 입력 및 조회업무임. 이 분야는 의경인력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으로 수사의 기록에서부터 종결시까지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입력하는 것임. 즉 수배 및 수사관련 자료입력이 주요 업무임(이 업무가 잘되어야 기본적인 경찰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임).
- ☞ 업무의 성격상 24시간 근무의 성격이 강함. 또한 보안을 포함한 업무의 중요도 때문에 정규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 조회업무의 경우에도 입력업무와 비교할 때 7:3의 비중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월 평균 자료조회건수는 1,200여건에 달함.

◎ 현재 담당업무 관련 인력 및 근무형태는?

- ☞ 4명의 의경이 24시간 2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4명의 T/O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의 의경인력을 직원으로 대체할 경우 적정인력 규모는?

☞ 직원으로 대체할 경우 약 8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피면담자 4: 교통사고조사계 (○○○ 경사(서무반장)/○○○ 수경)

◎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 교통사고조사 보조업무, 음주사고시 스티커 발부실적 입력, OMR 입력, 일반지도계의 단속실적 입력 등의 서내 업무를 수행하며, 사건관련 서류 및 피의자를 검찰청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담당업무 관련 인력 및 근무형태는?

☞ 직원 3명과 의경 2명이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검찰청에 사고조사 및 피의자(유치인) 송치업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T/O가 없는 실정임.

☞ 對검찰청 업무수행 때문에 항상 고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인원이 필요한 실정임 (현재 피의자 1명 당 직원 1명과 의경 1명으로 구성된 2명이 호송하고 있음).

☞ 근무형태는 통상적인 일근근무임.

◎ 업무와 관련한 부담감 정도는?

☞ 의경요원의 숙달된 기량으로 각종 자료의 입력 및 조회업무의 수행이 가능하여 부서의 역할 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건 및 피의자 송치업무로 의경인력이 빠져나가면 실제로 사무실내에서의 다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함. 따라서 업무강도는 매우 높은 편임.

☞ 통상적으로 검찰청에 점심이후 출발해서 교도소 송치 업무가 끝나고 귀대할 경우 심야시간대(20시-22시 경)에 귀대하는 업무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함.

◎ 현재의 의경인력을 직원으로 대체할 경우 적정인력 규모는?

- ☞ 직원으로 대체할 경우 최소 2명 정도가 소요될 것임(의경의 대체인력 확보는 물론 정규직원의 증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인원으로도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음. 특히 천안지역이 타 기관 지역의 2배 가까운 인구(약 51만 명)가 거주하고 있어 추가 근무인원이 절실함(예: 1일 전화민원의 경우 약 300-500통 정도를 소화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 ■ 피면담자 5: 교통지도계 (OOO 경장/OOO 상경)

### ◎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 ☞ 출퇴근시간대 및 혼잡교차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기 관리 및 교통지도 단속업무, 그리고 야간의 음주단속업무에 투입됨.

### ◎ 현재 담당업무 관련 인력 및 근무형태는?

- ☞ 의경인력은 잠정적으로 5명의 T/O가 책정되어 있으나 1명의 자연소멸로 현재 4명의 의경이 근무하고 있음(3교대). 여기에 직원 7명과 혼잡시간대에는 방법순찰대의 교통관리원 12명을 지원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의경요원의 경우 통상적인 일근근무이나 야간 음주단속시 익일 낮부터 저녁까지 휴무임.

### ◎ 업무와 관련한 부담감 정도는?

- ☞ 현재 천안시의 경우 인구 51만 명에 등록차량이 17만대에 육박하고 있어 교통지도 및 관리업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 道단위 행사와 각종 이벤트관련 행사(예: 마라톤대회 등)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음.

### ◎ 현재의 의경인력을 직원으로 대체할 경우 적정인력 규모는?

- ☞ 직원으로 대체할 경우 4~5명 정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천안의 지역적 특성 및 교통관리업무 수요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최대 1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함(향후 방법대 차출인원이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

- ☞ 또한 순찰차 2대, 사이카 4대 등(1일 평균 천안 본서의 시설운영 현황) 의 기존 장비도 더 보강되어야 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PDA 보급 및 전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피면담자 6: 방법순찰대(○○○ 수경, ○○○ 수경, ○○○ 수경, ○○○ 상경)

◎ 방법순찰대의 주요업무는?

- ☞ 교통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함. 신호정리, 교통단속 스티커 발부, 음주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함. 주간에는 교통단속 업무를, 야간에는 관리대상 도로변에 배치되어 교통관리업무를 수행함.

◎ 방법순찰대의 인력 규모는?

- ☞ 전체인력은 3개 소대( $30 \times 3 = 90$ )와 본부소대(16)로 구성되어 있음.

◎ 근무형태는?

- ☞ 5조 2교대 내지 3교대 근무형태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대별 근무가 아닌 조별로 근무시간을 나누어 근무함(근무조 편성은 일종의 매트릭스 조직의 형태임).

1조 10:00~13:00

2조 13:00~16:00

3조 16:00~18:00

4조 18:00~21:00

5조 21:00~24:00

- ☞ 근무조 편성은 다음과 같음. 10개 지역에 2인 1팀으로 모두 20명이 출동함. 8명씩 투입되는 소대는 윤번제로 변경됨(즉, 3소대→1소대→2소대)



## 부록 5) 면담결과 보고서(IV)

- 일 시 : 2005년 12월 29일
- 장 소 : 경찰청 전경인사계
- 면담자 : 권경득, 우무정
- 피면담자 : ○○○○ 경정(계장), ○○○○ 경감(반장)

◎ 기동단본부, 기동대본부, 기동중대 등의 상설부대(이하 '상설부대'라 함)의 핵심적인 역할은?

- ☞ 상설부대는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역할은 시위진압 등의 치안업무 보조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기동단 및 기동대 본부는 지휘 및 현장업무 지원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동중대는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함.

◎ 상설부대의 근무형태는?

- ☞ 기본적으로 3일을 하나의 근무주기로 하여 근무가 이루어짐. 즉 당직(24h)→일근(18h)→비번의 주기로 근무함. 이에 따라 상설부대 소대원의 주간 근무시간은 약 92시간 정도로 추산됨. 상설부대 중 기동중대의 일선소대에 근무하는 의무경찰 1명당 정규경찰 충원비율은 단순논리로도 1 : 3의 비율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근무 대기시간(24시간 상시대기 및 휴식이나 취침시간)까지 엄격히 적용할 경우에는 1 : 4까지도 가능할 것임.
- ☞ 그러나 정부의 관련예산 및 인력수급요인 등을 감안한다면 1 : 2.5정도가 타당할 것임.

◎ 그 밖의 부대별 직무영역별 의무경찰 1명당 정규경찰 충원비율은 어떠한가?

- ☞ 대체적으로 연구진의 (중간)연구결과와 비슷함. 다만 운전업무, 자체경비업무, 무전업무 등은 1 : 3의 비율이 적정할 것이며, 상황실의 경우는 1 : 1.2정도가 타당할 것임.

◎ 기동단본부의 경우 무전업무에 2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 ☞ 대장과 부대장이 각각 3개 중대씩 관리하고 있음. 2명의 무전요원은 각각 대장과 부대장을 보좌하여 통신관리업무를 수행함.

◎ 상설부대에 직원중대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직원중대는 순경이상의 경찰관으로 편성된 부대로 3개 중대가 있으며, 그 규모 및 구성내용은 기동중대와 다를 바 없음.

기본적인 역할은 일반 기동중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당 직위주의 3일 1주기 체제(당직(24h)→비번→비번)로 주 56시간 정도 근무함. 직원중대의 경우에도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경력(警力)운용계획 측면에서 기동중대의 근무형태를 예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 경찰청 경비부 관할의 기동중대는 모두 94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상황대비, 시설경비, 거점근무, 방범근무, 교통근무 등 다섯 가지의 근무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여기에 현장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투입되기 위한 출동대기 중대가 있으며, 전혀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중대로 위로특박 및 휴무인 중대가 있음.
- ☞ 아래 표에서 월요일의 근무상황은 위로특박 13개 중대, 전·의경 휴무 9개 중대, 경찰관(직원중대) 휴무 2개 중대 등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24개 중대 외에 70개 중대가 근무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 ☞ 다음 날인 화요일의 근무상황은 출동대기(4개 중대) 및 위로특박 중인 일부병력(4개 중대)까지 상황대비 근무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상황대비 근무에 추가로 2개 중대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 근무에 투입되는 경찰병력은 사실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고수해야 하는 만큼 근무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전일제 근무형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

므로 이들 기동중대에 배속되어 근무중인 의경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무일	상황 대비	시설 경비	거점 근무	방법 근무	교통 근무	위로 특박	출동 대기	휴무		계
								전·의경	경찰관	
'05. 00. 00(월)	9	27	5	21	4	13	4	9	2	94
'05. 00. 00(화)	25	28	5	13	4	9	0	8	2	94
'05. 00. 00(수)	27	27	3	19	5	3	0	8	2	94

연구보고서 2006-18

##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적정대체 인력확보방안

2006년 12월 발행

2006년 12월 인쇄

발행인 : 이 병 진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88번지

인쇄처 : 제이케이컴퍼니  
(TEL : (02)3494-0458)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